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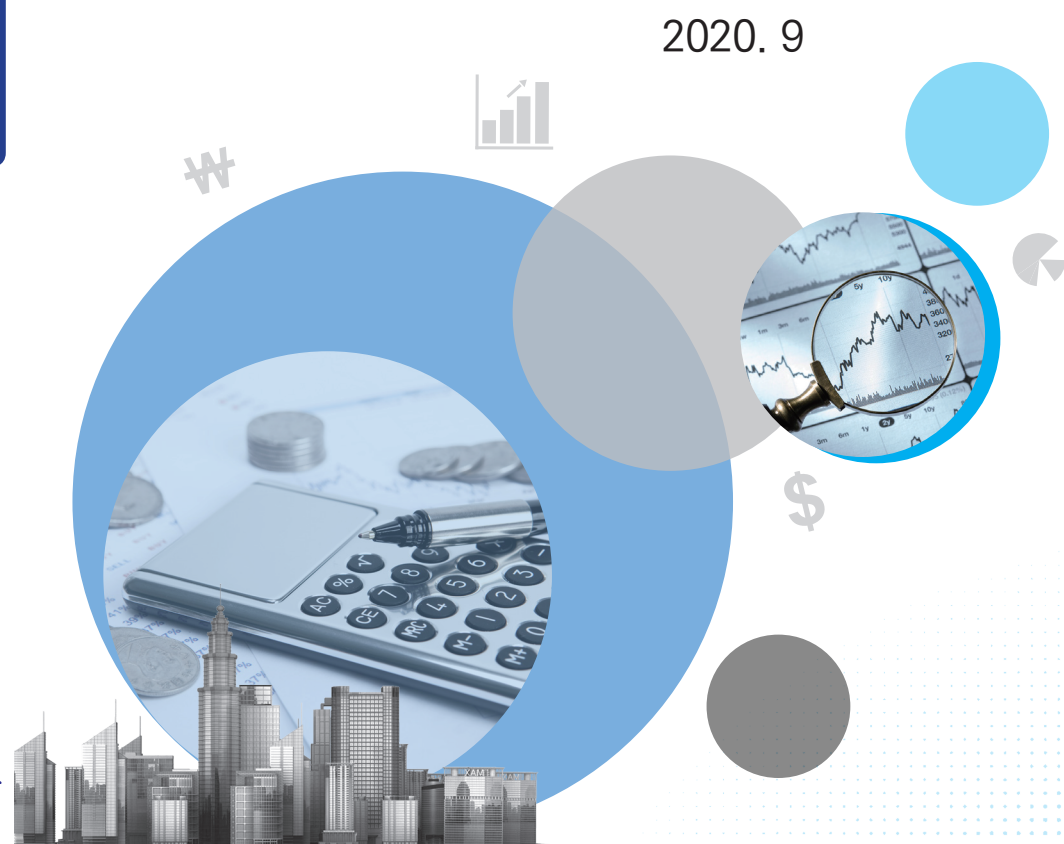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0.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0. 9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0.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재정분석팀장
공동연구자: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1.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 (도입배경) 서비스 산업 육성·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한국경제는 제조업, 특히 수출기업 지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투입요소(자본, 노동) 증가에 의한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및 잠재성장률(PGR) 지속적 하락 추세
 -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

- (도입목적)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서비스업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숙박업)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고(국민소득·여가선호 증대), 고용창출효과가 높음

- (조세지원방법,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숙박비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공제대상: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형 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숙박비 사용분
 - 공제율: 국내여행 숙박비의 30%
 - 공제한도(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내용)
 -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와 공제한도를 동등하게 아래와 같은 공제대상자와 공제한도를 설정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추가로 분석함
 -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원)
 - 공제 대상자 및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 공제한도: 100만원

- (성과지표) 대상숙박업체(호텔,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등) 총매출액 증분

2. 국내외 유사사례, 선행연구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제안된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 제도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된 제도이며 지원은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기에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한정되며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속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기본적 특성을 공유

- 해당 제도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체계와 해외 주요국의 소득공제 체계를 비교·분석하도록 하겠음
 -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체계 내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 중인 공제체계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할 필요
 - 해외에서 유사한 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

-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공제 체계를 놓고 볼 때 제안된 ‘숙박비 공제제도’는 특수항목지출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임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적용되는 추가 한도 금액이 가장 가까운 제도로 판단됨
 -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적용됨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와 유사하게 해외 주요국에서도 근로소득 획득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있음
 - 이러한 비용들은 근로소득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개인의 소비와 구분되지 않는 측면 또한 존재함

- 이처럼 근로자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경비적 성격의 지출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지나친 공제를 막기 위한 제약 또한 설정하고 있음

-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나 안종석 외(2017)에서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 체계가 상세히 정리된 바 있음
 - 이하에서는 ‘국내 숙박비 공제 제도’와 같이 특정 성격의 지출에 대한 공제제도가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조사 대상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5개국이며 안종석 외(2017)의 관련 내용은 발췌·요약 정리하였음

- (선행연구) 숙박(관광) 시설에 (부가)세금을 부과했을 때 숙박(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해외 연구들은 하나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안에 대한 KDI 연구(KDI 공공투자센터 2019)는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형식의 분석을 진행
 -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의한 비용 대비 효과비율이 시나리오에 따라 평균 0~3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판단
 -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간접적인 가격할인 효과를 갖는 소득공제제도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

3. 정책성 분석

- (정책적 일관성) 이번에 제안되는 국내 여행 숙박비 공제제도는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행복 및 복지 증진’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목표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이라는 정책과 부합하는 제안으로 판단됨

-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결론적으로 본 제도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적지 않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을 받아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면에서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충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관광숙박업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내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적시성이 인정됨

□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숙박비 소득공제의 산업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가 타기팅하는 관광숙박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분명해야 하는데 본 제도는 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이 명확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이번 소득공제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관광숙박업체 중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 숙박비 소득공제제도를 관광숙박업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이해할 경우 이번 제안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지를 예측하고 산업정책 측면에서 이것이 적절한 선택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의 국내 숙박업체의 이용 경비는 숙박업체의 업종을 불문하고 전부 제외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체라 할지라도 여관 및 모텔 제외

□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 관광(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라는 수단을 통해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
- 소득이 높을수록 숙박비 및 여행비 지출금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낮게 설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문제는 이처럼 고소득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국내 숙박비 지출의 증가 정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어 숙박비 소득공제의 정책 효과가 크게 반감될수 밖에 없음
- 숙박비 소득공제의 경우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전혀 가격하락의 혜택이 없음
 -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숙박비 지출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근로소득세상의 소득공제를 통해 관광숙박업을 지원하려는 제안은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현행 제안에 따르면 단체 여행비나 숙박비 서비스의 온라인 구매(Online Travel Agency: OTA) 지출분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내 관광숙박업체의 OTA 의존도는 점차 증가
 - 이처럼 OTA나 단체여행을 통한 숙박시설의 이용을 제외하는 것은 변화될 관광분야 사업환경하에서 제안된 숙박비 소득공제안의 정책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것이 매우 자명함

- 결론적으로 본 조세특례제도의 설계나 그 내용 측면에서 완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차라리 숙박 휴양시설 부가가치세 면제나 여행쿠폰 제공, 더 나아가 직접적 재정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경제성 분석

- 제안된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함
 - 숙박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숙박비 소득공제로 인한 실질적인 숙박비의 상대가격 하락이 숙박업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국민여행실태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여행경비 지출, 숙박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함
 -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추정
 - 각 소득 구간별 탄력성을 추정하여 숙박비 소득공제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활용

가. 숙박비의 가격탄력성

- 각 소득 구간별 숙박비 지출로 인한 소득공제금액을 이용하여 숙박비의 가격 할인율을 계산

- 숙박비 지출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구하여, 숙박비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매출액 증가분을 추정

- 숙박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의미하는 관심변수인 β_3 는 -0.325 로 추정
 - 이는 숙박가격이 10% 하락할 때, 숙박수요는 3.25% 증가함을 의미
 - 하지만 p-value가 0.788로 추정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아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매출액 증가분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숙박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
 - 숙박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어서 다수의 관측치를 확보하지 못함
 - 추가적으로 보다 양질의 데이터로 추정이 가능한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보조지표로 활용
 - 기도입된 유사한 조세특례제도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증 분석을 보충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추정된 가격탄력성(-0.325)과 연간 4%의 시간할인율을 이용한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총 73.5억원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숙박비 지출증가금액은 총 24.6억원
 - 반면 숙박비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예상금액은 722억원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471억원
- 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규모가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 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

나. 숙박비의 소득탄력성

- 숙박비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재정패널데이터, 국민여행조사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 0.172
 - 국내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 0.126
 - 국내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 0.082

- 국내 여행경비지출, 국내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에 크게 못 미쳐,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 증가, 이로 인한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조세특례 예상금액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추정
 - 소득구간별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6,700만원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4,900만원
 - 반면 숙박비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예상 금액은 722억원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471억원

다. 유사사례 분석(도서·공연비 소득공제)

- 2018년 7월에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여, 유사한 규모와 성격의 소득공제제도가 해당 업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는지 계량분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를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실증분석 추정결과
 - 제도 시행 이후 서적 소매업의 매출이 0.45% 증가
 - 하지만 p-value가 0.846으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
 - 시계열 추세를 통제한 추정결과: 제도 시행 이후 서적 소매업의 매출이 0.69%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value: 0.750)
 - 서적 소매업의 전체 매출액 규모: 2.5조원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값 0.69%를 적용하더라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서적 소매업의 매출액 증가는 172억원으로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

5. 형평성 분석

- ‘숙박비 공제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들을 근로소득자 소득 구간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분석을 위해 약 93만명의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개인별로 수집하였음
 - 숙박비 지출 관련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문화산업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활용함

<표 1> 가구소득 구간별 1인당 연평균 여행·숙박비 지출액

(단위: 명, 원, %)

소득구간	샘플수	연평균 여행비 지출액	숙박비 비중	연평균 숙박비 지출액
1천만원 이하	1,408	601,219	8.9	53,361
1.5천만원 이하	1,251	577,466	7.0	40,509
2천만원 이하	1,554	828,466	9.4	78,186
3천만원 이하	6,537	1,058,731	11.5	121,374
4천만원 이하	3,398	1,243,063	12.2	152,046
4.5천만원 이하	1,261	1,366,745	12.4	169,741
5천만원 이하	1,273	1,204,133	12.6	151,502
6천만원 이하	1,099	1,319,256	14.2	186,860
7천만원 이하	95	1,116,563	13.60	152,022
8천만원 이하	172	1,380,871	12.10	157,735
8천만원 초과	132	1,380,871	10.5	145,230

자료: 『2018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평균 결정세액 감소분

(단위: 원, %)

소득구간	산출세액 감소	결정세액 감소	면세자 비중
1천만원 이하	339	-	100.0
1.5천만원 이하	688	106	85.1
2천만원 이하	1,378	911	35.0
3천만원 이하	3,182	2,306	33.0
4천만원 이하	6,393	4,834	27.3
4.5천만원 이하	7,567	6,327	16.5
5천만원 이하	6,804	6,070	10.8
6천만원 이하	8,406	7,987	4.9
7천만원 이하	7,070	6,964	1.50
8천만원 이하	9,369	9,339	0.30
8천만원 초과	11,820	11,803	0.1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 조세지출 규모 추정

(단위: 원, %)

소득구간	소득공제금액	산출세액 감소	결정세액 감소	비중
1천만원 이하	17,288,631,817	1,036,927,020	-	-
1.5천만원 이하	17,203,680,649	1,031,702,627	159,320,910	0.2
2천만원 이하	46,917,416,950	2,814,238,315	1,860,568,805	2.6
3천만원 이하	135,631,068,746	11,902,282,667	8,624,878,760	11.9
4천만원 이하	108,641,334,503	15,233,464,958	11,516,874,598	15.9
4.5천만원 이하	44,495,287,972	6,612,216,011	5,528,696,401	7.7
5천만원 이하	33,488,976,270	5,013,542,024	4,472,737,020	6.2
6천만원 이하	63,564,961,090	9,532,106,117	9,056,544,736	12.5
7천만원 이하	38,542,091,994	5,975,438,830	5,885,661,609	8.10
8천만원 이하	31,396,849,016	6,217,512,305	6,197,575,378	8.60
8천만원 초과	69,890,229,141	18,981,316,186	18,955,193,143	26.20
계	607,059,856,888	84,362,423,734	72,269,663,753	100.00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고용영향평가

- 통계청 SBDC 기업등록부 DB, 전국사업체조사(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숙박업의 매출액 변화에 대한 고용(취업자 포함)탄력성을 추정함
 - 숙박업종별, 지역별 고용의 매출액탄력성을 분석함
- 숙박업의 매출액이 10% 증가하는 경우 취업자 수는 7.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숙박비 소득공제 도입 시 예상 취업자 수 증가 규모
 - 숙박업 전체 매출액 규모: 11.8조원
 - 숙박업 취업자(피용자, 자영업, 가족종사자 합산) 수: 13만명
 - 통계적으로 숙박비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숙박업 매출 증가는 0이므로 이로 인한 고용, 취업자 수의 증가도 통계적으로 0명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가격탄력성(0.325)을 이용한 숙박업 매출액 예상 증가는 73.5억원(전체 숙박업 매출액 대비 0.0078%)

- 이로 인한 고용, 취업 증가는 약 591명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하는 경우 숙박업 매출액 예상 증가는 24.6억원, 이로 인한 고용, 취업 증가는 약 198명

7.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AHP 평가)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균형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기준 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인 AHP를 이용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함
 -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AHP를 수행하여 전문가 9인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AHP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점은 0.24로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종합평점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자들의 개별 결과 분석에서도 제도 미도입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됨

목 차

I.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7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19
가. 도입 배경	19
나. 도입 목적	19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20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21
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배경	21
II. 국내외 유사사례, 선행연구 및 조사의 주요 쟁점	23
1.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25
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25
나. 해외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30
다. 소결	39
2. 관련 선행연구	40
3. 제도의 쟁점사항	42
III. 정책성 분석	45
1. 정책적 일관성	47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51
가. 명확성에 대한 검토	51
나. 정책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51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64
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71
가. 근로소득세상의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	71
나. 근로소득세상의 소득공제로 인한 개인사업자 배제의 적정성 여부	75
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단체관광과 OTA 제외 결정의 문제점	75

IV. 경제성 분석	79
1. 숙박비의 가격탄력성	81
2. 숙박비의 소득탄력성	86
가.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 0.172	86
나. 국내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 0.082	99
3. 유사사례 분석(도서·공연비 소득공제)	113
V. 형평성 분석	119
1. 분석 자료	121
2. 소득수준별 여행 및 숙박비 지출 현황	123
3. 조세지출 규모 및 형평성 분석	126
VI. 고용영향평가	133
VII.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39
1.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141
가. AHP 분석의 개요	141
나. AHP 분석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144
2. 결론 및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5
부 록	159

표 목 차

<표 II-1> 소득세 세율	26
<표 II-2> 근로소득 공제율	28
<표 II-3> 미국 표준소득 공제액	32
<표 II-4> 일본 근로소득 공제액 및 공제율	35
<표 III-1> 국내외 여행 참가자 수	49
<표 III-2> 국내외 여행 참가자 수 증가율	49
<표 III-3> 참고자료 1	50
<표 III-4> 분야별 재원지출	53
<표 III-5> 12대 분야 재원배분 추이 및 전망	54
<표 III-6>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55
<표 III-7>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56
<표 III-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책대상 업종변천	57
<표 III-9>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58
<표 III-10> 기업경기실사지수(관광산업)	60
<표 III-11> 기업경기실사지수(관광식당 및 숙박업)	61
<표 III-12> 업종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 여부	63
<표 III-13>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2019년 말 기준)	66
<표 III-14> 관광사업체 매출액 분포(2018년)	69
<표 III-15> 관광숙박업체 업종별 매출액 분포(2018년)	69
<표 III-16> 관광숙박업체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분포(2018년)	70
<표 III-17> 숙박비 소득공제 체계	72
<표 III-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73
<표 III-19> 가구소득 구간별 1인당 연평균 여행·숙박비 지출액	73
<표 III-20> 관광숙박업 총매출액 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비중	77

<표 IV-1> 숙박비 가격탄력성 1단계 회귀모형 추정 결과	83
<표 IV-2> 숙박비 가격탄력성 2단계 회귀모형 추정 결과	83
<표 IV-3> 소득구간별 숙박비 지출 증가 예상 금액(가격탄력성(0.325) 이용)	85
<표 IV-4> 여행경비지출 소득탄력성(재정패널)	86
<표 IV-5> 국내 여행경비지출 소득탄력성(재정패널)	92
<표 IV-6> 국내 숙박비지출 소득탄력성(국민여행조사)	99
<표 IV-7> 국민여행조사 범주형 변수 내용	111
<표 IV-8> 소득구간별 숙박비 지출 증가 예상금액(소득탄력성 이용)	112
<표 IV-9>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 내용	113
<표 IV-10> 유사제도(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분석 결과	115
<표 V-1> 국세청 자료의 대표성 점검	122
<표 V-2> 국민여행조사 개요	122
<표 V-3> 1인 평균 여행 횟수	123
<표 V-4> 1인 평균 여행 일수	124
<표 V-5> 1인 평균 여행 지출액	124
<표 V-6> 여행지 구매 항목별 지출 비중 - 관광여행	124
<표 V-7> 가구소득 구간별 1인당 연평균 여행·숙박비 지출액	125
<표 V-8> 소득구간별 소득세 현황(연간, 1인 평균)	128
<표 V-9> 평균 숙박비 소득공제금액	129
<표 V-10> 평균 산출세액 감소분	130
<표 V-11> 평균 결정세액 감소분	130
<표 V-12> 평균 숙박비 지출액 대비 결정세액 감소분	131
<표 V-13> 조세지출 규모 추정	132
<표 VI-1> 숙박업 업종별 고용탄력성	135
<표 VI-2> 숙박업 지역별 고용탄력성	136
<표 VII-1>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평가결과 요약	145
<표 VII-2> 가중치 산정범위	146

<표 VII-3>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148
<표 VII-4> AHP 표준점수에 따른 제도 도입 적합도	150
<표 VII-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51
<표 VII-6> AHP 평가 결과	152
<표 VII-7> 설문 응답에서의 제도 도입 점수	152

그림 목 차

[그림 II-1]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26
[그림 II-2]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근로자용)	27
[그림 III-1] 업종별 수혜금액 기준 비중(2015년)	58
[그림 III-2] 업종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59
[그림 III-3]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60
[그림 VII-1]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147

I .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I.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입 배경

- 서비스 산업 육성·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한국경제는 제조업, 특히 수출기업 지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투입요소(자본, 노동) 증가에 의한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및 잠재성장률(PGR) 지속적 하락 추세
 -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

나. 도입 목적

-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서비스업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숙박업)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고(국민소득·여가선호 증대), 고용창출효과가 높음
 - 취업유발계수(생산 10억원당 신규취업자): 21명(전체 15명, 제조업 10명)
- (산업 간 형평성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제조업에만 집중되고 있었던 다양한 정책·제도적 혜택을 균등하게 하려는 시도
 - 제조업은 재정지원, 세제, 금융에 있어 서비스업에 비해 다양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여,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조세지원방법,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숙박비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공제대상: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형 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숙박비 사용분
 - 공제율: 국내여행 숙박비의 30%
 - 공제한도(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내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 위 공제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의 내용을 반영
 -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와 공제한도를 동등하게 아래와 같은 공제 대상자와 공제한도를 설정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추가로 분석함
 -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원)
 - 공제 대상자 및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 공제한도: 100만원

- (성과지표) 대상숙박업체(호텔,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등) 총매출액 증분
 - 측정산식: 총매출액 증분 = 총매출액 - 과년도 총매출액
 - 목적과의 연계성: 본 제도는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 지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늘어난 총매출액은 성과지표로 제안(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제도 제안 부서(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숙박업 일부 업종은 숙박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안
 - 조세특례 대상업체에는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숙박업체 다수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텔, 여인숙 등 여행 외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업체를 제외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내용 중)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가.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배경

-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를 선정

- 제도 제안 부서(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에 따르면 이 조세특례제도 시행 시 연간 추정되는 조세지출 규모가 600억원 이상으로, 신규 조세지원제도의 도입 또는 기존제도의 확대, 재설계 시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근거하여 새로이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함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분석을 통해 숙박비 소득공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 (정책성 분석)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 명확성, 적절성, 정책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
 - 정책의 일관성
 - 국내 여행 숙박비 공제제도는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행복 및 복지 증진’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목표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이라는 정책과 부합하는 제도인지 검토
 - 정책의 명확성 및 적절성
 - 관광숙박업(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① 산업간 형평성의 측면 ②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의 측면 ③ OECD 회원국 간 비교의 측면에서 검토
 - 정책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숙박비 소득공제의 산업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가 타깃으로 하는 관광숙박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분명하고 적절한지 검토

□ **(경제성 분석)** 숙박비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숙박업 매출액 증가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추정함

○ 숙박비의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을 다양한 자료로 추정하여 추정 결과값을 비교 검토

- 숙박업 매출액, 숙박업 CPI 등 데이터를 이용하여 숙박비 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함
- 재정패널데이터, 국민여행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여행,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

□ **(형평성 분석)** 숙박비 공제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들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분석을 위해 약 93만명의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개인별로 수집하였음
 - 숙박비 지출 관련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문화산업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활용함
 - 소득 구간별 숙박비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액감면 금액을 추정하여 소득별 형평성을 분석

□ **(종합평가)** 이상의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규 특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계층화 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방법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함

-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적인 계량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

Ⅱ. 국내외 유사사례, 선행연구 및 조사의 주요 쟁점



II. 국내외 유사사례, 선행연구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제안된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 제도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된 제도이며 지원은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므로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한정되며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속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기본적 특성을 공유

- 해당 제도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체계와 해외 주요국의 소득공제 체계를 비교·분석하도록 하겠음
 -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체계 내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 중인 공제체계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유사한 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함
 - 과세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개로 열거되고 있음
 - 이 중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됨
 - 종합소득에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은 배제됨
 - 소득세율은 과표구간별 6%에서 40%까지 적용됨

<표 II -1> 소득세 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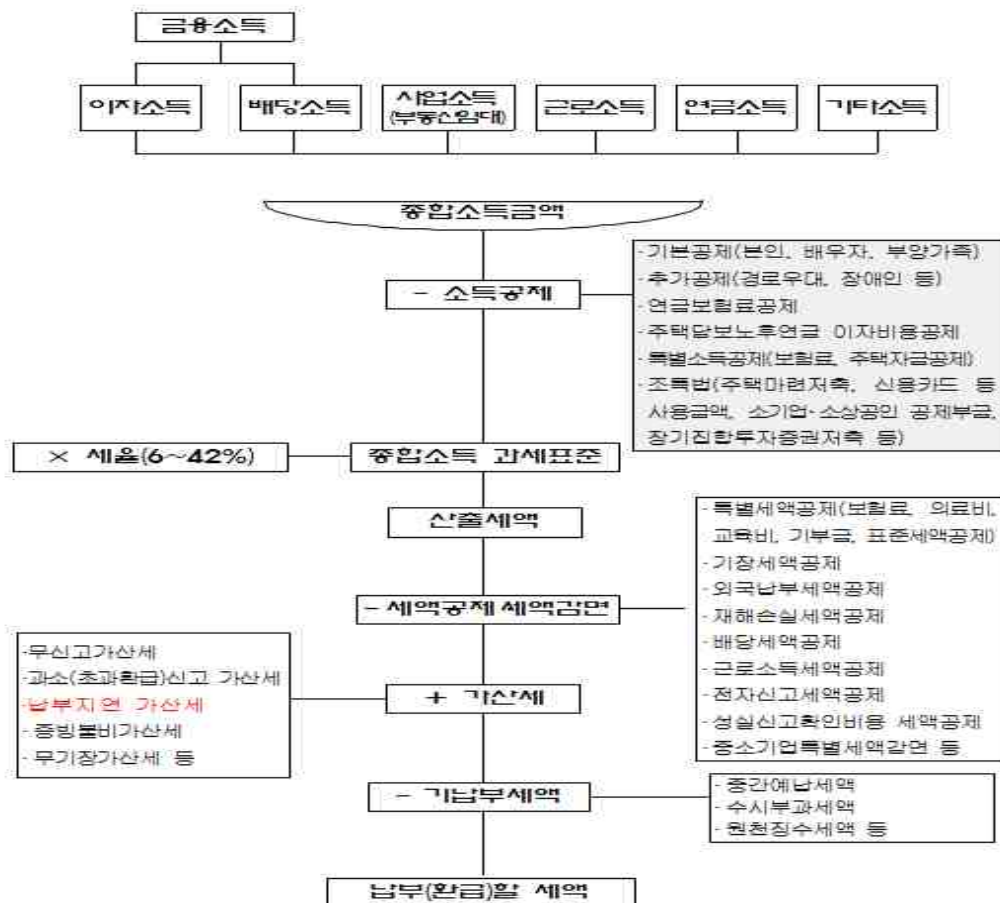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검색일자: 2020. 5. 20.)

□ 다음 그림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체계를 도식화한 것임

○ 일반적으로 열거된 소득유형별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림 II -1]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7920100726112750&menu_a=10&menu_b=100&menu_c=3000#FileDown(검색일자: 2020. 5. 20.)

-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뒤,
- 산출세액 계산·세액공제 적용·총결정세액 산출 순으로 이어짐

[그림 II -2]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근로자용)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금액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 이상),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자료: 국세청,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2019. 12

- 만약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됨
 -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산출 과정은 종합소득과 유사하나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일부 공제항목들이 존재

- 근로소득 결정세액 도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제규정은 크게 ① 필요경비공제 ② 인적공제 ③ 항목별 공제 ④ 항목별 세액공제로 구분됨

- 필요경비공제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적 지출을 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공제 제도임
 - 근로자 개개인의 경비 지출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총급여액 구간별로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II -2> 근로소득 공제율

(단위: %)

총급여액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777&efYd=20200101#J47:0>(검색일자: 2020. 5. 20.)

-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됨
 - 기본공제는 대상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요건이 존재
 -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에 대해 추가금액을 공제함

- 항목별 공제는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로 구분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해당

- 마지막으로 항목별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구성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금의 12% 혹은 15%를 공제
 -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해당
 -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가별 조세조약에 의거 적용

- 제안된 ‘숙박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에 속함
 - 여타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특정한 지출에 대한 공제 방식으로 운용되기보다 근로 필요경비 공제라는 측면에서 과세표준 혹은 산출세액을 경감시키고 있어 보다 일반적인 측면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들은 특정 지출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소득공제 체계가 갖고 있는 경비적 지출에 대한 일반적 공제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들은 근로자의 저축 및 투자와 이를 통한 주거 안정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속하지 않는 지출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저축 및 투자 행위 이외의 지출 중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일반적 지출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지출들은 구분하여 집계하기 어렵기에 조세행정상 효율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지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공제 체계를 놓고 볼 때 제안된 ‘숙박비 공제제도’는 특수 항목지출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임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적용되는 추가 한도금액이 가장 가까운 제도로 판단됨
 -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적용됨

나. 해외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와 유사하게 해외 주요국에서도 근로소득 획득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있음
 - 이러한 비용들은 근로소득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개인의 소비와 구분되지 않는 측면 또한 존재함

- 이처럼 근로자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경비적 성격의 지출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지나친 공제를 막기 위한 제약 또한 설정하고 있음

-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안종석 외(2017)¹⁾에서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 체계가 상세히 정리된 바 있음
 - 이하에서는 ‘국내 숙박비 공제제도’와 같이 특정 성격의 지출에 대한 공제제도가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조사 대상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5개국이며 안종석 외(2017)의 관련 내용은 발췌·요약 정리하였음

1) 미국

- 미국의 개인소득세 공제제도는 항목별 공제와 인적공제로 구성됨
 - 이 중 본 제도와 유사성이 높은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제도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제도를 개괄함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항목별 필요경비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출 중 고용주로부터 보전받지 않은 것’을 의미함
 -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소정의 비용
 - 통상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 업무 관련 출장비
 - 업무 관련 교육비
 - 개인의 소비적 성격을 띠는 지출의 경우 근로업무에 이용된 부분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
 - 가령, 근로자가 소유한 컴퓨터의 감가상각비용은 업무를 위해 근로자가 소유한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며 이것이 없이는 적절한 근로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
- 미국은 항목별 근로소득 필요경비액과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정리

- 항목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증명책임 및 과세당국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 항목별 공제 방법과 표준소득공제 방법 간 선택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표 II -3> 미국 표준소득 공제액

(단위: 달러)

신고유형	공제액
부부 합산 신고	24,800
가구주 신고	18,650
단독 가구 및 부부 개별 신고	12,400

자료: IRS, <https://www.irs.gov/pub/irs-drop/rp-19-44.pdf>(검색일자: 2020. 5. 19)

- 자녀보육비의 경우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세액공제가 허용됨
-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는 의료비, 기부금, 재해손실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개인퇴직연금 불입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존재함
 - 항목별 소득공제의 경우 지나친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통합한도를 두어 시행했으나 2018년부터는 미 실시²⁾
 - 또 항목별 소득공제는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항목별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출은 다음과 같음
 - 의료비와 치과비용
 - 대출이자비용
 - 체세공과금
 - 재해손실비용
 - 기부금
 - 기타소득공제
 - 고소득자에 의한 과도한 항목별 공제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표준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치과비용은 해당 연도 과세 연도 중 지출한 금액이 조정총소득³⁾의 10%(65세 이상은 7.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2) IRS,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0>(검색일자: 2020. 5. 20.)

3) 조정총소득이란, 총소득에서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납부 금액, IRA(개인연금) 납부액, HSA(Health Savings Account) 납부액 등을 차감한 소득액을 의미

- 기부금은 조정총소득금액의 50%(정부기관 등), 30%(비영리 적격기관), 20%(비영리 적격단체, 자본소득재산)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재해손실비용 공제는 비사업용 자산의 재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100달러 이상이거나 조정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항목별 소득공제의 총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항목별 소득공제의 통합한도’ 제도를 운영하였음
 - 납세자의 조정총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목별 소득공제신청합계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액을 감액함
 - 제세공과금, 이자비용, 기부금, 업무 관련 비용 및 기타비용 등의 항목은 소득공제 통합한도 적용 대상
 - 반면, 의료비 및 치과비용과 재해도난손실 항목은 소득공제 통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2) 프랑스⁴⁾

-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공제는 크게 항목별 공제와 인적공제로 나누어짐
 - 이 중 항목별 공제는 다시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 구분됨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는 개산공제⁵⁾ 방법과 실제 업무 관련 지출비용 공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개산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세 보험료를 차감한 근로소득액의 10%를 공제하는 방법임
 - 근로 업무 관련 실제 지출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음

4)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정리

5)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산의 간편화를 위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임

-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할 목적의 비용
- 근로 업무활동을 수행한 결과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된 비용
- 입증을 거친 비용
- 예를 들어, 40km 이내 통근비용, 출장비용, 취업·이직·부임 등을 위한 이사 비용,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소유 차량운반구 비용,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용 등이 근로 업무 관련 실제 지출에 해당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주로 자녀보육 및 부양가족 지원 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제의 통합한도 규정을 통해 과도한 세부담 경감을 방지하고 있음

- 의료비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교육비나 주택 취득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는 그 범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음
 - 주거용 주택 취득 및 건설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2011년부터 폐지

□ 자녀보육비는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됨

- 자녀보육, 교습 등을 위해 내국인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50%를 세액 공제
- 독립적인 세대를 이룬 성인 자녀에 대한 재무적 지원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 이밖에 사회보장세 관련 기여금과 보편적 사회기여금은 근로소득의 획득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에게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사회보장세 관련 기여금에는 노령연금, 공적의료보험, 고용보험, 의무적 추가연금보험, 추가의료보험 등이 있음
 - 노령연금, 공적의료보험, 고용보험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보편적 사회기여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6.2~8.2%의 세율로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

3) 일본⁶⁾

- 일본의 개인소득세 공제제도는 항목별 공제와 인적공제로 구성됨
 - 항목별 공제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 구분됨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의 경우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 방식과 실제 발생비용에 대한 항목별 추가 공제 방식을 모두 적용
 - 근로소득에 대한 개산공제만 허용되었으나, 1987년부터 실제 발생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를 허용
 - 1987년 세법 개정 시 통근비용, 이사비용, 연수비용 등에 대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
 -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는 급여금액별로 10~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
 - 그리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공제를 허용함

- 급여소득공제는 급여금액에 따라 10~40%의 공제율을 적용
 - 급여액이 162만 5천엔 이하인 경우 55만엔을 공제하고, 이후 급여구간에 따라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
 - 급여액이 85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195만엔을 한도로 공제

<표 II -4> 일본 근로소득 공제액 및 공제율

급여액	공제액 및 공제율
162만 5천엔 이하	55만엔
162만 5천엔 초과~180만엔 이하	급여액 × 40% - 10만엔
180만엔 초과~360만엔 이하	급여액 × 30% + 8만엔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급여액 × 20% + 44만엔
660만엔 초과~850만엔 이하	급여액 × 10% + 110엔
850만엔 초과	195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shikata_r02/pdf/16.pdf(검색일자: 2020. 5. 20.)

6)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정리

- 근로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특정 비용의 합계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통근비용
 - 전근에 따른 이사비용
 - 직무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비용(업무관련 훈련비·도서비)
 -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비용 등

- 자녀보육비와 같은 가사비용은 실제 필요경비와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대상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 보험료, 의료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기부금, 재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것이 있음
 - 사회보장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 의료비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친족의 경우 최대 200만엔 한도로 소득공제
 - 생명보험료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최대 4만엔을 한도로 소득공제
 - 지진보험료는 최대 5만엔을 한도로 소득공제
 - 2천엔을 초과하는 특정기부금은 총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

4) 호주⁷⁾

- 호주의 개인소득세 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인적공제로 구성됨
 - 항목별 공제는 다시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 구분됨

7)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정리

-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한 업무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됨
 - 개산공제 방식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업무 관련 차량비용
 - 업무 관련 출장비용
 - 업무 관련 의복비용 및 세탁비용
 - 업무 관련 납세자 본인의 교육비 등이 공제 대상
 - 고용주나 제3자에 의해 보전된 경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가사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한도 규정은 없으나, 공제액 총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됨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대상에는 기부금, 세무 관련 지출, 교육비, 퇴직연금이나 퇴직저축계좌에 불입한 기여금 등이 있음
 - 공제가 허용되는 적격단체에 2호주달러 이상의 물품이나 금품을 기부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 대상
 - 재해 피해자 지원 인가단체에 대한 10호주달러 이하의 기부금은 증빙 없이 공제 가능
 - 토지, 예술품, 기념품 등의 자산을 적격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소득에서 공제
 -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 납세자의 세무신고, 세무자문, 세무자료 제출 관련 지출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 과태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
 - 납세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
 - 교과서, 문방용품, 학생회비, 특정 수업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
 - 단, 해당 비용을 근로소득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경우 중복 공제는 불가
 - 납세자가 퇴직연금, 퇴직저축계좌에 불입한 연금저축 기여금은 소득공제 대상

5) 캐나다⁸⁾

-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인적공제로 구성됨
 - 항목별 공제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 구분됨

- 캐나다는 근로소득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과 개산공제 방식의 급여소득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음
 - 급여소득자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구분됨
 - 소득공제 항목에는 연간 협회·전문가 회원비, 이사비용, 자녀양육비, 장애지원, 기타 근로 관련 필요경비 등이 있음
 - 세액공제 항목에는 고용보험료, 소방·구급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교구비용 등이 있음

- 근로 관련 필요경비 항목별 소득공제 대상에는 연간 협회·전문가 회원비, 이사비용, 자녀양육비, 장애지원 등이 있음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연간 협회·전문가 회원비
 - 직업상 이유로 주거지를 40km 이상 이전하게 된 경우 이사 관련 지출비용
 - 세금신고를 위한 세무비용
 - 맞벌이 부부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자녀양육비용
 - 실제 지출한 비용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근로소득 2/3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 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근로제공, 사업영위, 학업수행을 위해 지출한 보조장비 비용 등
 -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서비스 비용,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서비스 및 교육비용 등

8) 안종석·박수진·이서현(2017)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정리

- 고용주에 의해 보전되지 않은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기타 근로필요경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음
 - 회계/법무 비용, 자동차 비용, 여비와 주차비, 소모품비, 임차료 등
 - 임금 수령을 목적으로 지출된 회계 및 법무 비용
 - 자동차 비용에는 자동차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면허 등록비, 감가상각비, 구입대출금 이자, 리스 비용 등
 - 여비와 주차비는 급여소득자가 고용주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식비와 숙박비
 -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한 문구용품 등의 소모품비
 - 업무상 필요로 인해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료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소득공제 대상에는 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이 있음
 -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 저축 불입액은 근로소득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가능

다. 소결

- 이상에서 국내·외 소득세 과세 체계 중 ‘숙박비 공제제도’와 유사성이 높은 제도를 살펴보았음

- ‘숙박비 공제제도’는 소득 활동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기존의 소득·세액공제제도들과 유사성이 있음
 - 해당 규정들은 주로 저축, 투자, 그리고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출 항목들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저축, 투자, 주거 안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법」상 공제제도로 최근 도입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존재함
 - 소득 활동과 무관한 특수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음
 - 저축, 투자, 주거 안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책목표임을 고려

할 때 특수 지출 항목을 공제하는 두 제도 모두 기존 소득공제 체계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항목으로 이해됨

- 해외 주요국의 소득공제 체계를 살펴본 결과 ‘숙박비 공제제도’와 같이 근로와 무관한 소비에 대해 공제를 제공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주요국의 소득공제 체계는 업무관련 지출, 근로 필요경비, 그리고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 구성됨
 - 이 중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 ‘숙박비 공제제도’와 같은 형태를 발견할 수 없음

- 이상의 조사 결과는 ‘숙박비 소득공제’ 제도가 소득세 공제 체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시사함
 - 소득세 공제의 기본 개념은 소득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임

2. 관련 선행연구

-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검토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숙박(관광) 시설에 (부가)세금을 부과했을 때 숙박(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인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⁹⁾
 - Mak(1979), Jensen & Wanhill(2002), Aguil, Riera, & Rossell(2005), Gago & Labandeira & Fidel Picos & Rodríguez(2009)의 경우에는 호텔(관광)의 세금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호텔(관광)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 반면, Bonham & Fujii & Mak(1992)와 Tsai, Kang & Suh(2006)는 세금 부과로 인한 호텔(관광) 가격 변동이 호텔(관광)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

9)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박상곤(2015)을 인용하였음

- 다만 기존 해외연구의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과세변화에 따른 관광업(tourism)의 수요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지 본 제도처럼 소득공제와 같은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는 점
 - 특히 호텔에 대한 수요는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반응(Tsai, Kang, Yeh & Suh, 2006)하거나 교통(보다 정확히는 가솔린)비용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Enz, & Canina, 2002) 일종의 부가세형식의 하와이 지방정부의 5% 세금 부과에 경우 호텔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Bonham, Fujii, and Mark, 1992)
- 국내 연구로서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안에 대한 KDI 연구(KDI 공공투자센터, 2019)¹⁰⁾
- 이 분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의한 비용 대비 효과비율이 어떤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평균 0~3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효과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판단
- 국내 여행 소비지출의 소득공제 도입을 연구한 김희수·이성태(2016)¹¹⁾는 단체여행비와 숙박비만을 공제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제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손실은 2,155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정작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숙박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계산하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온전한 의미의 소득공제제도의 비용편익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를 연구한 박상곤(2015)¹²⁾의 분석에 따르면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로 인해 재방문의향 변수가 7.0%, 타인추천의향이 6.7% 증가했고,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0.7~0.9임을 고려할 때, 실제 재방문율은 4.8~6.3%, 타인 추천 행동은 4.6~6.0%만큼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음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

1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9),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KDI

11) 김희수·이성태(2016), 『국내여행 소비지출의 소득공제 도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박상곤(2015),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제도의 쟁점사항

- 본 제도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먼저 (1) 정책적 관점에서 ① 숙박비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②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③ 조세특례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되고 정확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④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숙박비 소득공제제도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어 애초 도입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임

-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숙박비 소득공제 정책이 정부가 추진해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정신과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정책인지를 판단

-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이와 같은 정책제안이 돌발적 혹은 대중 영합적 성격을 갖는 일회성 정책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부 정책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판단

-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숙박비 소득공제제도의 정책목표가 그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명확한지 여부
 - 더 나아가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를 통한 관광시장의 확대와 관광산업(특히 관광숙박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정부가 조세지원이라는 특정한 재정지출 방식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봄
 - 먼저 관광산업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살펴본 뒤 조세특례의 적시성의 관점에서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관광숙박업의 지원을 위해 숙박비 소득공제와 같은 조세지출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봄

-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공제 대상이 되는 숙박기관은 국내 숙박사업자에 한함
 - 따라서 모텔/여관업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공유숙박)을 제외한 것이 타당한 정책적 선택이었는지 판단

- 아울러 국내 숙박업체 중 본 제도를 통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업종이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선별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임

-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 관광숙박업의 지원이라는 산업정책의 목표를 조세지출, 그것도 근로소득세상의 소득 공제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것임
 - 근로소득세상 소득공제 형식을 채택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숙박비 지출에 단체 여행비나 온라인 구매(OTA)를 제외한 결정이 타당한지

- 경제적 관점에서 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숙박비와 여행경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함
 - 이를 위해 ① 국민여행실태 조사 ②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여행경비지출과 숙박비 지출의 변화를 추정함
 - 숙박비 공제제도의 공제한도가 소득구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별 숙박비와 여행경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추정
 -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된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

- 형평성 분석 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
 - 이를 위해 2018년 귀속분 100만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 적용에 따른 실제 결정세액 변동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Ⅲ. 정책성 분석



III.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 서비스 산업으로서 관광산업(관광 숙박업) 지원의 필요성
 - 서비스 산업은 GDP의 50%, 전체 일자리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김용성 외,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KDI, 2019)

- 서비스 산업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 최근 들어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이외에도 일자리 기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
 - 고용창출에 있어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주요 산업에 비해 약 2~3배 정도 높음
 - 부가가치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산업인 반도체·전자(5.3명), 자동차(8.6명), 선박(8.2명)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산업(17.3명)의 취업자 수는 이를 능가함(김용성 외(2019))¹³⁾
 - 특히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높아, 2017년 기준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관광산업 일자리(3.13억개)
 - 한국에서의 취업유발계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관광산업 18.9명, 서비스업 17.3명, 제조업 8.8명임(김용성 외(2019), 이수일(2019))¹⁴⁾

-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관광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 관광은 국민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가 높은 산업으로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생활습관이 정착됨에 따라 그 어느 산업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13) 김용성 외(2019)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KDI

14) 이수일(2019) 「관광산업의 도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KDI

-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 1위가 관광활동(38.3%), 2위 문화예술관람(12.2%), 스포츠활동(12.2%) 순임¹⁵⁾

- 저생산성의 늪에 빠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서비스 산업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자의 저생산성, 시장 규모의 영세성, 정부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성장이 담보된 상태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이를 위한 정부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국내여행 시장(김희수·이성태 2016)
 - 소득의 증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해외여행에 대한 폭발적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반면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실제 2010년대 들어와 해외여행 참가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내여행 참가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고 있음
 -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2010~2017년 사이 해외여행 증가율은 연평균 약 12%인 데 반해 국내여행의 경우는 4%에 지나지 않음
 - 그 중에서도 숙박여행의 증가율은 더욱 더디게 증가
 - 당일 여행은 연평균 7% 수준으로 늘어난 데 반해 숙박여행은 4% 수준으로 머물고 있음
 - 그 외의 국내여행 참가자 수, 참여횟수, 이동 총량 면에서 국내 관광시장은 정체상태
 -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판촉 행사 외에 관광비용의 인하와 같은 가격개입 정책을 통해 국내 관광수요를 비약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15) 관계부처합동, 「[관광진흥기본계획]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2017. 12. 18.

- 본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관광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비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새로운 국내 여행 수요를 창출시켜 국내관광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표 III-1〉 국내외 여행 참가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여행 참가자	국내여행	30,917	35,013	36,914	37,800	38,027	38,307	39,293	40,484
	숙박여행	26,048	27,651	30,227	31,058	32,213	32,084	32,372	34,041
	당일여행	20,012	26,234	28,649	30,012	30,651	30,202	30,540	32,008
국외여행 참가자	해외여행	12,694	13,737	14,846	16,081	19,310	22,383	26,496	28,696

자료: 국내여행참가자는 국민여행조사(문화체육관광부 발표), 해외여행참가자는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발표)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 국내외 여행 참가자 수 증가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여행	국내여행	13	5	2	1	1	3	3
	숙박여행	6	9	3	4	0	1	5
	당일여행	31	9	5	2	-1	1	5
국외여행	해외여행	8	8	8	20	16	18	8

자료: 국내여행참가자는 국민여행조사(문화체육관광부 발표), 해외여행참가자는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발표)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일련의 정책의 일환
 -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의 육성이 73번째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주요 아젠다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었음
- 2017년 11월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기본계획(5개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
 -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을 위한 일련의 재정지원 사업 수행

- 관광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도 존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2014년 도입)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정책(2016년 도입)을 시행하고 있음(<표 III-3> 참고자료 1)
 - 이러한 제도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반면에 국내여행업의 지원과 관련된 조세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비

- 따라서 이번에 제안되는 국내 여행 숙박비 공제제도는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행복 및 복지 증진’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목표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이라는 정책과 부합하는 제안으로 판단됨

<표 III-3> 참고자료 1

<p><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 (적용대상)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시기)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존재했다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재도입되어 1년을 시한으로 운영된 바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기여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 ○ (적용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시기) 2016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계약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외국인관광객(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중 국내 주재 외교관·외국공관원·국제연합군·미군 장병 및 군무원 제외) ○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안면교정술 제외
--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가. 명확성에 대한 검토

- 본 조세지출의 정책적 목표는 관광숙박업(관광산업) 육성
 - 본 조세지출제도의 도입 목적은 숙박비 소득공제라는 조세지출정책을 통해 숙박비를 하락시켜 국내여행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① 관광숙박업 ② 전후방 연관 서비스 산업인 음식업, 운송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를 늘려 궁극적으로 ③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임
 - 본 제도 도입의 1차적 정책목표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숙박업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
 - 2차적 정책목표는 여행객 증가로부터 파생되는 관광업의 연관 서비스 산업인 음식업, 운송서비스업의 성장
 - 최종 정책목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내수 시장의 육성

- 1차적 정책목표와 2차적 정책목표는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
 - 제도 도입 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관광숙박업 및 그 전후방 연관산업인 운송서비스업 및 음식업 등의 매출액 혹은 고용 증가분을 측정함으로써 정책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

- 최종 정책목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내수 시장의 육성은 단기간에 측정 가능한 정책목표는 아님

나. 정책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 관광숙박업(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출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① 산업간 형평성의 측면 ②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의 측면 ③ OECD 회원국 간 비교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1) 산업간 형평성의 관점

- 국내숙박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은 현재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적인 정부의 금융·재정 조세정책의 수혜 범위를 서비스업인 관광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업간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제조업은 다양한 예산(재정지원), 세제, 금융제도와 같은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한계에 봉착
- 반면 서비스업은 예산비중, 증가율, 조세지출액 측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후순위의 정책으로 평가받아왔음
- (예산비중) 중앙정부 예산의 분야별 재원지출을 살펴보면 2020년 본 예산 기준(전체 약 512.3조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약 7.2조원 수준
 - 전체 예산의 약 1.6% 수준
 - 반면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약 23.7조로 전체 예산의 4.6% 수준
 -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이는 약 3.3배 수준
- (예산증가율)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023년 약 9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연평균 증가율은 약 5.4%)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의 경우 2023년 약 29.9조원 예상(연평균 증가율은 12.4%)
 - R&D 분야 예산의 경우 2023년 약 30.9조원 예상(연평균 증가율은 10.8%)
 - SOC 분야 예산의 경우 2023년 약 23.7조원 예상(연평균 증가율은 4.6%)

<표 III-4> 분야별 재원지출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회복지	89.8 (26.6)	98.4 (28.3)	107.0 (28.8)	112.4 (29.2)	121.0 (29.8)	136.0 (31.3)	148.9 (31.7)	167.0 (32.6)
일반·지방행정	57.1 (16.9)	57.7 (16.6)	57.1 (15.3)	60.9 (15.8)	64.3 (15.8)	68.4 (15.8)	76.6 (16.3)	79.0 (15.4)
교육	48.5 (14.4)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6)	64.3 (14.8)	70.6 (15.0)	72.6 (14.2)
국방	32.9 (9.7)	33.8 (9.7)	35.6 (9.6)	36.8 (9.6)	37.9 (9.3)	41.2 (9.5)	45.3 (9.7)	48.7 (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 (4.8)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8.8 (4.3)	18.8 (4.0)	23.7 (4.6)
농림수산	17.8 (5.3)	17.0 (4.9)	19.1 (5.1)	18.7 (4.9)	19.4 (4.8)	19.6 (4.5)	20.0 (4.3)	21.5 (4.2)
공공질서 및 안전	15.2 (4.5)	15.8 (4.5)	16.7 (4.5)	17.5 (4.5)	18.3 (4.5)	18.8 (4.3)	20.1 (4.3)	20.8 (4.1)
교통 및 물류	18.2 (5.4)	18.0 (5.2)	20.9 (5.6)	19.1 (4.9)	18.5 (4.5)	15.3 (3.5)	15.7 (3.3)	19.2 (3.7)
보건	8.8 (2.6)	9.2 (2.6)	11.2 (3.0)	10.5 (2.7)	10.3 (2.5)	10.7 (2.5)	12.1 (2.6)	13.5 (2.6)
환경	6.1 (1.8)	6.1 (1.8)	6.7 (1.8)	6.9 (1.8)	7.1 (1.7)	7.0 (1.6)	7.4 (1.6)	9.0 (1.8)
과학기술	5.8 (1.7)	6.0 (1.7)	6.5 (1.7)	6.7 (1.7)	7.0 (1.7)	7.0 (1.6)	7.3 (1.6)	8.2 (1.6)
문화 및 관광	5.0 (1.5)	5.2 (1.5)	6.2 (1.7)	6.7 (1.7)	6.9 (1.7)	6.3 (1.5)	7.2 (1.5)	8.0 (1.6)
통신	7.3 (2.2)	6.8 (1.9)	6.4 (1.7)	6.2 (1.6)	6.2 (1.5)	6.2 (1.4)	7.3 (1.6)	7.9 (1.5)
통일·외교	3.1 (0.9)	2.9 (0.8)	3.1 (0.8)	3.8 (1.0)	3.3 (0.8)	3.7 (0.8)	5.1 (1.1)	5.5 (1.1)
국토 및 지역개발	5.0 (1.5)	4.4 (1.3)	4.5 (1.2)	4.0 (1.0)	3.5 (0.9)	3.7 (0.8)	4.1 (0.9)	4.0 (0.8)
예비비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3.0 (0.6)	3.4 (0.7)
세출 외	0.3 (0.1)	0.2 (0.1)	0.2 (0.1)	0.3 (0.1)	4.0 (1.0)	6.6 (1.5)	- (-)	- (-)
합계	337.7 (100.0)	347.9 (100.0)	372.0 (100.0)	384.9 (100.0)	406.6 (100.0)	434.1 (100.0)	469.6 (100.0)	512.3 (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III-5> 12대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노동	106.4 (29.9)	120.4 (31.3)	126.9 (31.8)	131.9 (32.2)	144.6 (33.4)	163.2 (34.3)	180.5 (35.2)	198.4 (36.3)	213.2 (37.1)	229.1 (37.9)	9.2
교육	50.7 (14.2)	52.9 (13.8)	55.1 (13.8)	59.4 (14.5)	64.2 (14.8)	70.8 (14.8)	72.6 (14.1)	76.0 (13.9)	79.1 (13.7)	82.0 (13.6)	3.8
문화·체육·관광	5.4 (1.5)	6.4 (1.7)	6.9 (1.7)	7.0 (1.7)	6.5 (1.5)	7.3 (1.5)	8.0 (1.6)	8.3 (1.5)	8.6 (1.5)	9.0 (1.5)	5.4
환경	6.5 (1.8)	6.9 (1.8)	7.0 (1.8)	7.1 (1.7)	6.9 (1.6)	8.6 (1.8)	9.0 (1.8)	9.6 (1.8)	10.1 (1.8)	10.6 (1.8)	9.3
R&D	17.7 (5.0)	18.9 (4.9)	19.1 (4.8)	19.5 (4.8)	19.7 (4.6)	20.6 (4.4)	24.2 (4.7)	26.7 (4.9)	28.7 (5.0)	30.9 (5.1)	10.8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5.4 (4.3)	18.1 (4.7)	18.6 (4.7)	18.8 (4.6)	16.3 (3.8)	20.5 (4.3)	23.7 (4.6)	26.4 (4.8)	28.0 (4.9)	29.9 (5.0)	12.4
SOC	23.7 (6.7)	26.1 (6.8)	23.7 (5.9)	22.2 (5.4)	19.0 (4.4)	20.5 (4.3)	23.2 (4.5)	23.4 (4.3)	23.7 (4.1)	23.7 (3.9)	4.6
농림·수산·식품	18.7 (5.3)	19.8 (5.1)	19.6 (4.9)	19.8 (4.8)	19.7 (4.6)	20.3 (4.3)	21.5 (4.2)	21.5 (3.9)	21.9 (3.8)	22.2 (3.7)	2.6
국방	35.7 (10.0)	37.6 (9.8)	38.8 (9.7)	40.3 (9.8)	43.2 (10.0)	46.7 (9.8)	50.2 (9.8)	53.4 (9.8)	56.4 (9.8)	59.5 (9.9)	6.2
외교·통일	4.2 (1.2)	4.5 (1.2)	4.7 (1.2)	4.6 (1.1)	4.7 (1.1)	5.1 (1.1)	5.5 (1.1)	5.9 (1.1)	6.3 (1.1)	6.6 (1.1)	4.0
공공질서·안전	15.8 (4.4)	17.1 (4.4)	17.5 (4.4)	18.2 (4.4)	19.1 (4.4)	20.2 (4.2)	20.8 (4.1)	21.8 (4.0)	22.7 (3.9)	23.5 (3.9)	6.9
일반·지방행정	57.2 (16.1)	58.2 (15.1)	62.9 (15.8)	65.1 (15.9)	69.0 (15.9)	76.7 (16.1)	79.0 (15.4)	82.4 (15.1)	84.3 (14.7)	86.1 (14.3)	3.0
합계	355.8 (100.0)	384.7 (100.0)	398.5 (100.0)	410.1 (100.0)	432.7 (100.0)	475.4 (100.0)	512.3 (100.0)	546.8 (100.0)	575.3 (100.0)	604.0 (100.0)	6.5

주: 1. () 안은 비중임

2. 2019년까지 추경, 2020년 본예산, 2021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3. 연평균 증가율은 2019~2023년 연평균(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총액)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8년 문화 및 관광 분야 조세지출은 419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0.1% 수준에 불과
 - 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조세지출은 13.1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29.8% 수준
 - 교통 및 물류 조세지출은 5,023조원(1.1%), 농림수산 5.6조원(12.9%)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수준

- 더 나아가 문화 및 관광분야 조세지출은 오히려 감소 추세
 - 2018년 전체 조세지출예산의 0.1% 수준이던 문화 및 관광분야 조세지출은 2019년 0.08%, 2020년 0.04%로 하락 추세
 - 금액 역시 419억원(2018년) → 405억원(2019년) → 217억원(2020년)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표 III-6>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7,430	6.24	28,751	5.73	29,884	5.76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통일	9	0.00	8	0.00	9	0.00
4 국방	395	0.09	334	0.07	345	0.07
5 교육	13,983	3.18	13,773	2.75	14,498	2.79
6 문화 및 관광	419	0.10	405	0.08	217	0.04
7 환경	11,226	2.55	11,781	2.35	12,683	2.44
8 사회복지	119,157	27.11	174,972	34.90	176,186	33.94
9 보건	61,085	13.90	67,057	13.37	70,778	13.63
10 농림수산	56,634	12.89	59,895	11.95	62,450	12.0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1,122	29.83	127,533	25.44	134,414	25.89
12 교통 및 물류	5,023	1.14	4,855	0.97	5,052	0.97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2,996	2.96	11,986	2.39	12,549	2.42
15 과학기술	53	0.01	31	0.01	32	0.01
16 예비비	-	-	-	-	-	-
합 계	439,533	100.0	501,382	100.0	519,097	100.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2019. 8. 29.16)

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2019. 8. 2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29636&searchBbsId=MOSFBBS_00000000028(검색일자: 2020. 7. 10.).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액 기준 개별 사업별 조세지출 현황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서비스업 경시’ 경향이 그대로 관찰됨

- 주로 대규모 R&D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유리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약 2.3조원, 2018년 기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약 1.1조원, 2018년 기준) 등은 상위에 올라가 있음

<표 III-7>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단위: 억원, %)

순위	2018년(실적)		2019년(전망)		2020년(전망)	
	세액공제	액	세액공제	액	세액공제	액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4,999	근로장려금 지급	49,552	근로장려금 지급	44,975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7,757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8,676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0,721
3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26,919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30,310	연금보험료공제	31,910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79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307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31,445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2,21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2,79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4,798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1,17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2,55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3,420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9,1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2,4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3,383
8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17,47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35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1,311
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324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18,673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19,391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4,09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5,35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6,164
11	근로장려금 지급	13,38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5,2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6,005
12	자녀세액공제	13,147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2,67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545
1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56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48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3,146
14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751	자녀세액공제	12,333	자녀세액공제	12,491
15	농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11,564	농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11,976	농업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12,407
1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1,414	연금계좌세액공제	11,539	연금계좌세액공제	12,149
17	연금계좌세액공제	10,89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92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694
18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24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9,68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0,055
1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8,888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7,771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8,082
20	법인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7,597	자녀장려금	7,391	고용증대 세액공제	7,445
	합계 (전체 조세지출 대비, %)	332,323 (75.6)	합계 (전체 조세지출 대비, %)	381,971 (76.2)	합계 (전체 조세지출 대비, %)	393,537 (75.8)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2019. 8. 29.17)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2019. 8. 2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29636&searchBbsId=MOSFBBS_00000000028(검색일자: 2020. 7. 10.).

- 상위 20개 항목 중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약 2.2조원이 유일한 것으로 보임(2018년 기준)
 - 1992년 제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책대상으로 가장 먼저 규정되고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됨
 - 관광사업의 경우 2002년 포함됨
 - 이 경우에도 카지노나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제외되었음

〈표 III-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책대상 업종변천

개정일자	감면업종
1992. 12. 8	제조업
1994. 12. 22	정보처리업(정보처리업 → 정보서비스업(2008. 12. 26. 개정)) 컴퓨터운용관련업(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 12. 26. 개정))
1995. 12. 29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2000. 12. 29	광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함(2002. 12. 11. 개정)) 하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축산업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 작물재배업(2005. 12. 31. 개정))
2002. 12. 11	영화산업, 전기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뉴스제공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기존 공연산업에서 변경(2008. 12. 26. 개정)),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2005. 12. 31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 선박관리업, 전시산업, 광고업
2008. 12. 26	출판업, 정보서비스업(정보처리업 → 정보서비스업(2008. 12. 26. 개정))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2010. 1. 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2011. 12. 31. 개정),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사업
2010. 12. 27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3. 1. 1	사회복지서비스업
2014. 1. 1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 제외)
2014.12.23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5.12.1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6.12.27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임업

자료: 법률정보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관광업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에 따라 상이함
- 관광업은 원칙적으로 기업규모, 소재지에 따라 10~30%의 혜택을 누리게 됨
 - 하지만 관광 숙박업이 중기업 규모이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됨

〈표 III-9〉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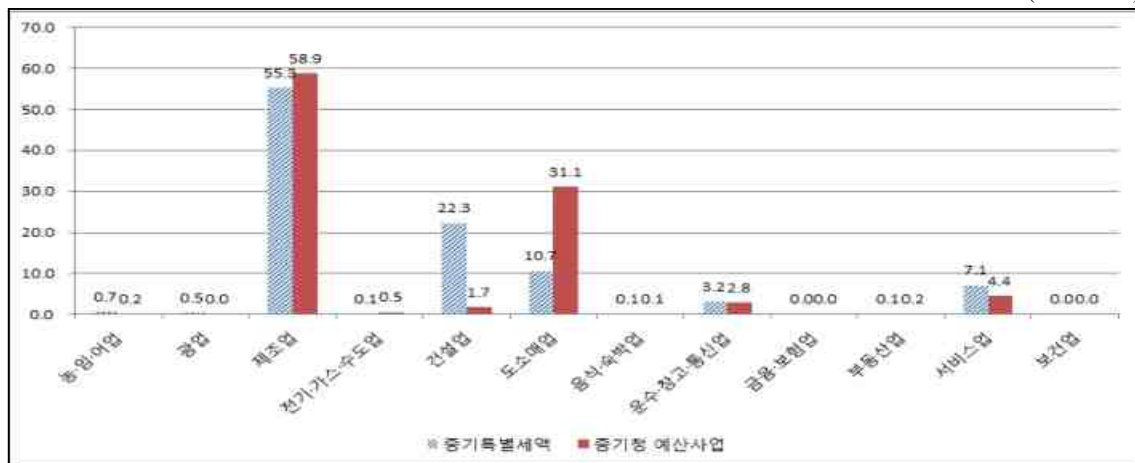
구분	업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그 외 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	5
	그 외 업종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자료: 법률정보사이트 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실제 자료를 통해 음식 및 숙박업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살펴봄(2015년 기준)
 - 업종별 수혜금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설업(약 22%), 도소매업(약 11%) 순임
 - 음식 및 숙박업은 약 0.1% 수준임
 - 업종별 수혜법인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는 반면 음식 및 숙박업은 약 0.1% 수준임

[그림 III-1] 업종별 수혜금액 기준 비중(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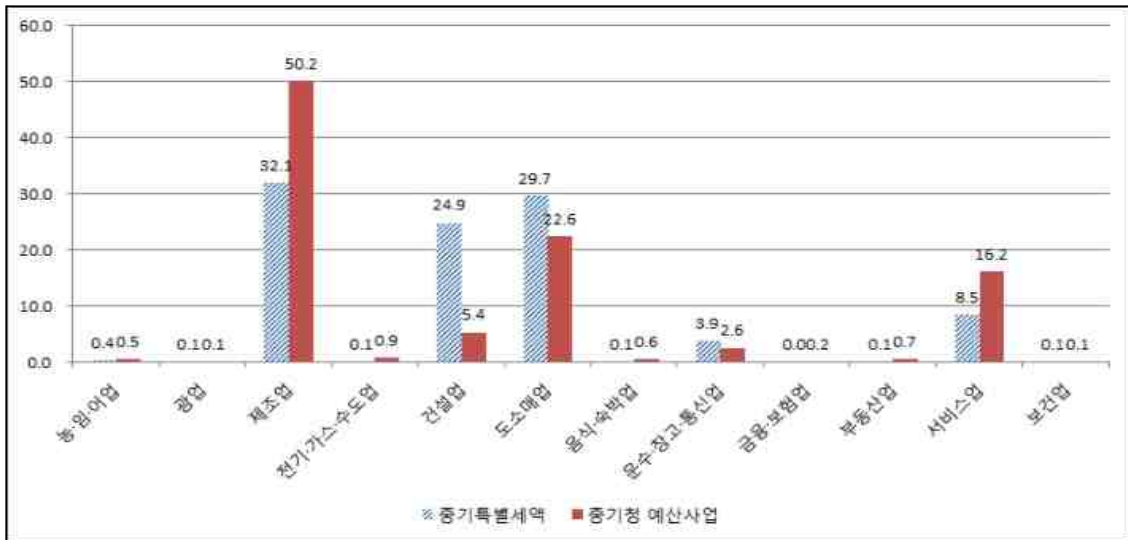


자료: 김학수·우석진, 『20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현행 조세지출제도는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III-2] 업종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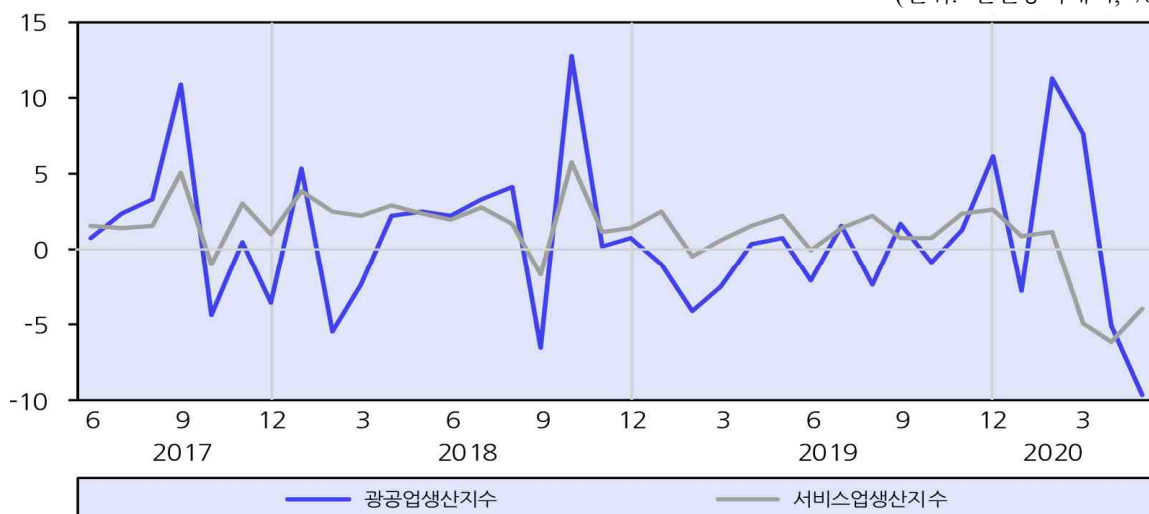
자료: 김학수·우석진, 『20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의 심각성
 - 올 초부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내외 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됨(KDI, 『경제동향』 7월호)
 - 모든 산업에서 극심한 수준의 경기위축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서비스업의 충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
- 특히 사람과 접촉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큰 충격에 노출
 - 관광·숙박·음식업 등 인적 대면을 전제로 한 서비스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충격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 이로 인해 관광산업은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음

[그림 III-3]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KDI, 『경제동향』, 2020년 7월호

- (기업경기실사지수) 관광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살펴본 충격의 정도
 - 업황, 매출규모, 외부 고용사정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20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2020년 들어와서 눈에 띄 정도로 악화된 것이 감지됨
- 관광산업 전체 업황의 경우 2019년 4분기 88.6이었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1분기 들어와서 31.3으로 곤두박질침
 - 전년인 2019년 지수 평균 84.0, 2018년 지수 평균 81.2에 비교했을 때 각각 지수가 거의 50 이상 빠진 것임
 - 전체 업황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의 감소폭은 업황지수보다 더 커 보임
 - 외부 고용사정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지수의 하락폭이 큰 것은 마찬가지임

<표 III-10> 기업경기실사지수(관광산업)

시기	2020년	2019년				2018년			
	1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업황	31.3	88.6	85.1	87.3	74.9	83.6	78.3	89.2	73.7
매출 규모	25.1	80.7	80.3	78.8	68.7	83.4	71	88.3	72.1
외부 고용사정	70.2	94.5	91.1	89.9	88.5	91.4	91.2	94.9	87.2

자료: 관광사업체 조사.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subject/subject03.html>(검색일자: 2020. 7. 20.)

- 관광업 중에서 코로나19의 충격에 보다 심하게 노출된 산업이 대면접촉을 전제로 한 관광식당업과 숙박업임
- 관광식당업과 숙박업은 코로나19의 건강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2020년 1분기에는 지속성 자체의 위기에 직면
 - 관광식당업의 경우 2019년 4분기 98.1에서 2020년 1분기 28.9로 무려 69.2 감소했고, 관광숙박업도 사정이 비슷해서 2019년 4분기 83에서 2020년 1분기 27.1로 무려 55.9 감소
 - 매출이나 고용 모두 심각한 지경

<표 III-11> 기업경기실사지수(관광식당 및 숙박업)

관광산업	시기	2020년	2019년			
		1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관광식당업	업황	28.9	98.1	77.8	79.4	68
	매출규모	20.5	94.4	69.8	66.4	60.1
	외부 고용사정	68.9	96.6	85.6	85.7	84.6
관광숙박업	업황	27.1	83	90.3	90.6	75.8
	매출규모	21.1	75.2	84.8	85.5	70
	외부 고용사정	61.5	90.5	93.8	95.9	89.1

자료: 관광사업체 조사 <http://stat.mcst.go.kr/mcst/WebPortal/public/subject/subject03.html>(검색일자: 2020. 7. 20.)

- (중소기업중앙협회 인식자료) 중소기업중앙협회가 1,2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업종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른 업종보다 큰 충격을 받고 있음
 - 이 두 업종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전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¹⁸⁾
- (여신금융협회 매출액 자료) 여신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과 관련이 높은 몇 개 업종의 경우 2월부터 큰 폭의 하락세가 시작되어 3~4월 최저치 기록(KBS 뉴스)¹⁹⁾

18)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로 섬유제품업(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비제조) 피해심각」, 2020. 5. 11.

- 항공이나 철도, 버스 등이 포함된 운수업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69.2% 감소(4월 기준, 4,500억원)
 - 여행사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52.8% 감소(4월 기준, 1,900억원)
 - 호텔 등이 들어간 숙박 및 음식점업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3.4% 감소
-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8대 분야의 서비스업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84억원 수준의 쿠폰 발급 계획을 갖고 있음(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숙박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 예약 시 3만~4만원의 할인 쿠폰 제공
 - 국내 관광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

3) OECD 회원국과의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 호텔업종과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상태
- OECD 35개 회원국들에서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4.2%, 고용비중은 6.9%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GDP 비중이 1.8%, 고용 비중은 2.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KDI 2019)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소결론> 결론적으로 본 제도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적지 않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을 받아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면과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충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관광 숙박업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내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적시성이 인정됨

19) 『KBS 뉴스』, 「카드실적 전수분석, “① 코로나19 얼마나 강한가?..데이터로 본 소비 충격”」, 2020. 5. 30.
<https://news.v.daum.net/v/20200530100859966?fbclid=IwAR2s-WXHsxZvCfxlpj8xa4ZSDw0IBs9eMxzmdY3w8-EUaVvQlqiEmaMcQ>(검색일자: 2020. 6. 5.)

<표 III-12> 업종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 여부

(단위: %)

구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중소기업	76.2	18.4	5.4
제조업	78.2	16.0	5.8
10. 식료품	83.3	13.3	3.3
11. 음료	70.0	25.0	5.0
13. 섬유제품	100.0	-	-
14. 의복 및 모피제품	83.3	13.9	2.8
15. 가죽, 가방 및 신발	96.2	3.8	-
16. 목재 및 나무제품	65.6	21.9	12.5
17. 펄프 및 종이제품	66.7	25	8.3
18. 인쇄 기록매체 복제	89.7	6.9	3.4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6.7	33.3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87.5	12.5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89.3	7.1	3.6
23. 비금속 광물제품	52.2	34.8	13.0
24. 1차 금속	76.9	7.7	15.4
25. 금속가공제품	61.8	29.4	8.8
26. 전자,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75.0	16.7	8.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80.0	16.0	4.0
28. 전기장비	84.4	9.4	6.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78.6	17.9	3.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83.9	9.7	6.5
31. 기타 운송장비	59.1	31.8	9.1
32. 가구 제조	77.3	18.2	4.5
33. 기타 제품	81.0	9.5	9.5
비제조업	74.3	20.6	5.1
건설업	49.2	42.9	7.9
서비스업	77.1	18.2	4.8
도매 및 소매업	85.7	9.5	4.8
운수업	76.3	11.9	11.9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	-
정보통신업	64.8	32.4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66.0	25.5	8.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6.2	25.4	8.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3.8	29.8	6.4
교육서비스업	92.6	7.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4	11.4	2.3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87.0	13.0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코로나로 섬유제품업(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비제조) 피해 심각」, 2020. 5. 11.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숙박비 소득공제 정책의 궁극적 수혜자는 국내 여행업자 중 국내 숙박사업자
 - 제안서에 따르면 국내 숙박사업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임
 - 대상 숙박업체는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등이 포함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도입 후 시행령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정책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음

-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체
 - 해외 여행객의 국내 숙박업체의 이용 경비는 숙박업체의 업종을 불문하고 전부 제외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체라 할지라도 여관 및 모텔 제외

- 여관 및 모텔을 제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 찬반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찬성> 여관 및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숙박업상의 숙박업체일 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또한 여관 및 모텔을 포함시킬 경우 관광목적이 아닌 기업출장자와 같은 사업목적의 경우에도 혜택이 돌아가는바, 이 경우 회사(법인)는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 혜택을, 개인의 경우 다시 소득세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²⁰⁾
 - <반대> 숙박업의 인기에 힘입어 과거의 음습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텔이나 여관 역시 사실상 양질의 관광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관광숙박업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²¹⁾

20) 적지 않은 기업에서 국내 출장 시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뒤 그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21) 예컨대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시장의 선두주자인 야놀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글로벌 여행 서비스 기업 부킹홀딩스로부터 1억 8,000만달러(약 2,12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속칭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유니콘 반열에 올랐음. 야놀자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 기업 출장자와 관련된 이슈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
- 국내 여행객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한 지출 역시 제외
 -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지출은 해외 고객의 지출이기 때문에 제외
 -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유숙박과 같은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숙박형태이기 때문에 제외
 - 현재로서는 공유숙박업 자체가 국내 여행객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숙박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이번 제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만약 정부가 이후 법을 개정하여 공유숙박업 자체를 합법화할 경우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에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20년 5월 20일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규제샌드 박스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영역으로 선언
- 이번 소득공제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관광숙박업체 중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 숙박비 소득공제제도를 관광숙박업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이해할 경우 이번 제안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지를 예측하고 산업정책 측면에서 이것이 적절한 선택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작업을 위해 국내 관광업 혹은 관광숙박업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봄
- **(숙박업체 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2,218개임(2019년말 기준)
 - 이 중 관광호텔업이 1,050개로 전체의 47%이고 관광호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이 959개로 전체의 43%, 나머지 10%가 휴양콘도업계로 235개 수준임

몇몇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숙박업체도 해내지 못한 한국의 숙박·여가 시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임. 야놀자의 투자유치에 대한 사실은 『시사저널』,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5년 격돌’ 스토리」 참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70>(검색일자: 2020. 7. 20.)

- 관광호텔 중 2성급 2등급 호텔이 265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3성급 1등급 호텔이 234개, 등급 없는 호텔이 228개 순임
- 5성급 특1급 호텔은 64개, 4성급 특2급 호텔은 111개 순임
- 관광호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이란 호스텔,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을 의미함

〈표 III-13〉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관광호텔업	5성급특1급 업체수	24	6	1	6	-	-	1	-	1	2	1	-	-	-	2	1	14	64	
	5성급특1급 객실수	10,890	2,293	342	2,514	-	-	200	-	287	347	328	-	-	-	764	166	4,068	22,199	
	4성급특2급 업체수	43	2	4	6	2	2	2	-	7	11	1	-	5	1	4	3	14	111	
	4성급특2급 객실수	12,019	767	558	1,433	325	516	403	-	1,381	2,384	180	-	650	104	1,009	586	2,622	24,937	
	3성급1등급 업체수	97	15	4	9	3	6	3	-	26	11	3	4	3	4	9	12	22	234	
	3성급1등급 객실수	16,309	2,206	202	892	245	603	1030	-	3,254	1,186	240	567	347	303	763	1007	1,721	30,875	
	2성급2등급 업체수	67	39	8	25	4	4	3	-	40	8	6	3	8	8	12	17	11	265	
	2성급2등급 객실수	5,406	3,655	427	2,107	271	201	263	-	2,575	412	326	147	490	386	664	778	616	18,724	
	1성급3등급 업체수	53	13	3	26	4	2	4	-	17	1	1	3	2	9	5	13	6	163	
	1성급3등급 객실수	3,298	603	158	1,337	209	94	181	-	1006	35	65	146	68	522	213	681	332	8,948	
	등급없음 업체수	49	6	4	12	-	1	4	-	32	11	7	3	9	20	7	3	60	228	
	등급없음 객실수	5,642	783	602	1,267	-	90	463	-	3,407	1,401	477	274	562	3739	483	242	6,256	25,688	
	소계 업체수	333	81	24	84	13	15	17	0	123	44	19	13	27	42	39	49	127	1,050	
	소계 객실수	53,564	10,307	2,289	9,550	1,050	1,504	2,540	0	11,910	5,765	1,616	1,134	2,117	5,054	3,896	3,460	15,615	131,371	
	수상관광호텔업	업체수	-	-	-	-	-	-	-	-	-	-	-	-	-	-	-	-	-	-
		객실수	-	-	-	-	-	-	-	-	-	-	-	-	-	-	-	-	-	-

<표 III-13>의 계속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전통 호텔업	업체 수	-	-	-	1	-	-	-	-	-	1	-	-	1	2	1	-	1	7
	객실 수	-	-	-	44	-	-	-	-	-	16	-	-	20	21	16	-	26	143
가족 호텔업	업체 수	21	1	-	2	-	1	1	-	14	14	2	4	6	10	3	21	62	162
	객실 수	3,192	37	-	69	-	80	35	-	836	968	102	211	2,172	682	150	1,292	3,972	13,798
호스텔 업	업체 수	96	72	3	70	1	-	-	-	16	10	2	6	8	227	24	28	165	728
	객실 수	3,036	694	47	936	6	-	-	-	584	114	35	440	148	897	373	416	4,166	11,892
소형 호텔업	업체 수	10	3	-	2	-	-	-	-	8	1	-	1	2	1	2	2	4	36
	객실 수	252	83	-	46	-	-	-	-	210	24	-	24	41	42	75	48	92	937
의료 관광 호텔업	업체 수	-	-	-	-	-	-	-	-	-	-	-	-	-	-	-	-	-	-
	객실 수	-	-	-	-	-	-	-	-	-	-	-	-	-	-	-	-	-	-
소계 (관광 호텔업 외)	업체 수	127	76	3	75	1	1	1	0	38	26	4	11	17	266	30	51	232	959
	객실 수	6,480	814	47	1,095	6	80	35	0	1,630	1,122	137	675	2,381	1,642	614	1,756	8,256	26,770
호텔업 합계	업체 수	460	157	27	159	14	16	18	0	161	70	23	24	44	282	69	100	359	1,983
	객실 수	60,044	11,121	2,336	10,645	1,056	1,584	2,575	0	13,540	6,887	1,753	1,809	4,498	6,696	4,510	5,216	23,871	158,141
휴양 콘도업 합계	업체 수	-	6	-	2	-	-	-	-	17	76	9	15	6	11	15	17	61	235
	객실 수	-	1,678	-	351	-	-	-	-	3,221	20,576	2,007	2,763	743	1,487	3,161	2,846	9,105	47,938
총계	업체 수	460	163	27	161	14	16	18	0	178	146	32	39	50	293	84	117	420	2,218
	객실 수	60,044	12,799	2,336	10,996	1,056	1,584	2,575	0	16,761	27,463	3,760	4,572	5,241	8,183	7,671	8,062	32,976	206,07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조사」

□ (숙박객실 수) 전체 객실 수는 약 20만 6천개 수준임

- 이 중 관광호텔업이 약 13만 1,300개로 전체의 64%이고 관광호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이 2만 6천개로 전체의 13%, 약 23%가 휴양콘도업계로 약 4만 8천개 수준임

- 관광호텔 중에서는 3성급 1등급 호텔이 약 3만 1천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등급 없는 호텔이 약 2만 6천개, 4성급 특2급 호텔이 약 2만 5천개, 5성급 특1급 호텔이 약 2만 2천개 순임
- **(평균 숙박매출액)** 관광숙박업체의 매출액을 분석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은 약 36.3억원 수준임
 - 관광사업체 연평균 매출액 7.6억원의 약 5배 수준임
 - 관광사업체 업종 중 카지노업의 1,779억원을 제외하고 국제회의업(약 14.7억원), 유원시설업(약 6.5억원)보다 높은 수준
- **(숙박매출액 분포)** 관광숙박업체의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숙박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약 43%이고 다음으로 1억~5억원 미만인 전체의 약 25%, 다음으로 1억원 미만이 약 17%, 5억~10억원 미만이 약 15% 수준이었음
 - 관광업 중 카지노업을 제외하고 국제회의업이나 여행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 호텔의 산업 내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관광숙박업체 업종별 평균 매출액)** 전체 관광숙박업체 매출액 평균은 36.3억원
 - 이 중에서 관광호텔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47.6억원이므로 전체 관광숙박업체 연평균 매출액보다 약 10억원 정도 높은 금액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평균 매출액이 약 98.1억원인 반면 기타호텔업은 약 5.6억원 수준에 그침
 - 매출액을 그 기업의 생산성이나 부가가치의 지표라고 했을 때 동일한 관광숙박업 사이에도 업종별로 그 정도가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음
- **(관광숙박업체별 매출액 분포)** 매출액 분포를 분석하면 관광호텔업과 나머지 숙박업체 간에 매출액 분포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관광숙박업체 전체로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약 42%로 가장 많았고 연매출 4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20% 수준이었음

<표 III-14> 관광사업체 매출액 분포(2018년)

(단위: %, 백만원)

		매출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억~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관광사업체		45.3	30.9	9.8	14.1	760
업종별	여행업	40	35.1	11.4	13.6	444
	관광숙박업	16.6	25.2	15.1	43.1	3,632
	관광객이용시설업	78.7	17.4	1.4	2.5	236
	국제회의업	33.4	18.2	9.6	38.8	1,471
	카지노업	0	5.9	0	94.1	177,962
	유원시설업	55.8	35.3	3.5	5.4	657
	관광편의시설업	44.3	28.4	13	14.3	486

주: 볼드체(강조)는 연구자가 표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조사」

<표 III-15> 관광숙박업체 업종별 매출액 분포(2018년)

(단위: 개, 백만원)

업종별	사업체 수					연평균 매출액
	전체	5억원 미만	5억~15억원 미만	15억~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소계
전체	2,110	882	506	294	427	3,632
관광호텔업	1,043	192	361	219	270	4,761
기타호텔업	840	667	116	43	14	559
휴양콘도미니엄업	227	23	29	32	143	9,8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조사」

-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연매출 40억원 이상의 사업체가 전체의 40% 수준이었고 반면에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경우는 전체 사업체의 약 18%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가장 영세한 업체는 기타호텔업으로 전체 사업체의 약 79%가 연매출 5억원 미만인 반면 연매출 40억원 이상의 사업체는 전체의 2%도 되지 않음
- 반면에 휴양콘도미니엄은 전국에서 체인형태이며 대규모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연매출 40억원 이상의 사업체가 전체의 63%를 차지

- (관광숙박업체별 종사자 규모 분포) 마지막으로 관광숙박업체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명 이상 근무하는 관광숙박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284억원인 반면 1~10명 미만이 근무하는 관광숙박업체는 약 3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았음
 - 전체의 6%에 해당하는 소수의 관광숙박업체가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던 반면 전체 업체의 85% 미만이 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었음
 - 연매출액 40억원 미만의 업체들은 최소한 95% 이상이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었음
 - 반면에 연매출액 40억원 이상의 업체들은 약 65% 이상의 기업들이 50명 이상의 종사자를 두고 있었음

-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체 내부에서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매출과 고용의 기여가 상이하다는 것임

- 이러한 사실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숙박비 소득공제의 주 수혜 업체를 어느 그룹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설계와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임
 - 예컨대 이번 숙박비 소득공제 정책을 통해 업종별 매출액별 종사자규모별로 어느 그룹이 가장 혜택을 보는 숙박업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음

<표 III -16> 관광숙박업체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분포(2018년)

(단위: 개, 백만원)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연평균 매출액
	전체	5억원 미만	5억~15억원 미만	15억~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소계
1~10명 미만	1,058	811	217	26	4	362
10~30명 미만	555	64	266	170	55	1,933
30~50명 미만	186	4	15	78	89	4,549
50~100명 미만	178	3	8	20	147	8,901
100명 이상	133	0	0	0	133	28,488
합계	2,110	882	506	294	4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조사」

- 이러한 예측을 판단으로 정책대상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본 제안서에는 이에 대한 이론적 예측이나 실증적 근거가 전무함
- 숙박비 소득공제는 국내숙박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
 - 일반적으로 산업정책의 효과는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거나 중간 수준의 기업에 효과가 있음
 - 일반적으로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대기업들이라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제약에 직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그러나 한편 관광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큰 규모의 숙박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타당할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숙박비 소득공제의 산업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분명해야 하는데 본 제도는 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이 명확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가. 근로소득세상의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

- 정부가 제시한 관광숙박업 혹은 관광산업 전체의 활성화라는 산업/거시 정책목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책목표를 근로소득세상의 소득공제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임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진정한 부담능력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김희수·이성태, 2016)
- 근로소득자의 여행을 위한 숙박비 지출을 노동 공급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필요적 경비지출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
 - 예컨대 의료비나 보험료와는 성질이 다름

- 근로소득세의 공제 항목으로 설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득세 설계의 일반 원칙을 존중할 수밖에 없음
 - 예컨대 공제로 인해 고소득층에 더 유리해지는 소득역진적 결과가 발생할 경우 누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 설계의 일반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제안된 숙박비 소득공제제도는 급여가 올라갈수록 공제한도를 축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과표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인데 비해 이보다 높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250만원과 200만원으로 제한됨

〈표 III-17〉 숙박비 소득공제 체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300만원, 총급여20%)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숙박비 소득공제 예타요구서

- 이러한 소득공제 체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도 나타남
 -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카드 사용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제한도가 커지도록 설계됨
-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그 정책 목적이 카드산업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소득보전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함
- 하지만 숙박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는 순전히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되는 정책임이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성격이 다름
- 관광(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란 수단을 통해 실행하려 하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노정

<표 III-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설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소득자 ○ 최소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15% -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사용분: 30%(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원 이하: Min(연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1억 2천만원 이하: 연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연 200만원

자료: 국세청(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59.htm)(검색일자: 2020. 7. 10.)

-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고소득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 축소) 소득이 높을수록 숙박비 및 여행비 지출금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낮게 설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가구소득별 연평균 숙박비 지출액을 보면 연평균 숙박비 지출액은 가구 소득 6천만원대에서 정점에 이르러 8천만원이 초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연평균 여행비 지출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표 III-19> 가구소득 구간별 1인당 연평균 여행·숙박비 지출액

(단위: 개, 원, %)

소득구간	샘플 수	연평균 여행비 지출액	숙박비 비중	연평균 숙박비 지출액
1천만원 이하	1,408	601,219	8.9	53,361
1.5천만원 이하	1,251	577,466	7.0	40,509
2천만원 이하	1,554	828,466	9.4	78,186
3천만원 이하	6,537	1,058,731	11.5	121,374
4천만원 이하	3,398	1,243,063	12.2	152,046
4.5천만원 이하	1,261	1,366,745	12.4	169,741
5천만원 이하	1,273	1,204,133	12.6	151,502
6천만원 이하	1,099	1,319,256	14.2	186,860
8천만원 이하	267	1,308,267	11.6	151,359
8천만원 초과	132	1,380,871	10.5	145,230

자료: 『2018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여행경비에서 숙박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지만 음식비나 다른 부가서비스 지출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전체 여행경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숙박비 소득공제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개인(혹은 가구)이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설계해야 함

- 본 보고서에 제시된 소득구간별 국내 여행경비 탄력성은 다음과 같음
 - 가구 소득 10% 증가 시 국내 여행경비지출은 1.26% 증가
 - 가구 소득별 국내 여행경비지출의 탄력성(가구 소득 10% 증가 시)
 - 하위 25%: 0.467%(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
 - 하위 25~50%: 1.2%***
 - 상위 25~50%: 1.48%***
 - 상위 25%: 1.2%**
 - 소득 10% 증가 시 국내 숙박비 지출은 0.82%*** 증가
 -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 0.082
 - 소득구간별 국내 숙박비 지출의 탄력성(소득 10% 증가 시)
 - 3천만원 이하: -0.00%(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3천만~5천만원: 2.94%**
 - 5천만원 이상: 5.01%*

- 문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의 설계가 소득공제의 형태로 실행할 경우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
 - 이처럼 고소득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국내 숙박비 지출의 증가 정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어 숙박비 소득공제의 정책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음

나. 근로소득세상의 소득공제로 인한 개인사업자 배제의 적정성 여부

- 숙박비 소득공제의 경우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전혀 가격하락의 혜택이 없음
 -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숙박비 지출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또한 숙박비 소득공제의 경우 필요비용 공제라기보다는 특정 유형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납세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킴
- 모든 개인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소비까지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단체관광과 OTA 제외 결정의 문제점

- 현행 제안에 따르면 단체 여행비나 숙박비 서비스의 온라인 구매(Online Travel Agency: OTA) 지출분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현행 제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상 숙박업체(호텔, 관광펜션, 농어촌 민박 등)와 직접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부가세 면세 조세특례 제도의 요건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이러한 제도 설계가 현재의 소비자들의 관광 숙박서비스 및 여행서비스 구매 패턴과 맞지 않아 숙박서비스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달리 실효성 없는 명목상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
- (장년층) 단체여행비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의 문제

- 장년층의 경우 여행사 상품을 구매(숙박여행의 경우 전체의 5%)하는 경향이 존재함
 - 과거 김희수·이성태(2016)에서도 국내여행 단체여행비를 공제대상으로 제안
 - 개인이 숙박업체와 직접 거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여행사를 통해 일괄거래하는 경우와 차별하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오히려 단체여행의 경우 개인여행에 비해 그 대규모적 특성으로 인해 음식점이나 교통업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정책목적에 맞지 않음
- (20~40대) OTA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의 문제
- 젊은층(20~40대)의 경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여행에 사용할 숙박뿐 아니라 차량 및 관광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여행패턴으로 자리잡음
- 국내 관광숙박업체의 OTA 의존도는 점차 증가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시장의 총거래액 113조원 중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상품군의 거래액은 약 16조 1,599억원
 - 이러한 숙박지출은 전체 온라인 쇼핑시장의 총거래액의 약 14%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국내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OTA 예약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숙박 예약 중 OTA를 통한 예약 비중은 62.5%로 나타남
 - 외국계 OTA를 통한 예약 비중이 27.0%, 국내 OTA를 통한 예약 비중이 35.5%로 나타남
- 관광숙박업 총매출액 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관광호텔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전자상거래 매출액 비중은 2013년 28.6%에서 2018년 50.6%로 증가하였음
 - 나머지 숙박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휴양콘도미업의 경우 2013년 30.2%에서 2018년 48.4%, 기타호텔업의 경우 37.1%에서 66.5%로 증가하였음

- 관광숙박업 총매출액 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전체를 OTA를 통한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구매 패턴을 살펴볼 때 상당 금액이 OTA를 통한 매출액인 것으로 추정

<표 III-20> 관광숙박업 총매출액 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비중

(단위: %)

년도	세분류	비중
2013	관광호텔업	28.6
	휴양콘도미니엄업	30.2
	기타호텔업	37.1
2014	휴양콘도미니엄업	29.3
	관광호텔업	30.3
	기타호텔업	50.1
2015	관광호텔업	34.6
	기타호텔업	55.2
	휴양콘도미니엄업	29.6
2016	휴양콘도미니엄업	42.0
	관광호텔업	38.0
	기타호텔업	52.9
2017	휴양콘도미니엄업	50.7
	기타호텔업	62.7
	관광호텔업	44.6
2018	관광호텔업	50.6
	휴양콘도미니엄업	48.4
	기타호텔업	66.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조사」, 각 연도

- 이처럼 OTA나 단체여행을 통한 숙박시설의 이용을 제외하는 것은 변화될 관광 분야 사업환경하에서 제안된 숙박비 소득공제안의 정책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것이 매우 자명함
- 현재 제안된 숙박비 소득공제정책의 작동 통로는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 → 국내 숙박비 인하 → 국내숙박 수요의 증가 → 국내숙박업의 발전 → 고용 및 국민경제 전체의 긍정적 효과’란 단계별 파급 경로를 전제하고 있음

-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OTA 혹은 단체여행을 통해 객실을 구매하는 것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임
 - OTA를 통한 가격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숙박비 소득공제에 대한 1인당 조세특례 금액이 미미(약 0.1만~2만원)하여 상대적으로 객실요금의 하락 효과 역시 매우 작을 듯함

- 동시에 OTA 혹은 단체여행을 통한 구매의 경우 할인금액 수준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뒤어나 가격에 반영될 소득공제를 고려하기보다는 OTA 혹은 단체여행을 통한 구매의 가격경쟁력과 비교하지 못하게 될 것임
 - 더군다나 소득공제를 통해 가격 혜택은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일반인이 구매 당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OTA가 아니라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현실의 소비자는 모든 정보에 민감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눈에 띄는(salient) 정보에만 반응하기 때문임(박상곤, 2015)
 - 결론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매우 미흡할 것으로 판단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와 비교해서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서점의 구매분도 인정해주는데 국내 숙박비의 경우 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

- <소결> 근로소득세상의 소득공제를 통해 관광숙박업을 지원하려는 제안은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조세특례제도의 설계나 그 내용 측면에서 완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차라리 숙박 휴양시설 부가가치세 면제나 여행쿠폰 제공, 더 나아가 직접적 재정정책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경제성 분석



IV. 경제성 분석

- 제안된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함
 - 숙박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숙박비 소득공제로 인한 실질적인 숙박비의 상대가격 하락이 숙박업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국민여행실태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여행경비 지출, 숙박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함
 -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추정
 - 각 소득 구간별 탄력성을 추정하여 숙박비 소득공제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활용

1. 숙박비의 가격탄력성

- 각 소득 구간별 숙박비 지출로 인한 소득공제금액을 이용하여 숙박비의 가격 할인율을 계산
- 숙박비 지출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구하여, 숙박비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매출액 증가분을 추정
- 데이터 및 추정방법(2010~2017년 데이터를 이용)
 - 매년 숙박업의 매출액은 국민계정통계(산업연관표) 명목 금액을 이용
 - 숙박업 수요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으므로 매년 GDP 명목금액을 국가경제 전체 소득 통계로 이용
 - 숙박업 매출액을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한 실질화를 위해 숙박업 CPI 데이터를 이용
 - 숙박업에 대한 수요, 공급곡선은 연립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 구조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해 추정의 편의(bias)를 발생시킴

- 수요곡선 추정을 통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불편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요곡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곡선을 이동(shift)시키는 변수들을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로 활용해야 함
 - 숙박업 공급곡선(비용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숙박업의 부가가치율, 전체 매출액 대비 중간재 투입비율, 인건비, 전체 숙박업체 수, 총근로자 수, 임대료와 같은 고정자본소모 금액을 활용

□ 추정식

$$\begin{aligned} \ln(\text{불변가격 숙박업매출}) &= \alpha + \beta_1 \cdot (\text{시간추세}) \\ &+ \beta_2 \cdot \ln(\text{불변가격 숙박업 제외 총부가가치}) \\ &+ \beta_3 \cdot \ln(\text{숙박업 CPI}) + \epsilon \end{aligned} \quad (1)$$

- 숙박업 물가수준(숙박업 CPI)과 종속변수인 불변가격 숙박업매출은 연립방정식 구조로 인한 내생성 문제가 발생
- 종속변수는 숙박업 매출액을 숙박업 CPI로 나누어 불변가격 기준으로 환산
- 전체 총부가가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종속변수인 숙박업 매출액의 일부인 숙박업 부가가치를 설명변수가 포함하게 되어 추정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위 문제를 처리하고자 숙박업을 제외한 총부가가치 금액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 불변가격 숙박업 제외 총부가가치 금액을 도출
- 수요-공급의 연립방정식 구조로 인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이용,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 method: 2SLS)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
- 1단계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ln(\text{숙박업 CPI}) &= \gamma + \delta_1 \cdot (\text{숙박업 중간투입률} = 1 - \text{부가가치율}) \\ &+ \delta_2 \cdot \ln(\text{숙박업 인건비}) + \delta_3 \cdot \ln(\text{숙박업 총사업체 수}) \\ &+ \delta_4 \cdot \ln(\text{숙박업 총근로자 수}) + \delta_5 \cdot \ln(\text{숙박업 고정자본소모}) \\ &+ \epsilon \end{aligned} \quad (2)$$

□ 1단계(1st stage) 회귀모형 추정 결과

<표 IV-1> 숙박비 가격탄력성 1단계 회귀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log(숙박업 CPI)			
변수	계수	표준편차	t 값
중간투입율	-2.580	2.061	-1.25
log(피용자보수)	-4.795	.4983	-0.96
log(총사업체 수)	4.271	4.158	1.03
log(근로자 수)	-1.158	1.890	-0.61
log(고정자본소모)	.5622	.4015	1.40
상수항	-27.73	19.84	-1.40
R-squared	0.9878		

□ 2단계(2nd stage) 회귀모형 추정 결과

<표 IV-2> 숙박비 가격탄력성 2단계 회귀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log(불변가격 숙박업매출)				
변수	계수	표준편차	t 값	P-value
시간 추세	-.0264	.0470	-0.56	0.574
log(숙박업 CPI)	-.3248	1.209	-0.27	0.788
log(숙박업 제외 총부가가치)	2.359	.3541	6.66	0.000
상수항	27.17	83.78	0.32	0.746
R-squared	0.9822			

□ 모형 추정 결과

- 숙박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의미하는 관심변수인 β_3 는 -0.325 로 추정
 - 이는 숙박가격이 10% 하락할 때, 숙박수요는 3.25% 증가함을 의미
 - 조세특례금액 << 숙박업매출액 증가
 - 하지만 p-value가 0.788로 추정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아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매출액 증가분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숙박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
- 숙박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어서, 다수의 관측치를 확보하지 못함
- 추가적으로 보다 양질의 데이터로 추정이 가능한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보조지표로 활용
- 기 도입된 유사한 조세특례제도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증 분석을 보충

□ 수요의 가격탄력성 분해(Slutsky equation)

- 한 재화의 가격변화가 그 재화의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
- $$\left. \frac{\Delta X}{\Delta P_X} \right|_M = \left. \frac{\Delta X}{\Delta P_X} \right|_U - X \cdot \frac{\Delta X}{\Delta M}$$
- 대체효과는 상품을 폭넓게 정의할수록 작아짐
 - 예) 가격 인상 시 A 호텔의 대체효과 > 호텔의 대체효과 > 숙박업의 대체효과
 - $\left. \frac{\Delta X}{\Delta P_X} \right|_U \approx 0$, 대체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을 것으로 추정
 - 숙박업의 소득탄력성 \approx 숙박업 가격탄력성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숙박비 소득공제의 시간할인(time discount)
 - 일반적인 가격할인과 달리,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숙박비를 지출하게 되는 시점과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시간할인(time discount) 개념을 추가로 적용해야 함
 -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1년의 시간할인율로 4% 사용
 - 예를 들어 1년 뒤 1만원은 지금 현재 9,600원의 가치를 갖게 됨
 - 숙박비 지출시점과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지급 시점이 평균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
 - 숙박비 소득공제 도입으로 숙박비가 평균 5% 할인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가격할인 효과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이보다 작아짐
 - * $(5 - 4/2 = 3\%$ 즉각적인 가격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 가능)

○ 숙박비 소득공제 금액의 불확실성

- 즉각적인 가격할인과 달리 숙박비 지출시점에 얼마만큼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숙박비 소득공제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제약함
- 위험기피적(risk averse) 성향으로 인해 불확실한 5% 가격할인의 확실성 동등(certainty equivalent) 할인 수준은 5%보다 작아짐

<표 IV-3> 소득구간별 숙박비 지출 증가 예상 금액(가격탄력성(0.325) 이용)

(단위: 원)

소득구간	과세소득 금액	연평균 숙박비 지출	숙박비 소득공제 결정세액 감소	숙박비 지출 증가금액(전체)
1천만원 이하	4,727,789	53,361	-	-
1.5천만원 이하	12,569,415	40,509	106	-
2천만원 이하	17,823,409	78,186	911	-
3천만원 이하	24,624,860	121,374	2,306	-
4천만원 이하	34,699,508	152,046	4,834	211,109,819
4.5천만원 이하	42,428,996	169,741	6,327	350,676,223
5천만원 이하	47,446,908	151,502	6,070	365,201,285
6천만원 이하	54,773,381	186,860	7,987	877,571,913
7천만원 이하	64,844,551	152,022	6,964	660,173,892
8천만원 이하	74,749,649	157,735	9,339	993,598,053
8천만원 초과	120,900,484	145,230	11,803	3,886,269,257
(총합계)				7,345백만원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추정된 가격탄력성(-0.325)과 연간 4%의 시간할 인율을 이용한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총 73.5억원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숙박비 지 출증가금액은 총 24.6억원
- 전체 총합계 금액은 <표 V-1>의 모집단(국세통계연보) 정보를 이용
- 전체 모집단을 활용한 근로소득자의 숙박비 지출 총액은 2.13조원

2. 숙박비의 소득탄력성

- 숙박비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재정패널데이터, 국민여행조사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 재정패널데이터는 6차년도부터 국내 여행경비지출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함
 - 전체 여행경비지출에 대한 조사는 1차년도부터 진행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6차~11차년도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여행경비지출, 국내 여행경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함
 - 11차년도는 2017년에 대한 조사 결과로 12차년도(2018년도) 조사 결과는 2020년 연말중에 이용 가능

가.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 0.172

-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추정함

$$\ln(\text{여행경비지출}) = \gamma + \beta_1 \cdot \log(\text{연간소득}) + \beta_2 \cdot (\text{총가구원 수}) + \beta_3 \cdot (\text{만 18세 미만 가구원 수}) + \beta \cdot \text{조사연도} \times \text{지역} + (\text{가구별 고정효과}) + \epsilon \text{ ----- (3)}$$

<표 IV-4> 여행경비지출 소득탄력성(재정패널)

변수	log(총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log(연간소득)	0.172*** (0.0353)	0.0935 (0.0858)	0.130* (0.0668)	0.226*** (0.0784)	0.166*** (0.0509)
총가구원 수	0.0568* (0.0302)	0.138 (0.159)	0.102 (0.0876)	0.0696 (0.0562)	0.0413 (0.0394)
만 18세 미만 가구원 수	-0.130*** (0.0460)	-0.242 (0.232)	0.0374 (0.178)	-0.0623 (0.0708)	-0.167*** (0.0585)
연도 7	0.0120 (0.0692)	0.101 (0.230)	0.127 (0.197)	-0.00128 (0.120)	0.00202 (0.0887)

<표 IV-4>의 계속

변수	log(총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_8	0.100 (0.0673)	-0.543 (0.554)	0.316 (0.241)	0.0779 (0.144)	0.119 (0.0783)
연도_9	0.318*** (0.0673)	0.0466 (0.263)	0.707*** (0.191)	0.344** (0.135)	0.282*** (0.0855)
연도_10	0.261*** (0.0738)	-0.0158 (0.346)	0.513* (0.299)	0.228 (0.149)	0.257*** (0.0888)
연도_11	0.453*** (0.0753)	0.206 (0.299)	0.774*** (0.261)	0.580*** (0.152)	0.396*** (0.0920)
지역코드_21	-0.217 (0.286)		0.142 (0.602)	0.177 (0.449)	-1.104*** (0.268)
지역코드_22	0.0740 (0.371)	-1.182* (0.680)	-0.264 (0.706)	0.918 (0.693)	-0.270 (0.448)
지역코드_23	-0.312 (0.237)	0.459 (1.034)	-0.546 (0.544)	0.667 (0.438)	-0.676** (0.283)
지역코드_24	-0.0458 (0.316)	-0.445** (0.200)	-0.193 (0.803)	0.0478 (0.685)	-0.110 (0.524)
지역코드_25	0.0445 (0.398)		0.266 (0.645)	0.438 (0.390)	0.323 (0.428)
지역코드_26	-0.197 (0.351)		-0.106 (0.555)	0.933* (0.507)	-0.592 (0.402)
지역코드_31	0.00339 (0.133)	-0.614 (0.395)	0.163 (0.484)	-0.135 (0.236)	0.115 (0.181)
지역코드_32	-0.489 (0.441)		-1.618*** (0.299)	0.564* (0.294)	-0.750 (0.540)
지역코드_33	0.141 (0.259)		0.913* (0.517)	0.257 (0.493)	0.260 (0.381)
지역코드_34	-1.003** (0.505)	-0.403 (0.361)	0.307 (0.800)	-0.671 (0.483)	-0.0729 (0.292)
지역코드_35	-0.471 (0.410)	-3.580*** (0.536)	0.893 (0.601)	-0.418 (0.900)	-1.142** (0.504)
지역코드_36	0.448 (0.310)	0.124 (0.430)	-0.0579 (0.945)	0.908** (0.385)	0.338 (0.459)
지역코드_37	-0.119 (0.279)	-1.575** (0.621)	-0.148 (0.790)	-0.372 (0.324)	-0.492 (0.377)
지역코드_38	-0.315 (0.251)		-0.522 (0.558)	0.648 (0.484)	-0.340 (0.284)
지역코드_39	1.271 (0.792)			1.609*** (0.211)	-1.025 (0.719)
지역코드_40	-0.782 (0.903)		0.393 (0.590)	-0.151 (0.527)	-1.235 (1.190)
연도*지역코드_7_21	0.308** (0.136)	-0.748 (0.488)	0.0272 (0.330)	0.248 (0.326)	0.407** (0.165)

<표 IV-4>의 계속

변수	log(총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7_22	0.182 (0.206)	0.797 (0.520)	0.0584 (0.250)	0.105 (0.245)	0.232 (0.369)
연도*지역코드_7_23	0.184 (0.169)	-0.399 (1.023)	-0.0644 (0.387)	-0.0714 (0.375)	0.261 (0.200)
연도*지역코드_7_24	-0.0450 (0.166)	-0.146 (0.420)	0.533 (0.430)	-0.171 (0.252)	-0.0356 (0.279)
연도*지역코드_7_25	0.341** (0.164)	0.261 (0.350)	0.239 (0.422)	0.426* (0.225)	0.293 (0.255)
연도*지역코드_7_26	0.0626 (0.256)	-0.137 (0.240)	-0.107 (0.486)	0.239 (0.461)	0.0549 (0.314)
연도*지역코드_7_31	0.0539 (0.0980)	0.214 (0.475)	0.265 (0.240)	0.0952 (0.164)	-0.00252 (0.131)
연도*지역코드_7_32	-0.115 (0.178)	1.054** (0.506)	-0.295 (0.421)	-0.487 (0.387)	0.0271 (0.218)
연도*지역코드_7_33	-0.116 (0.165)	-0.256 (0.645)	-0.126 (0.408)	-0.121 (0.345)	-0.0947 (0.200)
연도*지역코드_7_34	0.327 (0.221)		0.149 (0.295)	-0.0816 (0.310)	0.474 (0.310)
연도*지역코드_7_35	0.180 (0.181)	0.509 (0.802)	0.355 (0.332)	-0.334 (0.248)	0.295 (0.249)
연도*지역코드_7_36	-0.174 (0.160)	0.317 (0.347)	-0.353 (0.332)	-0.303 (0.250)	-0.158 (0.242)
연도*지역코드_7_37	0.0731 (0.224)	-0.457 (0.407)	-0.262 (0.613)	0.0652 (0.269)	0.318 (0.374)
연도*지역코드_7_38	0.210 (0.159)	-0.721 (0.599)	0.0244 (0.325)	0.0151 (0.267)	0.324 (0.218)
연도*지역코드_7_39	-0.0897 (0.478)	0.739* (0.393)		-1.211*** (0.120)	
연도*지역코드_7_40	-0.170 (0.162)			-0.248 (0.534)	-0.233 (0.212)
연도*지역코드_8_21	0.314** (0.147)	1.005 (0.686)	0.472 (0.381)	0.433 (0.380)	0.188 (0.163)
연도*지역코드_8_22	-0.0528 (0.199)	0.535 (0.592)	-0.166 (0.339)	-0.0933 (0.276)	-0.0447 (0.343)
연도*지역코드_8_23	0.187 (0.157)	1.620*** (0.605)	-0.367 (0.435)	-0.0648 (0.289)	0.243 (0.201)
연도*지역코드_8_24	0.201 (0.188)	1.147* (0.627)	0.269 (0.433)	0.0448 (0.253)	0.144 (0.326)
연도*지역코드_8_25	-0.0976 (0.190)	0.139 (0.727)	-0.202 (0.489)	-0.0569 (0.227)	-0.118 (0.325)
연도*지역코드_8_26	0.190 (0.329)	1.209** (0.550)	-0.174 (0.319)	-0.00348 (0.405)	0.258 (0.467)

<표 IV-4>의 계속

변수	log(총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8_31	0.0258 (0.109)	0.916 (0.641)	0.106 (0.380)	-0.123 (0.183)	0.0217 (0.139)
연도*지역코드_8_32	0.0989 (0.195)	1.634** (0.663)	-0.0215 (0.365)	-0.106 (0.283)	0.103 (0.294)
연도*지역코드_8_33	-0.223 (0.166)	1.285 (0.934)	-0.285 (0.425)	-0.408 (0.292)	-0.210 (0.211)
연도*지역코드_8_34	0.201 (0.226)	-0.478 (0.545)	0.0204 (0.341)	-0.326 (0.246)	0.302 (0.308)
연도*지역코드_8_35	0.103 (0.194)	-0.0736 (0.913)	0.0329 (0.433)	-0.110 (0.397)	0.278 (0.243)
연도*지역코드_8_36	-0.176 (0.198)	0.153 (1.101)	-0.301 (0.383)	-0.291 (0.289)	-0.139 (0.253)
연도*지역코드_8_37	-0.147 (0.210)	-0.0844 (0.650)	-0.717 (0.513)	-0.435 (0.389)	0.346 (0.233)
연도*지역코드_8_38	-0.0257 (0.175)	-0.138 (0.838)	-0.287 (0.424)	-0.189 (0.301)	0.0379 (0.232)
연도*지역코드_8_39	-1.237*** (0.301)	-0.126 (0.509)		-0.672*** (0.244)	
연도*지역코드_8_40	0.653 (0.690)		0.616 (0.463)	0.521 (0.460)	0.750 (0.792)
연도*지역코드_9_21	0.161 (0.182)	-0.657 (0.476)	0.594 (0.452)	-0.141 (0.459)	0.163 (0.203)
연도*지역코드_9_22	-0.0756 (0.242)	0.289 (0.311)	0.0760 (0.322)	-0.0346 (0.277)	-0.228 (0.438)
연도*지역코드_9_23	-0.0122 (0.188)	1.086** (0.443)	-0.337 (0.336)	-0.275 (0.332)	0.0493 (0.256)
연도*지역코드_9_24	-0.0714 (0.234)	1.561* (0.926)	-0.877* (0.487)	0.273 (0.286)	-0.470 (0.388)
연도*지역코드_9_25	-0.0261 (0.262)	-0.201 (0.373)	-0.286 (0.366)	0.328 (0.232)	-0.198 (0.441)
연도*지역코드_9_26	0.379 (0.287)	-1.282*** (0.273)	-0.658 (0.594)	0.301 (0.340)	0.519 (0.380)
연도*지역코드_9_31	-0.0607 (0.104)	0.165 (0.336)	-0.278 (0.367)	-0.0740 (0.177)	-0.0588 (0.133)
연도*지역코드_9_32	0.00704 (0.165)	0.101 (0.535)	-0.289 (0.433)	-0.592* (0.340)	0.270 (0.208)
연도*지역코드_9_33	0.0253 (0.192)	0.308 (0.896)	0.298 (0.491)	-0.481 (0.294)	0.130 (0.235)
연도*지역코드_9_34	0.197 (0.243)		-0.197 (0.407)	-0.653** (0.296)	0.451 (0.314)
연도*지역코드_9_35	0.0325 (0.213)	0.874 (0.637)	-0.655 (0.524)	-0.513 (0.354)	0.292 (0.292)

<표 IV-4>의 계속

변수	log(총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9_36	-0.115 (0.244)	-0.782 (0.699)	-0.506 (0.384)	-0.260 (0.309)	0.123 (0.348)
연도*지역코드_9_37	-0.160 (0.227)	-0.396 (0.447)	-0.654 (0.598)	-0.239 (0.346)	0.0827 (0.344)
연도*지역코드_9_38	-0.000612 (0.201)	-0.464 (0.644)	0.0871 (0.564)	-0.439 (0.425)	-0.00405 (0.228)
연도*지역코드_9_39	-0.895** (0.434)	-0.00725 (0.275)		-0.805*** (0.163)	
연도*지역코드_9_40	0.189 (0.605)		1.089** (0.487)	0.245 (0.545)	-0.124 (0.632)
연도*지역코드_10_21	0.236 (0.191)	-0.271 (0.535)	0.802 (0.521)	0.320 (0.474)	0.0640 (0.210)
연도*지역코드_10_22	0.121 (0.237)	0.644 (0.622)	0.0266 (0.495)	-0.0170 (0.288)	0.200 (0.420)
연도*지역코드_10_23	0.339* (0.189)	0.341 (0.460)	-0.293 (0.426)	0.183 (0.342)	0.441* (0.255)
연도*지역코드_10_24	0.136 (0.203)	1.332 (0.820)	-0.285 (0.436)	-0.292 (0.292)	0.266 (0.318)
연도*지역코드_10_25	-0.0349 (0.183)	0.209 (0.401)	0.0538 (0.435)	0.0129 (0.256)	-0.0858 (0.306)
연도*지역코드_10_26	0.459 (0.373)		-0.668 (0.677)	0.0713 (0.469)	0.685 (0.472)
연도*지역코드_10_31	0.143 (0.111)	0.494 (0.383)	-0.169 (0.424)	0.298 (0.198)	0.102 (0.142)
연도*지역코드_10_32	0.0184 (0.172)	0.596 (0.670)	-0.715 (0.441)	0.00167 (0.359)	0.126 (0.223)
연도*지역코드_10_33	0.110 (0.206)	-0.270 (0.610)	0.0213 (0.499)	-0.196 (0.442)	0.211 (0.257)
연도*지역코드_10_34	0.153 (0.204)	-0.501 (0.374)	-0.129 (0.414)	-0.422 (0.257)	0.319 (0.262)
연도*지역코드_10_35	0.283 (0.266)	0.141 (0.668)	-0.383 (0.477)	0.339 (0.429)	0.453 (0.406)
연도*지역코드_10_36	0.252 (0.225)	-0.204 (0.558)	-0.272 (0.387)	0.325 (0.254)	0.408 (0.337)
연도*지역코드_10_37	0.410** (0.194)	-0.120 (0.502)	-0.221 (0.565)	0.295 (0.291)	0.861*** (0.260)
연도*지역코드_10_38	0.0860 (0.193)	-0.624 (0.776)	0.0418 (0.442)	0.180 (0.315)	0.00225 (0.268)
연도*지역코드_10_39	-1.966* (1.005)	0.229 (0.206)		-2.766*** (0.295)	0.407 (1.421)
연도*지역코드_10_40	0.428 (0.869)		1.183 (0.790)	0.897* (0.488)	0.287 (1.142)

<표 IV-4>의 계속

변수	log(총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11_21	0.252 (0.179)	0.880 (0.632)	0.239 (0.525)	-0.119 (0.480)	0.345* (0.187)
연도*지역코드_11_22	0.140 (0.214)	0.564 (0.468)	0.139 (0.392)	-0.108 (0.282)	0.192 (0.375)
연도*지역코드_11_23	0.373** (0.146)	1.293* (0.755)	-0.0339 (0.434)	-0.127 (0.298)	0.535*** (0.173)
연도*지역코드_11_24	0.00490 (0.219)	0.900 (0.936)	-1.177*** (0.445)	0.0498 (0.339)	-0.0478 (0.380)
연도*지역코드_11_25	-0.263 (0.178)	-0.135 (0.647)	-0.417 (0.353)	-0.221 (0.273)	-0.331 (0.268)
연도*지역코드_11_26	0.377 (0.367)	-1.482*** (0.310)	-1.687*** (0.571)	0.0666 (0.411)	0.636 (0.474)
연도*지역코드_11_31	-0.00667 (0.116)	0.459 (0.491)	-0.393 (0.361)	-0.0815 (0.195)	0.0309 (0.155)
연도*지역코드_11_32	-0.0230 (0.165)	0.419 (0.611)	-0.472 (0.344)	-0.500* (0.272)	0.255 (0.223)
연도*지역코드_11_33	-0.182 (0.215)	-0.347 (0.803)	-1.078** (0.429)	-0.138 (0.364)	-0.0753 (0.274)
연도*지역코드_11_34	0.193 (0.267)		-0.531 (0.366)	-0.698* (0.381)	0.598* (0.347)
연도*지역코드_11_35	-0.0573 (0.229)	-1.435** (0.596)	-0.839** (0.415)	-0.472 (0.344)	0.365 (0.300)
연도*지역코드_11_36	0.363 (0.259)	-0.361 (0.511)	-0.298 (0.446)	0.180 (0.266)	0.690* (0.396)
연도*지역코드_11_37	0.263 (0.244)	-0.771 (0.560)	-0.277 (0.481)	-0.156 (0.304)	0.883** (0.429)
연도*지역코드_11_38	-0.0343 (0.190)	-0.969 (0.990)	-0.655 (0.404)	-0.353 (0.282)	0.165 (0.266)
연도*지역코드_11_39	-1.855*** (0.582)			-1.477*** (0.267)	
연도*지역코드_11_40	0.458 (0.832)			0.882** (0.349)	0.750 (1.135)
Constant	3.866*** (0.315)	4.434*** (0.672)	3.462*** (0.653)	2.813*** (0.635)	4.292*** (0.474)
Observations	14,205	1,340	3,075	4,335	5,455
R-squared	0.080	0.204	0.148	0.119	0.100
Number of id	4,049	558	1,022	1,199	1,270

주: 1. () 안의 값은 id 단위 군집화된 표준편차

2. *** p<0.01, ** p<0.05, * p<0.1

3. 연도 코드: 11=2017년, 10=2016년, 9=2015년, 8=2014년, 7=2013년 6=2012년(기준연도)

지역 코드: 11(서울, 기준지역),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40(세종)

- 총여행경비지출의 가구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구별 가구원 수, 18세 미만 가구원 수, 기타 다양한 가구별 특성, 고정효과를 고려
 - 분석 대상기간 중 가구별 평균 총여행경비지출을 표본 가중치로 적용
 - 가구 소득 10% 증가 시, 총여행경비지출은 1.7% 증가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가구 소득별 여행경비지출의 탄력성(가구 소득 10% 증가 시)
 - 하위 25%: 0.935%(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하위 25~50%: 1.3%*
 - 50~75%: 2.26%***
 - 상위 25%: 1.16%***

-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여행경비지출이 증가하지 않음
 -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도 커짐
 - 상위 25%는 상위 25~50%에 비해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낮아짐

-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국내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 0.126
 - 동일한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여행경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5> 국내여행경비지출 소득탄력성(재정패널)

변수	log(국내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log(연간소득)	0.126*** (0.0253)	0.0467 (0.0512)	0.120*** (0.0451)	0.148*** (0.0412)	0.120** (0.0503)
총가구원 수	0.0858*** (0.0231)	0.258* (0.155)	0.121* (0.0654)	0.131*** (0.0401)	0.0560* (0.0320)
만 18세 미만 가구원 수	-0.0533* (0.0285)	-0.353* (0.185)	-0.0949 (0.0956)	-0.0900** (0.0454)	-0.0409 (0.0400)
연도_7	0.0453 (0.0601)	0.0132 (0.234)	0.252* (0.134)	0.0468 (0.0993)	0.0165 (0.0845)

<표 IV-5>의 계속

변수	log(국내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_8	0.211*** (0.0592)	0.139 (0.247)	0.534*** (0.111)	0.0935 (0.0949)	0.221*** (0.0842)
연도_9	0.214*** (0.0660)	0.299 (0.280)	0.485*** (0.123)	0.360*** (0.0951)	0.120 (0.0964)
연도_10	0.119* (0.0661)	0.584** (0.264)	0.429*** (0.140)	0.211** (0.0955)	0.0120 (0.0952)
연도_11	0.132* (0.0740)	0.583* (0.328)	0.583*** (0.114)	0.180* (0.105)	0.0252 (0.107)
지역코드_21	-0.0679 (0.358)		0.868* (0.452)	0.465 (0.368)	-0.954** (0.403)
지역코드_22	-0.201 (0.263)	0.389 (0.580)	0.282 (0.488)	0.0669 (0.543)	0.0929 (0.322)
지역코드_23	-0.109 (0.188)	0.624 (0.666)	0.655 (0.444)	0.387 (0.338)	-0.837** (0.383)
지역코드_24	-0.00762 (0.212)	-0.264 (0.185)	0.763 (0.567)	0.485* (0.250)	-0.555 (0.440)
지역코드_25	-0.178 (0.300)		0.621* (0.376)	0.0414 (0.293)	-0.240 (0.424)
지역코드_26	0.517 (0.468)		0.211 (0.476)	1.367*** (0.461)	0.00603 (0.582)
지역코드_31	0.209** (0.0955)	0.746 (0.572)	0.418** (0.191)	0.147 (0.143)	0.227 (0.149)
지역코드_32	-0.290 (0.343)		-0.471 (0.337)	-0.310 (0.260)	-0.430 (0.533)
지역코드_33	-0.0565 (0.191)		0.322 (0.323)	0.168 (0.281)	0.550 (0.402)
지역코드_34	-0.0155 (0.277)	-0.527 (0.340)	0.970*** (0.326)	-0.107 (0.440)	0.332 (0.248)
지역코드_35	-0.104 (0.266)		1.093*** (0.348)	0.478* (0.272)	-0.891** (0.387)
지역코드_36	0.144 (0.200)	0.0483 (0.284)	0.466 (0.577)	0.397 (0.299)	0.0914 (0.223)
지역코드_37	-0.0868 (0.246)	-0.110 (0.560)	0.654 (0.516)	-0.433 (0.276)	0.0114 (0.377)
지역코드_38	0.695** (0.305)		0.467 (0.411)	2.102*** (0.530)	0.0920 (0.497)
지역코드_39	-2.212*** (0.279)			-0.0285 (0.286)	-1.189*** (0.146)

<표 IV-5>의 계속

변수	log(국내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지역코드_40	0.138 (0.393)		0.421 (0.287)	0.334** (0.140)	-0.226 (0.353)
연도*지역코드_7_21	0.322** (0.131)	-0.315 (0.386)	-0.313 (0.237)	0.254 (0.183)	0.483** (0.190)
연도*지역코드_7_22	0.0591 (0.111)	-0.0907 (0.313)	-0.412** (0.205)	0.192 (0.207)	0.114 (0.172)
연도*지역코드_7_23	0.129 (0.114)	-0.265 (0.484)	-0.304 (0.436)	0.0223 (0.224)	0.238* (0.136)
연도*지역코드_7_24	0.0452 (0.151)	-0.175 (0.389)	0.149 (0.329)	-0.145 (0.230)	0.254 (0.286)
연도*지역코드_7_25	0.0515 (0.110)	0.352 (0.364)	-0.0160 (0.290)	0.00323 (0.180)	0.0809 (0.147)
연도*지역코드_7_26	-0.166 (0.135)	-0.0314 (0.232)	-0.419 (0.381)	0.0514 (0.170)	-0.175 (0.179)
연도*지역코드_7_31	0.00412 (0.0792)	-0.115 (0.397)	-0.0620 (0.204)	0.110 (0.137)	-0.0479 (0.109)
연도*지역코드_7_32	0.0136 (0.122)	1.222*** (0.470)	-0.563** (0.264)	0.0269 (0.195)	-0.0188 (0.145)
연도*지역코드_7_33	-0.248* (0.148)	-1.441*** (0.231)	-0.684** (0.309)	-0.298 (0.239)	-0.146 (0.201)
연도*지역코드_7_34	0.127 (0.119)		-0.0552 (0.180)	0.0140 (0.168)	0.208 (0.203)
연도*지역코드_7_35	0.0948 (0.127)	-0.187 (0.485)	0.118 (0.195)	-0.307 (0.231)	0.275 (0.184)
연도*지역코드_7_36	-0.0747 (0.134)	0.307 (0.325)	-0.148 (0.270)	-0.296 (0.223)	-0.00116 (0.207)
연도*지역코드_7_37	-0.0144 (0.143)	0.0721 (0.338)	-0.688** (0.270)	0.109 (0.235)	0.237 (0.259)
연도*지역코드_7_38	0.143 (0.127)	-0.551 (0.545)	-0.0895 (0.347)	0.137 (0.224)	0.217 (0.159)
연도*지역코드_7_39	0.584*** (0.0634)			0.572*** (0.103)	
연도*지역코드_7_40	-1.010*** (0.356)			-0.403 (0.284)	-1.178*** (0.435)
연도*지역코드_8_21	0.389** (0.162)	-0.00537 (0.369)	-0.130 (0.252)	0.335 (0.274)	0.473** (0.216)
연도*지역코드_8_22	-0.0448 (0.128)	-0.265 (0.304)	-0.523** (0.220)	0.216 (0.230)	-0.0830 (0.202)

<표 IV-5>의 계속

변수	log(국내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8_23	-0.154 (0.126)	-0.0701 (0.523)	-0.910* (0.469)	-0.0478 (0.218)	-0.101 (0.162)
연도*지역코드_8_24	0.00578 (0.158)	0.777** (0.347)	-0.135 (0.335)	-0.0576 (0.245)	-0.000535 (0.274)
연도*지역코드_8_25	-0.106 (0.111)	-0.551 (0.473)	-0.480** (0.202)	-0.0725 (0.178)	0.0766 (0.182)
연도*지역코드_8_26	-0.394*** (0.126)		-0.635*** (0.235)	-0.551** (0.280)	-0.322** (0.155)
연도*지역코드_8_31	-0.188** (0.0815)	0.139 (0.420)	-0.486** (0.195)	-0.0556 (0.134)	-0.214* (0.114)
연도*지역코드_8_32	0.0704 (0.128)	0.403 (0.520)	-0.195 (0.251)	0.157 (0.215)	-0.0459 (0.188)
연도*지역코드_8_33	-0.193 (0.136)	-1.058*** (0.314)	-0.306 (0.265)	-0.374** (0.183)	-0.0686 (0.190)
연도*지역코드_8_34	-0.0760 (0.129)	-1.108*** (0.236)	-0.158 (0.144)	-0.0508 (0.168)	-0.118 (0.206)
연도*지역코드_8_35	0.102 (0.136)	-0.0723 (0.720)	-0.169 (0.332)	0.0167 (0.145)	0.209 (0.201)
연도*지역코드_8_36	-0.120 (0.175)	0.478 (0.799)	-0.515* (0.292)	-0.185 (0.250)	-0.122 (0.248)
연도*지역코드_8_37	-0.167 (0.138)	-0.486 (0.377)	-0.870*** (0.264)	-0.000732 (0.226)	0.199 (0.217)
연도*지역코드_8_38	-0.107 (0.137)	-0.844 (0.631)	-0.474 (0.342)	0.0515 (0.272)	-0.0410 (0.169)
연도*지역코드_8_39	0.594*** (0.0890)	-0.432 (0.347)		0.759*** (0.0955)	
연도*지역코드_8_40	-0.250 (0.261)		0.271 (0.186)	0.252 (0.194)	-0.338** (0.164)
연도*지역코드_9_21	0.324* (0.168)	-0.460 (0.377)	0.0316 (0.289)	0.0171 (0.256)	0.503** (0.244)
연도*지역코드_9_22	-0.191 (0.126)	-0.00428 (0.320)	-0.283 (0.226)	-0.244 (0.187)	-0.270 (0.214)
연도*지역코드_9_23	0.0410 (0.122)	-0.469 (0.643)	-0.573 (0.386)	-0.0419 (0.196)	0.153 (0.170)
연도*지역코드_9_24	0.106 (0.161)	0.0786 (0.334)	-0.588 (0.500)	-0.0148 (0.224)	0.339 (0.271)
연도*지역코드_9_25	-0.00741 (0.126)	-0.483 (0.311)	-0.274 (0.249)	-0.355** (0.163)	0.366 (0.237)

<표 IV-5>의 계속

변수	log(국내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9_26	0.00975 (0.168)	-1.519*** (0.278)	-1.457*** (0.408)	-0.302* (0.172)	0.256 (0.218)
연도*지역코드_9_31	-0.138 (0.0882)	-0.0906 (0.350)	-0.443** (0.223)	-0.233* (0.131)	-0.0627 (0.127)
연도*지역코드_9_32	-0.0485 (0.134)	0.0224 (0.404)	-0.219 (0.269)	-0.295 (0.182)	0.0302 (0.216)
연도*지역코드_9_33	0.0927 (0.178)	-1.875*** (0.342)	-0.131 (0.519)	-0.334 (0.230)	0.356 (0.236)
연도*지역코드_9_34	0.0125 (0.143)		-0.316 (0.220)	-0.174 (0.166)	0.111 (0.233)
연도*지역코드_9_35	0.0555 (0.123)	0.339 (0.415)	0.0425 (0.318)	-0.0800 (0.178)	0.0360 (0.191)
연도*지역코드_9_36	-0.0177 (0.174)	-0.397 (0.426)	-0.212 (0.248)	-0.368* (0.218)	0.233 (0.291)
연도*지역코드_9_37	-0.107 (0.128)	-0.360 (0.297)	-0.527** (0.236)	-0.291 (0.203)	0.214 (0.229)
연도*지역코드_9_38	-0.112 (0.144)	-0.772 (0.611)	-0.315 (0.365)	-0.504* (0.297)	0.100 (0.177)
연도*지역코드_9_39	1.329*** (0.193)	0.109 (0.235)		-0.514 (0.420)	
연도*지역코드_9_40	-0.767*** (0.230)		0.514*** (0.184)	-0.316 (0.272)	-0.899*** (0.144)
연도*지역코드_10_21	0.418*** (0.159)	-0.204 (0.343)	-0.326 (0.262)	0.0513 (0.249)	0.758*** (0.212)
연도*지역코드_10_22	0.256** (0.118)	-0.234 (0.383)	-0.168 (0.249)	0.262 (0.197)	0.331* (0.183)
연도*지역코드_10_23	0.0597 (0.141)	-1.011 (0.808)	-0.553 (0.447)	0.187 (0.225)	0.0954 (0.192)
연도*지역코드_10_24	0.185 (0.180)	-0.0999 (0.668)	-0.0205 (0.340)	-0.326 (0.239)	0.623* (0.351)
연도*지역코드_10_25	-0.116 (0.125)	-0.433 (0.327)	-0.258 (0.210)	-0.320* (0.188)	0.0691 (0.231)
연도*지역코드_10_26	-0.0743 (0.185)		-1.171*** (0.337)	-0.560** (0.230)	0.200 (0.236)
연도*지역코드_10_31	-0.0683 (0.0864)	-0.285 (0.336)	-0.428** (0.198)	-0.0994 (0.130)	0.00463 (0.125)
연도*지역코드_10_32	0.00775 (0.144)	-0.661 (0.897)	-0.328 (0.325)	0.0521 (0.191)	-0.0153 (0.212)

<표 IV-5>의 계속

변수	log(국내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10_33	0.183 (0.150)	-2.181*** (0.274)	-0.135 (0.297)	-0.330 (0.231)	0.520*** (0.194)
연도*지역코드_10_34	0.0706 (0.158)	-1.045*** (0.257)	-0.249 (0.218)	-0.0350 (0.168)	0.169 (0.270)
연도*지역코드_10_35	0.00310 (0.144)	-0.527 (0.434)	-0.383 (0.470)	-0.130 (0.222)	0.185 (0.184)
연도*지역코드_10_36	0.138 (0.157)	-0.607 (0.408)	-0.324 (0.242)	0.113 (0.292)	0.330 (0.229)
연도*지역코드_10_37	0.271** (0.131)	-0.314 (0.343)	-0.418* (0.226)	0.233 (0.205)	0.601** (0.239)
연도*지역코드_10_38	0.0505 (0.151)	-1.233* (0.695)	-0.0794 (0.358)	-0.155 (0.222)	0.220 (0.206)
연도*지역코드_10_39	1.521*** (0.232)	0.00277 (0.159)		-0.756 (0.658)	0.504*** (0.115)
연도*지역코드_10_40	-0.464 (0.315)		0.412** (0.209)	0.182 (0.290)	-0.502* (0.267)
연도*지역코드_11_21	0.316* (0.162)	-0.430 (0.577)	-0.586** (0.256)	0.102 (0.243)	0.605*** (0.230)
연도*지역코드_11_22	0.154 (0.123)	-0.0989 (0.382)	-0.360* (0.194)	0.317 (0.234)	0.121 (0.182)
연도*지역코드_11_23	-0.0296 (0.128)	-0.0723 (0.465)	-0.849** (0.432)	-0.0837 (0.206)	0.124 (0.167)
연도*지역코드_11_24	-0.0265 (0.189)	-0.205 (0.762)	-0.698** (0.343)	-0.0743 (0.250)	0.115 (0.391)
연도*지역코드_11_25	-0.228 (0.141)	-0.504 (0.660)	-0.861*** (0.267)	-0.334* (0.198)	0.123 (0.251)
연도*지역코드_11_26	-0.303 (0.190)	-1.822*** (0.326)	-1.677** (0.684)	-0.384 (0.240)	-0.172 (0.264)
연도*지역코드_11_31	-0.0621 (0.0951)	-0.237 (0.501)	-0.438** (0.174)	-0.0165 (0.138)	-0.0400 (0.139)
연도*지역코드_11_32	-0.000968 (0.155)	-0.390 (0.546)	-0.532 (0.335)	-0.00656 (0.240)	0.0459 (0.231)
연도*지역코드_11_33	0.0795 (0.158)	-2.702*** (0.413)	-0.667** (0.260)	-0.166 (0.272)	0.384* (0.213)
연도*지역코드_11_34	-0.0804 (0.154)		-0.360* (0.185)	-0.118 (0.250)	-0.0739 (0.242)
연도*지역코드_11_35	-0.0522 (0.161)	-1.332** (0.677)	-0.407 (0.287)	-0.154 (0.209)	0.178 (0.247)

<표 IV-5>의 계속

변수	log(국내여행경비)				
	(1) 전체표본	(2) 소득하위 25%	(3) 소득하위 25~50%	(4) 소득상위 25~50%	(5) 소득상위 25%
연도*지역코드_11_36	0.118 (0.141)	-0.719* (0.430)	-0.436 (0.309)	0.0574 (0.221)	0.375** (0.190)
연도*지역코드_11_37	0.372*** (0.142)	-0.839* (0.436)	-0.337 (0.241)	0.438** (0.214)	0.819*** (0.243)
연도*지역코드_11_38	-0.138 (0.163)	-1.133 (0.834)	-0.388 (0.268)	-0.438 (0.293)	0.109 (0.222)
연도*지역코드_11_39	1.266*** (0.0992)			1.146*** (0.107)	
연도*지역코드_11_40	-0.310 (0.322)			0.417*** (0.109)	-0.319 (0.278)
Constant	3.267*** (0.232)	3.233*** (0.493)	2.646*** (0.446)	2.670*** (0.352)	3.697*** (0.460)
Observations	12,608	1,203	2,737	3,921	4,747
R-squared	0.046	0.164	0.105	0.090	0.062
Number of id	3,860	518	964	1,151	1,227

주: 1. () 안의 값은 id 단위 군집화된 표준편차

2. *** p<0.01, ** p<0.05, * p<0.1

3. 연도 코드: 11=2017년, 10=2016년, 9=2015년, 8=2014년, 7=2013년 6=2012년(기준연도)

지역 코드: 11(서울, 기준지역),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40(세종)

- 가구 소득 10% 증가 시, 국내 여행경비지출은 1.26% 증가
- 가구 소득별 국내 여행경비지출의 탄력성(가구 소득 10% 증가 시)
 - 하위 25%: 0.467%(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
 - 하위 25~50%: 1.2%***
 - 상위 25~50%: 1.48%***
 - 상위 25%: 1.2%**
-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여행경비지출이 증가하지 않음
 -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도 커짐
 - 상위 25%는 소득 상위 25~50%도 국내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이 0.148에 불과해 절대적인 소득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재정패널데이터는 패널조사로 각 가구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 가구별 고정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숙박비 지출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
 -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8년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숙박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함

나. 국내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 0.082

□ 2018년 국민여행조사(횡단면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여행 숙박비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

- 국민여행조사는 재정패널데이터와 달리 횡단면데이터로 각 가구별 관측되지 않는 특성, 고정효과를 통제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여 직업, 학력, 혼인상태, 가족 수, 만 15세 이하 가족 수, 성별, 연령별 고정효과, 조사연월*거주지역(광역시도레벨) 고정효과를 설명변수로 추가 활용
- 다음 식(4)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

$$\square \ln(\text{국내 숙박비 지출}) = \alpha + \beta_1 \cdot \log(\text{개인소득}) + \beta_2 \cdot (\text{직업별}) + \beta_3 \cdot (\text{학력별}) + \beta_3 \cdot (\text{혼인상태별}) + \beta_3 \cdot (\text{가족 구성원 수별}) + \beta_3 \cdot (\text{만 15세 미만 가족 수}) + \beta_3 \cdot (\text{성별}) + \beta_3 \cdot (\text{연령별}) + \beta \cdot (\text{월별}) \times (\text{시도지역별}) + (\text{가구별 고정효과}) + \epsilon \text{ ----- (4)}$$

<표 IV-6> 국내 숙박비지출 소득탄력성(국민여행조사)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log(개인소득)	0.0819*** (0.0293)	-0.00208 (0.0554)	0.294** (0.115)	0.501* (0.277)
직업_2	0.158* (0.0904)	0.284 (0.202)	0.297** (0.118)	-0.593** (0.245)
직업_3	0.111 (0.101)	0.355 (0.234)	0.214 (0.134)	-0.535** (0.265)
직업_4	0.172* (0.0933)	0.258 (0.202)	0.389*** (0.126)	-0.746** (0.313)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직업_5	-0.0331 (0.148)	-0.513 (0.326)	-0.0763 (0.211)	-0.115 (0.353)
직업_6	0.0250 (0.103)	0.0863 (0.215)	0.210 (0.143)	-0.597* (0.308)
직업_7	0.150 (0.0927)	0.247 (0.204)	0.247** (0.125)	-0.606** (0.248)
직업_8	-0.0367 (0.127)	-0.0948 (0.230)	0.0610 (0.263)	0.194 (0.624)
직업_9	0.280** (0.113)	0.273 (0.224)	0.322* (0.169)	-0.316 (0.346)
직업_10	0.347** (0.149)	0.374 (0.247)	0.413 (0.299)	
직업_11	0.195 (0.137)	0.245 (0.234)	0.346 (0.260)	
직업_12	0.0510 (0.200)	-0.209 (0.309)	-0.00942 (0.529)	0.682 (0.838)
학력_2	0.394 (0.242)	0.347 (0.262)	1.048 (0.785)	
학력_3	0.523** (0.237)	0.612** (0.259)	0.984 (0.772)	0.0614 (0.348)
학력_4	0.587** (0.239)	0.752*** (0.265)	0.982 (0.774)	0.333 (0.344)
학력_5	0.527** (0.240)	0.703*** (0.265)	0.970 (0.774)	0.233 (0.332)
학력_6	0.535* (0.282)	1.109** (0.434)	0.934 (0.814)	
혼인상태_2	0.0737 (0.0486)	0.133* (0.0767)	0.0511 (0.0702)	0.383 (0.313)
혼인상태_3	0.233 (0.263)	-0.473 (0.526)	0.268 (0.348)	0.720 (0.932)
혼인상태_4	-0.0963 (0.178)	0.0480 (0.214)	-0.250 (0.358)	-0.402 (1.371)
혼인상태_5	0.127 (0.142)	0.310 (0.209)	-0.0413 (0.206)	-1.148 (0.867)
혼인상태_6	-0.124 (0.337)	0.323 (0.437)	-0.570 (0.531)	
가족 구성원 수_2	-0.255 (0.361)	0.248* (0.128)	-0.338 (0.361)	1.475 (1.688)
가족 구성원 수_3	-0.289 (0.359)	0.00273 (0.123)	-0.244 (0.357)	1.616 (1.687)
가족 구성원 수_4	-0.320 (0.358)	0.0638 (0.121)	-0.332 (0.356)	1.298 (1.691)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가족 구성원 수_5	-0.436 (0.364)		-0.428 (0.368)	1.411 (1.725)
가족 구성원 수_6	-0.711* (0.407)	-0.331 (0.343)	-0.510 (0.458)	
가족 구성원 수_7	-0.700 (0.655)		-0.728 (0.644)	
만 15세 미만 구성원 수_1	0.0111 (0.0370)	0.0927 (0.0674)	-0.0531 (0.0510)	0.126 (0.115)
만 15세 미만 구성원 수_2	-0.0675 (0.0426)	-0.0996 (0.0768)	-0.0721 (0.0589)	0.108 (0.138)
만 15세 미만 구성원 수_3	-0.284*** (0.102)	-0.165 (0.135)	-0.400** (0.178)	-0.161 (0.548)
만 15세 미만 구성원 수_4	-0.797 (0.693)		-0.882 (0.881)	-2.419** (1.114)
만 15세 미만 구성원 수_5	0.997* (0.537)	1.089* (0.595)		
성별_2	-0.0406 (0.0266)	-0.0676 (0.0477)	0.00371 (0.0416)	0.263* (0.141)
연령별_2	-0.334*** (0.106)	-0.299** (0.143)	-0.229 (0.221)	-0.0301 (0.599)
연령별_3	-0.492*** (0.111)	-0.394** (0.153)	-0.426* (0.221)	-0.145 (0.709)
연령별_4	-0.512*** (0.112)	-0.527*** (0.158)	-0.377* (0.222)	-0.0782 (0.696)
연령별_5	-0.492*** (0.114)	-0.419*** (0.162)	-0.475** (0.225)	-0.0424 (0.696)
연령별_6	-0.504*** (0.120)	-0.548*** (0.173)	-0.359 (0.232)	0.0589 (0.721)
연령별_7	-0.599*** (0.135)	-0.639*** (0.184)	-0.413 (0.259)	0.0580 (1.023)
월별_2	0.189 (0.122)	0.0671 (0.191)	0.540*** (0.184)	-0.430* (0.257)
월별_3	0.0956 (0.133)	-0.479* (0.257)	0.132 (0.190)	0.710*** (0.246)
월별_4	-0.351** (0.147)	-0.551** (0.234)	-0.115 (0.213)	-0.432 (0.306)
월별_5	-0.0146 (0.135)	-0.587** (0.240)	0.199 (0.191)	0.0227 (0.279)
월별_6	0.0188 (0.126)	-0.0739 (0.203)	0.0395 (0.185)	0.297 (0.271)
월별_7	-0.186 (0.117)	-0.215 (0.176)	-0.124 (0.175)	0.00556 (0.275)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_8	-0.133 (0.118)	-0.208 (0.191)	0.0108 (0.174)	-0.201 (0.242)
월별_9	-0.170 (0.136)	-0.270 (0.196)	-0.0356 (0.221)	0.00204 (0.297)
월별_10	-0.0295 (0.137)	-0.114 (0.212)	0.0675 (0.192)	0.156 (0.512)
월별_11	-0.223 (0.163)	-0.590* (0.341)	0.0350 (0.205)	-0.832* (0.430)
월별_12	-0.269** (0.135)	-0.311 (0.235)	-0.144 (0.192)	-0.225 (0.261)
시도코드_21	0.349** (0.150)	-0.0329 (0.231)	-0.141 (0.243)	1.989*** (0.301)
시도코드_22	-0.266 (0.262)	-1.270** (0.586)	0.0898 (0.317)	-0.899 (0.753)
시도코드_23	-0.414** (0.189)	-0.559** (0.256)	-0.199 (0.302)	-0.689 (0.527)
시도코드_24	0.228 (0.196)	0.376 (0.264)	0.142 (0.364)	-0.224 (0.405)
시도코드_25	0.326** (0.152)	0.491** (0.239)	0.288 (0.208)	-0.758 (0.688)
시도코드_26	0.483*** (0.144)	0.866*** (0.273)	0.594*** (0.186)	-0.837 (0.549)
시도코드_29	-0.504 (0.548)	-1.085 (0.912)	-0.324 (0.653)	-0.622 (0.625)
시도코드_31	-0.149 (0.127)	-0.101 (0.188)	-0.0735 (0.197)	-0.261 (0.271)
시도코드_32	0.810*** (0.148)	0.879*** (0.194)	-0.0320 (0.326)	0.422 (0.497)
시도코드_33	-0.335 (0.288)	-0.298 (0.322)	-0.713 (0.624)	-0.125 (0.880)
시도코드_34	-0.130 (0.196)	-0.200 (0.282)	0.0345 (0.270)	-0.798 (0.860)
시도코드_35	0.425** (0.202)	0.651** (0.293)	0.198 (0.296)	-0.371 (0.892)
시도코드_36	0.0225 (0.218)	-0.171 (0.437)	0.240 (0.256)	-0.969 (0.880)
시도코드_37	-0.420 (0.342)	-0.572 (0.467)	-0.201 (0.652)	-0.847 (0.695)
시도코드_38	-0.215 (0.204)	-0.909 (0.757)	-0.0567 (0.244)	0.0988 (0.414)
시도코드_39	-0.202 (0.624)	0.692 (0.612)	-0.771 (0.653)	-0.168 (0.861)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2_21	-0.473** (0.214)	-0.384 (0.396)	-0.0456 (0.311)	-1.452*** (0.488)
월별X시도_2_22	0.111 (0.374)	0.546 (0.957)	-0.302 (0.611)	1.042 (0.786)
월별X시도_2_23	0.0515 (0.256)	0.345 (0.360)	-0.549 (0.414)	1.155* (0.629)
월별X시도_2_24	-1.186*** (0.423)	-1.296*** (0.483)	-1.460 (0.981)	
월별X시도_2_25	-0.513** (0.230)	-0.661* (0.352)	-0.606* (0.310)	
월별X시도_2_26	-0.506** (0.221)	-0.675* (0.359)	-1.297*** (0.423)	1.467** (0.625)
월별X시도_2_29	0.286 (0.652)	0.853 (1.001)	-0.431 (0.923)	
월별X시도_2_31	0.0672 (0.175)	-0.0774 (0.274)	-0.117 (0.257)	0.487 (0.429)
월별X시도_2_32	-0.500** (0.212)	-0.519* (0.276)	0.0201 (0.441)	
월별X시도_2_33	-0.516 (0.412)	-0.302 (0.728)	-0.354 (0.704)	
월별X시도_2_34	-0.407 (0.306)	0.0170 (0.466)	-0.902** (0.400)	
월별X시도_2_35	-0.906*** (0.293)	-1.143*** (0.437)	-0.773* (0.403)	
월별X시도_2_36	-0.877** (0.385)	-0.592 (0.602)	-1.177** (0.599)	0.549 (1.155)
월별X시도_2_37	-0.0242 (0.517)	0.126 (0.655)		0.343 (0.959)
월별X시도_2_38	0.131 (0.255)	1.071 (0.791)	-0.419 (0.327)	0.139 (0.637)
월별X시도_2_39	-0.299 (0.916)			
월별X시도_3_21	-0.438** (0.219)	0.216 (0.393)	0.0443 (0.340)	-2.270*** (0.401)
월별X시도_3_22	0.0809 (0.431)		-0.0598 (0.470)	
월별X시도_3_23	0.491* (0.267)	0.471 (0.434)	0.746* (0.389)	-0.0926 (0.792)
월별X시도_3_24	0.0417 (0.279)	0.598 (0.397)	-0.546 (0.501)	
월별X시도_3_25	-0.159 (0.293)	0.539 (0.427)	-0.870* (0.444)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3_26	-0.303 (0.235)	-0.974* (0.552)	-0.222 (0.301)	0.136 (0.672)
월별X시도_3_29	0.721 (0.596)	1.926** (0.975)	0.343 (0.738)	
월별X시도_3_31	-0.259 (0.193)	0.154 (0.324)	-0.440 (0.296)	-0.504 (0.422)
월별X시도_3_32	-0.470** (0.214)	0.0802 (0.326)	0.339 (0.447)	-1.448** (0.711)
월별X시도_3_33	-0.410 (0.424)	0.111 (0.515)	-0.200 (0.836)	
월별X시도_3_34	-0.154 (0.291)	0.471 (0.442)	-0.151 (0.407)	
월별X시도_3_35	-0.983*** (0.308)	-0.712 (0.437)	-0.672 (0.548)	
월별X시도_3_36	0.396 (0.281)	1.372*** (0.519)	-0.388 (0.388)	
월별X시도_3_37	0.663* (0.389)	0.841 (0.587)	1.079 (0.698)	-0.0680 (0.776)
월별X시도_3_38	0.214 (0.278)	1.590* (0.812)	-0.0105 (0.379)	-1.407* (0.844)
월별X시도_3_39	0.835 (0.682)	0.316 (0.751)	1.488* (0.770)	
월별X시도_4_21	0.250 (0.237)	1.182*** (0.351)	0.376 (0.384)	-2.142*** (0.559)
월별X시도_4_22	0.0757 (0.450)	0.940 (1.031)	-0.907 (0.694)	0.661 (1.077)
월별X시도_4_23	0.415 (0.277)	0.637* (0.386)	0.00289 (0.431)	1.211 (0.793)
월별X시도_4_24	0.717** (0.281)	1.002** (0.464)	0.711 (0.447)	1.325** (0.614)
월별X시도_4_25	-0.390 (0.376)	-0.416 (0.507)	-0.451 (0.553)	
월별X시도_4_26	-0.237 (0.268)	0.0122 (0.543)	-0.592* (0.334)	1.181 (0.805)
월별X시도_4_29	0.542 (0.689)	1.418 (1.091)	0.0249 (0.852)	
월별X시도_4_31	0.617*** (0.199)	0.963*** (0.297)	0.191 (0.302)	0.317 (0.449)
월별X시도_4_32	-0.737*** (0.262)	-1.079** (0.518)	0.107 (0.425)	-0.0585 (0.798)
월별X시도_4_33	0.264 (0.392)	0.361 (0.479)	0.403 (0.743)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4_34	0.0889 (0.326)	0.137 (0.500)	-0.121 (0.427)	
월별X시도_4_35	-0.245 (0.299)	-0.181 (0.441)	-0.127 (0.422)	
월별X시도_4_36	0.0441 (0.302)	0.139 (0.528)	0.111 (0.400)	0.813 (1.128)
월별X시도_4_37	0.535 (0.442)	-0.237 (1.123)	0.212 (0.753)	1.306 (0.834)
월별X시도_4_38	0.884*** (0.260)	1.686** (0.803)	0.687** (0.329)	0.244 (0.563)
월별X시도_4_39	0.818 (0.803)		1.234 (0.823)	
월별X시도_5_21	-0.194 (0.216)	0.839** (0.361)	0.193 (0.313)	
월별X시도_5_22	0.128 (0.346)	1.657** (0.707)	-0.255 (0.431)	1.010 (1.118)
월별X시도_5_23	0.452* (0.254)	0.957** (0.386)	0.241 (0.371)	
월별X시도_5_24	-0.874*** (0.307)	-0.546 (0.428)	-0.841* (0.499)	
월별X시도_5_25	-0.593** (0.300)	-0.368 (0.522)	-0.622* (0.370)	
월별X시도_5_26	-0.251 (0.223)	-0.538 (0.424)	-0.451 (0.288)	2.074*** (0.666)
월별X시도_5_29	0.183 (0.610)	1.148 (1.117)	0.120 (0.750)	0.313 (0.749)
월별X시도_5_31	-0.130 (0.197)	0.451 (0.312)	-0.500* (0.300)	-0.257 (0.447)
월별X시도_5_32	-0.295 (0.211)	0.263 (0.314)	0.497 (0.390)	-1.596* (0.810)
월별X시도_5_33	0.333 (0.344)	0.380 (0.488)	0.759 (0.707)	-0.00647 (0.931)
월별X시도_5_34	0.0365 (0.260)	0.962** (0.413)	-0.327 (0.357)	0.902 (0.935)
월별X시도_5_35	-0.693** (0.302)	-0.433 (0.423)	-0.455 (0.492)	
월별X시도_5_36	0.00529 (0.310)	0.445 (0.545)	-0.0948 (0.402)	
월별X시도_5_37	-0.00513 (0.413)	0.494 (0.794)	-0.160 (0.706)	0.0584 (0.889)
월별X시도_5_38	0.431 (0.271)	1.792** (0.807)	-0.258 (0.357)	0.432 (0.643)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5_39	0.881 (0.672)		1.672** (0.743)	-0.205 (0.993)
월별X시도_6_21	-0.0233 (0.222)	0.145 (0.364)	0.209 (0.367)	-1.323*** (0.415)
월별X시도_6_22	0.836** (0.355)	0.0468 (1.031)	0.820 (0.507)	0.627 (0.731)
월별X시도_6_23	0.790*** (0.248)	0.893** (0.352)	0.706* (0.382)	1.021 (0.702)
월별X시도_6_24	-0.646* (0.335)	-1.054** (0.473)	-0.198 (0.513)	
월별X시도_6_25	-0.593** (0.262)	-0.855 (0.551)	-0.392 (0.317)	
월별X시도_6_26	-0.562** (0.236)	-0.970** (0.431)	-0.568* (0.292)	
월별X시도_6_29	0.492 (0.642)		0.544 (0.754)	
월별X시도_6_31	-0.166 (0.191)	-0.274 (0.301)	0.0232 (0.274)	-0.928** (0.460)
월별X시도_6_32	-0.122 (0.216)	0.0525 (0.294)	0.183 (0.425)	0.000821 (0.658)
월별X시도_6_33	-0.0621 (0.397)	-0.302 (0.526)	0.625 (0.759)	-0.313 (1.045)
월별X시도_6_34	0.188 (0.255)	0.0195 (0.407)	0.0849 (0.348)	1.018 (0.930)
월별X시도_6_35	-0.656** (0.288)	-0.799** (0.388)	-0.371 (0.475)	
월별X시도_6_36	0.515* (0.287)	0.300 (0.522)	0.898** (0.358)	
월별X시도_6_37	0.174 (0.408)	0.534 (0.540)	-0.500 (1.057)	0.0721 (0.854)
월별X시도_6_38	0.456* (0.258)	1.004 (0.800)	0.456 (0.325)	-0.264 (0.574)
월별X시도_7_21	-0.237 (0.229)	0.1000 (0.409)	0.309 (0.327)	-1.876*** (0.543)
월별X시도_7_22	0.200 (0.337)	0.825 (0.655)	0.351 (0.453)	0.917 (0.938)
월별X시도_7_23	0.696*** (0.236)	1.007*** (0.333)	0.549 (0.359)	0.317 (0.679)
월별X시도_7_24	-0.291 (0.254)	-0.770** (0.374)	0.0684 (0.418)	-1.344 (0.837)
월별X시도_7_25	-0.275 (0.216)	-0.394 (0.330)	-0.197 (0.293)	0.180 (0.907)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7_26	-0.385* (0.227)	-1.010** (0.406)	-0.279 (0.292)	-0.0253 (0.792)
월별X시도_7_29	0.978* (0.574)	1.156 (1.003)	0.985 (0.683)	0.645 (0.840)
월별X시도_7_31	0.543*** (0.163)	-0.0471 (0.279)	0.674*** (0.239)	0.247 (0.384)
월별X시도_7_32	-0.265 (0.233)	0.101 (0.347)	-0.107 (0.449)	-0.157 (0.605)
월별X시도_7_33	0.639* (0.336)	0.409 (0.421)	1.030 (0.670)	1.073 (0.980)
월별X시도_7_34	0.284 (0.243)	0.303 (0.354)	0.326 (0.340)	0.780 (0.947)
월별X시도_7_35	-0.176 (0.249)	-0.533 (0.353)	0.258 (0.366)	
월별X시도_7_36	-0.150 (0.280)	0.131 (0.487)	-0.543 (0.386)	
월별X시도_7_37	0.281 (0.381)	0.0750 (0.547)	0.218 (0.690)	0.654 (0.785)
월별X시도_7_38	0.153 (0.253)	0.843 (0.794)	0.0744 (0.323)	-0.382 (0.562)
월별X시도_7_39	0.783 (0.682)	0.324 (0.732)	1.149 (0.789)	-0.616 (1.071)
월별X시도_8_21	-0.454** (0.219)	0.183 (0.338)	-0.0212 (0.323)	-3.124*** (0.695)
월별X시도_8_22	0.684** (0.304)	0.678 (1.004)	0.353 (0.360)	0.628 (1.024)
월별X시도_8_23	0.564** (0.231)	0.488 (0.346)	0.496 (0.352)	0.897 (0.598)
월별X시도_8_24	-0.780*** (0.302)	-0.877** (0.397)	-0.877* (0.505)	
월별X시도_8_25	-0.306 (0.213)	-0.387 (0.324)	-0.312 (0.300)	0.341 (0.829)
월별X시도_8_26	-0.289 (0.224)	-0.633* (0.366)	-0.483 (0.307)	
월별X시도_8_29	0.821 (0.586)	1.443 (0.948)	0.181 (0.773)	
월별X시도_8_31	0.549*** (0.161)	0.501* (0.255)	0.523** (0.238)	0.464 (0.391)
월별X시도_8_32	-0.398* (0.228)	-0.453 (0.289)	0.431 (0.512)	-0.641 (0.790)
월별X시도_8_33	0.125 (0.337)	-0.179 (0.477)	0.525 (0.659)	0.0642 (1.029)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8_34	0.523** (0.246)	0.391 (0.382)	0.503 (0.331)	
월별X시도_8_35	-0.190 (0.261)	-0.452 (0.392)	0.0999 (0.365)	-1.161 (1.331)
월별X시도_8_36	0.166 (0.269)	0.330 (0.497)	-0.231 (0.345)	1.839* (0.971)
월별X시도_8_37	0.714* (0.376)	0.576 (0.537)	0.209 (0.703)	1.794** (0.748)
월별X시도_8_38	0.589** (0.255)	1.152 (0.792)	0.458 (0.329)	-0.128 (0.833)
월별X시도_8_39	1.228* (0.671)	0.382 (0.679)	0.229 (1.099)	
월별X시도_9_21	-0.855*** (0.330)	-0.555 (0.533)	-0.568 (0.498)	-1.853*** (0.639)
월별X시도_9_22	0.0223 (0.416)	1.111 (0.771)	-0.194 (0.543)	-0.533 (1.261)
월별X시도_9_23	0.595** (0.278)	0.643 (0.401)	0.508 (0.410)	
월별X시도_9_24	-0.593* (0.349)	-0.684 (0.467)	-0.504 (0.553)	
월별X시도_9_25	0.254 (0.264)	-0.237 (0.372)	-0.220 (0.608)	1.976** (0.781)
월별X시도_9_26	-0.614 (0.403)	-0.787 (0.596)	-1.223** (0.555)	
월별X시도_9_29	0.371 (0.681)	0.997 (0.998)		
월별X시도_9_31	-0.00930 (0.197)	-0.112 (0.295)	0.108 (0.299)	-0.612 (0.528)
월별X시도_9_32	-0.365 (0.248)	-0.202 (0.334)	0.397 (0.465)	-0.808 (0.781)
월별X시도_9_33	0.218 (0.420)	0.411 (0.498)	0.299 (0.797)	
월별X시도_9_34	-0.119 (0.347)	-0.363 (0.558)	-0.122 (0.459)	-1.023 (1.361)
월별X시도_9_35	-0.643* (0.345)	-0.726 (0.474)	-0.538 (0.670)	0.0816 (1.025)
월별X시도_9_36	0.00615 (0.300)	0.324 (0.498)	-0.285 (0.488)	
월별X시도_9_37	0.520 (0.426)	0.422 (0.588)	0.666 (0.779)	0.975 (0.888)
월별X시도_9_38	0.354 (0.325)	1.043 (0.834)	0.405 (0.475)	-1.447 (1.082)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10_21	-0.221 (0.235)	0.495 (0.327)	-0.579 (0.424)	-2.887*** (0.753)
월별X시도_10_22	-0.261 (0.487)		-0.487 (0.543)	0.713 (2.124)
월별X시도_10_23	0.422 (0.352)	0.0959 (0.520)	0.664 (0.479)	
월별X시도_10_24	-1.015*** (0.330)	-1.385*** (0.518)	-0.709 (0.513)	-0.629 (0.806)
월별X시도_10_25	-0.919*** (0.330)	-0.891 (0.809)	-0.806* (0.412)	
월별X시도_10_26	-0.472* (0.248)	-0.608 (0.376)	-0.953*** (0.363)	
월별X시도_10_29	0.470 (0.649)	0.926 (1.105)	0.415 (0.769)	
월별X시도_10_31	-0.103 (0.193)	-0.0507 (0.317)	-0.137 (0.275)	-0.165 (0.583)
월별X시도_10_32	-0.577** (0.246)	-1.453*** (0.423)	0.490 (0.398)	
월별X시도_10_33	0.136 (0.464)	-0.392 (0.896)	0.896 (0.781)	-0.774 (1.246)
월별X시도_10_34	0.195 (0.304)	-0.0159 (0.425)	0.480 (0.424)	
월별X시도_10_35	-0.858** (0.346)	-1.085* (0.571)	-0.545 (0.520)	0.0880 (1.112)
월별X시도_10_36	0.485 (0.300)	-0.573 (0.576)	0.809** (0.356)	-0.499 (1.261)
월별X시도_10_37	-0.230 (0.525)	-0.761 (0.806)	-0.0963 (0.806)	
월별X시도_10_38	0.373 (0.305)	1.253 (0.829)	0.215 (0.387)	-0.935 (0.936)
월별X시도_10_39	0.807 (0.668)	0.292 (0.734)	1.521** (0.715)	
월별X시도_11_21	-0.696** (0.293)	0.00502 (0.467)	-0.624 (0.479)	-1.351* (0.804)
월별X시도_11_22	0.0141 (0.476)	1.627** (0.810)	-0.666 (0.667)	
월별X시도_11_23	0.438 (0.278)	1.239*** (0.452)	-0.173 (0.409)	0.739 (0.825)
월별X시도_11_25	-0.505 (0.320)	-0.286 (0.519)	-0.784 (0.572)	1.414 (0.894)
월별X시도_11_26	-0.248 (0.302)	-0.497 (0.572)	-0.475 (0.409)	2.047** (0.807)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11_29	0.933 (0.647)	1.180 (1.265)	0.286 (0.888)	1.926** (0.831)
월별X시도_11_31	-0.0146 (0.216)	-0.138 (0.421)	-0.0721 (0.282)	0.798 (0.562)
월별X시도_11_32	-0.939*** (0.300)	-0.755* (0.454)	-0.627 (0.671)	0.0111 (0.767)
월별X시도_11_33	0.399 (0.411)	0.948* (0.543)	0.389 (0.821)	
월별X시도_11_34	0.137 (0.349)	1.066** (0.533)	-0.812* (0.481)	
월별X시도_11_35	0.127 (0.328)	-0.193 (0.537)	-0.442 (0.635)	1.448 (1.033)
월별X시도_11_36	0.353 (0.431)		0.0832 (0.459)	
월별X시도_11_37	0.321 (0.486)	1.206* (0.687)	-0.536 (0.886)	0.132 (1.193)
월별X시도_11_38	0.0732 (0.289)	0.917 (0.853)	-0.0737 (0.350)	0.348 (0.821)
월별X시도_11_39	0.300 (0.686)	-0.0998 (0.742)	0.747 (0.847)	
월별X시도_12_21	-0.220 (0.258)	0.371 (0.379)	0.124 (0.444)	-2.361*** (0.550)
월별X시도_12_22	0.530 (0.335)	2.086*** (0.686)	-0.0293 (0.408)	
월별X시도_12_23	0.296 (0.249)	0.427 (0.374)	0.0742 (0.378)	0.938 (0.625)
월별X시도_12_24	0.387 (0.259)	0.104 (0.389)	0.515 (0.422)	
월별X시도_12_25	0.187 (0.267)	0.220 (0.394)	0.00921 (0.506)	0.991 (0.811)
월별X시도_12_26	-0.0585 (0.296)	-0.682 (0.536)	0.0438 (0.375)	0.286 (0.939)
월별X시도_12_29	1.163* (0.611)	0.847 (1.080)	1.226* (0.721)	
월별X시도_12_31	0.0270 (0.188)	-0.187 (0.309)	-0.00277 (0.273)	0.134 (0.402)
월별X시도_12_32	-0.412 (0.270)	-0.721 (0.501)	0.613 (0.449)	-0.386 (0.652)
월별X시도_12_33	0.600 (0.430)	-0.744 (0.875)	1.275* (0.713)	
월별X시도_12_34	0.362 (0.274)	0.546 (0.411)	0.152 (0.383)	0.495 (0.993)

<표 IV-6>의 계속

종속변수: log(국내 숙박비 지출)				
변수	(1) 전체표본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연소득 3천만~5천만원	(4)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월별X시도_12_35	-0.532* (0.296)	-0.597 (0.450)	-0.314 (0.419)	-0.430 (1.072)
월별X시도_12_36	0.643** (0.278)	0.831 (0.508)	0.462 (0.362)	-0.244 (1.236)
월별X시도_12_37	1.294*** (0.395)	0.259 (0.629)	1.339* (0.692)	
월별X시도_12_38	0.221 (0.280)	0.584 (0.827)	0.344 (0.358)	-0.285 (0.602)
월별X시도_12_39	0.416 (0.733)		1.222 (0.785)	-0.415 (1.112)
월별X시도_6_39		-1.003 (0.867)		
상수항	10.54*** (0.482)	10.38*** (0.461)	8.524*** (1.116)	6.454** (2.616)
표본수	3,402	1,402	1,634	366
R-squared	0.217	0.392	0.297	0.648

주: 1.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

2. *** p<0.01, ** p<0.05, * p<0.1

<표 IV-7> 국민여행조사 범주형 변수 내용

범주형 변수	범주 내용
직업	1. 공무원, 군인 2. 사무직 3. 기술직 4. 판매, 서비스직 5. 전문직(교수, 의사, 법률가 등) 6. 생산, 기능, 노무직 7. 자영업자 8. 학생 9. 주부 10. 은퇴자 11. 무직 12. 기타
학력	1. 초등학교졸 이하 2. 중학교(재학/졸업 포함) 3. 고등학교(재학/졸업 포함) 4. 전문대학교(재학/졸업 포함) 5. 대학교(재학/졸업 포함) 6. 대학원 이상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동거 4. 사별 5. 이혼 6. 별거
성별	1. 남자 2. 여자

<표 IV-7>의 계속

범주형 변수	범주 내용
연령별	1. 15~19세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세 이상
시도코드	11. 서울, 21. 부산, 22. 대구, 23. 인천, 24. 광주, 25. 대전, 26. 울산, 31. 경기, 32. 강원,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 소득 10% 증가 시, 국내 숙박비 지출은 0.82%*** 증가
 -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 0.082
- 소득구간별 국내 숙박비 지출의 탄력성(소득 10% 증가 시)
 - 3천만원 이하: -0.00%(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3천만~5천만원: 2.94%**
 - 5천만원 이상: 5.01%*

<표 IV-8> 소득구간별 숙박비 지출 증가 예상금액(소득탄력성 이용)

(단위: 원)

소득구간	과세소득 금액	연평균 숙박비 지출	숙박비 소득공제 결정세액	숙박비 지출 증가금액(전체)
1천만원 이하	4,727,789	53,361	-	-
1.5천만원 이하	12,569,415	40,509	106	-
2천만원 이하	17,823,409	78,186	911	-
3천만원 이하	24,624,860	121,374	2,306	-
4천만원 이하	34,699,508	152,046	4,834	15,437,407
4.5천만원 이하	42,428,996	169,741	6,327	6,765,617
5천만원 이하	47,446,908	151,502	6,070	4,368,617
6천만원 이하	54,773,381	186,860	7,987	15,467,759
7천만원 이하	64,844,551	152,022	6,964	6,907,882
8천만원 이하	74,749,649	157,735	9,339	6,546,763
8천만원 초과	120,900,484	145,230	11,803	11,398,162
(총합계)				66,892,207

- 국내 여행경비지출, 국내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에 크게 못 미쳐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 증가, 이로 인한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조세특례 예상금액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추정
 - 소득구간별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6,700만원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4,900만원
 - 전체 총합계 금액은 <표 V-1>의 모집단(국세통계연보) 정보를 활용

3. 유사사례 분석(도서·공연비 소득공제)

- 2018년 7월에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도입의 효과를 분석, 유사한 규모와 성격의 소득공제제도가 해당 업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는지 계량 분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를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 (시행일: 2018년 7월 1일)

<표 IV-9>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 내용

구분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 도서·공연 사용분(30%) 신설
공제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원) +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최대한도(5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원) +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 사용분(100만원) 한도 추가, 최대한도(600만원)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공제 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국세청 마이크로데이터 부가세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도입 이후 서적 소매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는지 분석
- 광역시도별-업종별 패널데이터를 구축
 - 제도 시행 이후인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서적 소매업의 매출 변화를 실증분석
 - 통제변수
 - 광역시도별-업종별 매출액(소매업 세부업종과 대분류 주요업종 전체 매출액 이용)
 - 대형종합소매업, 사무용기기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스포츠용품소매업, 식품소매업,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운동용품 및 자전거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소매업, 통신판매업, 가구소매업, 가방 및 가죽제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연료소매업, 건설업, 게임용구 및 장난감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무점포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업,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운수업, 음료 및 담배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소매업, 음식표품소매업, 의약품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중고상품소매업, 차량용연료소매업, 방송통신서비스업 등 지역별 매출액을 통제변수로 활용
 - 상반기, 하반기 고정효과
 - 시계열 추세(time trend)
 - 관심 설명변수
 - 2018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제도 시행 더미(dummy)변수
- 실증분석 추정결과
- (1)열을 추정결과: 제도 시행 이후 서적 소매업의 매출이 0.45% 증가
 - 하지만 p-value가 0.846으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
 - 시계열 추세를 통제한 (2)열의 추정결과: 제도 시행 이후 서적 소매업의 매출이 0.69%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value: 0.750)

○ 서적 소매업의 전체 매출액 규모: 2.5조원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값 0.69%를 적용하더라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서적 소매업의 매출액 증가는 172억원으로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

<표 IV-10> 유사제도(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분석 결과

종속변수: log(서적소매업 매출액)		
계수: $\beta \times 100$		
변수	(1)	(2)
제도시행_더미	0.453	0.694
	(2.172)	(2.138)
상반기_더미	-14.81***	-12.49***
	(2.536)	(2.593)
시계열 추세		-1.802
		(1.170)
log(가구소매업)	5.131	2.165
	(12.29)	(12.03)
log(가방 및 가죽제품소매업)	-2.564	-4.573*
	(2.289)	(2.469)
log(가전제품소매업)	22.02**	22.84**
	(8.070)	(8.180)
log(가정용연료소매업)	-7.559	-8.081
	(5.258)	(5.228)
log(건설업)	-33.90**	-33.22**
	(15.78)	(14.59)
log(게임용구, 장난감소매업)	3.797	3.452
	(5.195)	(5.088)
log(교육서비스업)	0.648	0.608
	(1.377)	(1.369)
log(기타가정용품소매업)	-5.663	-4.728
	(7.362)	(7.648)
log(상품전문소매업)	4.013	6.543
	(4.580)	(5.394)
log(금융 및 보험업)	-5.356**	-5.064**
	(2.076)	(2.071)
log(무점포소매업)	15.35***	12.21***
	(3.764)	(3.112)

<표 IV-10>의 계속

종속변수: log(서적소매업 매출액)		
계수: $\beta \times 100$		
변수	(1)	(2)
log(대형종합소매업)	-7.098 (6.471)	-6.399 (5.938)
log(도매 및 상품중개업)	3.976 (2.689)	4.433 (2.821)
log(부동산업)	1.350 (1.155)	2.005 (1.286)
log(사무용기기소매업)	10.24 (14.48)	-0.112 (17.64)
log(사업시설관리업)	0.387 (1.163)	0.328 (1.195)
log(숙박 및 음식점업)	6.610 (24.77)	27.98 (27.57)
log(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12.13 (7.299)	12.08 (7.236)
log(식료품소매업)	0.723 (2.446)	0.338 (2.538)
log(신발소매업)	8.702* (4.196)	7.065 (4.751)
log(예술, 스포츠 및 여가)	31.82*** (6.530)	32.25*** (5.360)
log(선물용품소매업)	-6.350** (2.399)	-6.806** (2.618)
log(음료 및 담배소매업)	3.708 (5.373)	0.833 (4.663)
log(음반 및 비디오물소매업)	0.971 (1.895)	1.097 (1.912)
log(음식료품소매업)	-34.51 (25.37)	-28.02 (26.36)
log(의복소매업)	1.421 (3.347)	-0.221 (3.677)
log(의약품, 의료용기구)	4.882 (7.591)	1.993 (8.622)
log(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32.58*** (10.77)	32.10*** (10.53)

<표 IV-10>의 계속

종속변수: log(서적소매업 매출액)		
계수: $\beta \times 100$		
변수	(1)	(2)
log(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542** (2.661)	5.913** (2.573)
log(제조업)	57.44*** (15.93)	53.25*** (17.61)
log(중고상품소매업)	-6.583 (4.232)	-5.879 (4.196)
log(철물공구소매업)	-8.832 (12.16)	-4.407 (11.92)
log(컴퓨터 및 주변기기)	-4.825 (10.32)	-2.208 (10.82)
log(통신판매업)	14.78* (7.832)	21.28* (10.35)
log(협회 및 단체)	-1.816 (2.018)	-1.267 (2.243)
상수항	-1,007** (437.1)	-1,505*** (456.8)
Observations	147	147
R-squared	0.999	0.999
Number of id	17	17

주: 1. () 안은 id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V. 형평성 분석



V. 형평성 분석

- 이 장에서는 ‘숙박비 공제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들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분석을 위해 약 93만명의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개인별로 수집하였음
 - 숙박비 지출 관련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문화산업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활용함

1. 분석 자료

- 분석을 위해 협조받은 국세청 자료는 개인별 연말정산 기초자료로 총샘플 수는 약 93만명 수준임
 - 해당 자료는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포괄하고 있어 93만명의 2018년 소득세 결정세액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음
- 국세청 개별 납세자 표본은 소득구간별로 임의 추출함
 -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설정함
 - 소득구간은 국세통계연보와 일치시킴
 - 소득구간별 표본 수를 정한 뒤 구간 내 임의 추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다음의 표는 국세청 자료 93만건을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음
 -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인원 수는 약 1,858만명으로 소득 구간별 표본-모집단 비율은 모든 구간에서 약 5% 수준임
 - 표본이 임의 추출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표본의 대표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함

<표 V-1> 국세청 자료의 대표성 점검

(단위: 명, %)

소득구간	표본 수	모집단(국세통계연보)	표본비율
1천만원 이하	152,341	3,054,410	4.99
1.5천만원 이하	75,076	1,498,558	5.01
2천만원 이하	101,872	2,042,515	4.99
3천만원 이하	186,759	3,740,289	4.99
4천만원 이하	118,973	2,382,689	4.99
4.5천만원 이하	43,730	873,850	5.00
5천만원 이하	36,873	736,879	5.00
6천만원 이하	57,052	1,133,975	5.03
8천만원 이하	75,603	1,508,812	5.01
1억원 이하	39,866	804,069	4.96
1억원 초과	39,642	801,839	4.94
계	927,787	18,577,885	4.99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2> 국민여행조사 개요

구분	내용	
통계명	국민여행조사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수행기관)	
작성주기	2018년부터 매월(연 12회) 조사 (2018년 이전에는 연 2회 조사)	
작성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 및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와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제고	
조사대상	대상범위	만 15세 이상 국민 매월 2,000명씩 표본 추출하여 연간 24,000명을 조사 (2018년 이전에는 2,497가구 패널, 6,309명 조사)
	표본추출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여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 조사구 내에서 5가구를 추출
	모집단	인구주택총조사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 후 적격 대상자 1명을 선정하여 조사 (2018년 이전에는 국내외 여행을 다녀온 여행자가 종이 여행기록부 또는 온라인 여행기록부에 자기기입법으로 작성)	
주요 조사 항목	여행총량	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여행 행태	여행 시기, 여행 방문지, 방문지 선택이유, 정보 획득 경로, 여행사 상품 구매 여부, 숙박시설, 여행지에서의 활동 등
	여행 평가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 추천 의향
	인구통계학 특성	직업, 학력, 혼인 여부,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2019. 5를 참조하여 작성

- 개인별 연간 숙박비 지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2018년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 국민여행조사는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여행의 총량, 목적, 소비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음
 - 해당 조사는 1976년 ‘전국민 여행동태조사’로 시작하여 1993년부터 ‘국민여행 실태조사’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의 ‘국민여행조사’로 다시 변경됨
 - 조사주기는 연 1회 혹은 2회로 유지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월별 조사로 변경되어 월별 2,000명을 조사하고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보고하고 있음

2. 소득수준별 여행 및 숙박비 지출 현황

- 이 절에서는 국민여행조사를 이용하여 여행과 관련된 평균 지표들을 살펴보고 하겠음
 - 『2018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는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으로 구분하여 연간 평균 여행횟수와 여행별 총지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
 - 이 중 ‘숙박비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정리함
- 전체 조사대상자 중 2018년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약 89.2%이며 1인 평균 약 6.92회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됨

<표 V-3> 1인 평균 여행 횟수

(단위: 회)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6.92	3.63	3.29	5.26	2.86	2.41	1.66	0.77	0.89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2019. 5

- 여행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1회 평균 국내여행 일수를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1.81일 여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일 여행에 비해 숙박 여행의 비중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4> 1인 평균 여행 일수

(단위: 일)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1.81	2.51	1.00	1.81	2.49	1.00	1.76	2.60	1.0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2019. 5

- 1인 평균 연간 국내여행 지출액의 경우 약 95만 9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숙박을 겸한 여행의 지출은 평균 약 72만 2천원 수준임
 - 이 중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로 조사됨

<표 V-5> 1인 평균 여행 지출액

(단위: 천원)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959	722	238	783	606	177	177	115	61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2019. 5

<표 V-6> 여행지 구매 항목별 지출 비중 - 관광여행

(단위: %)

구분	음식점비	교통비	숙박비	쇼핑비	여행 활동비	여행 회비/모임 회비	여행사 상품 구입비	기타
전체	39.2	26.7	11.0	9.4	6.4	5.1	1.9	0.2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2019. 5

- 국민여행조사 조사 항목들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대한 조사 항목이 존재함
 - 월평균 가구 월소득과 월평균 개인 월소득 조사항목이 존재함
 - 소득 조사항목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임

- <표 V-7>은 개인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연간 여행비 지출 및 숙박비 지출액을 정리하고 있음
 - 1인당 연평균 여행비 지출액은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약 60만 1천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행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소득 대비 여행비 지출액은 총소득 연 4천만원 이상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여행비 지출액에서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가구소득 연 4천만원을 기준으로 크게 차이가 발생함

<표 V-7> 가구소득 구간별 1인당 연평균 여행·숙박비 지출액

(단위: 명, 원, %)

소득구간	샘플수	연평균 여행비 지출액	숙박비 비중	연평균 숙박비 지출액
1천만원 이하	1,408	601,219	8.9	53,361
1.5천만원 이하	1,251	577,466	7.0	40,509
2천만원 이하	1,554	828,466	9.4	78,186
3천만원 이하	6,537	1,058,731	11.5	121,374
4천만원 이하	3,398	1,243,063	12.2	152,046
4.5천만원 이하	1,261	1,366,745	12.4	169,741
5천만원 이하	1,273	1,204,133	12.6	151,502
6천만원 이하	1,099	1,319,256	14.2	186,860
7천만원 이하	95	1,116,563	13.60	152,022
8천만원 이하	172	1,380,871	12.10	157,735
8천만원 초과	132	1,380,871	10.5	145,230

자료: 『2018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국민여행조사 조사문항의 연간 소득 정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타 소득 항목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소득에 가까운 개념임
 - 국세청 자료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표 V-7>의 값들을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소득구간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낮은 근로소득자일수록 연간 숙박비 지출액 수준이 <표 V-7>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함

- 총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1인당 연평균 숙박비 지출액이 약 4만원에서 18만원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제도는 연간 숙박비 지출액의 30% 공제를 제시하고 있어 연간 약 1.2만원에서 약 5.4만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함
 - 이에 개인별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결정세액 감소분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표 V-7>의 연간 숙박비 지출액 규모는 본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 수준 증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에 이하의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하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들은 2018년 수준의 숙박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고 있음
 -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숙박비 지출액이 증가할지 여부는 이 절의 분석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3. 조세지출 규모 및 형평성 분석

-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의 감소분은 크게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의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의 변동은 개인별 숙박비 지출액에 공제율인 30%를 적용한 금액임
 - 산출세액의 변동은 과세표준 변동분에 개인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도출한 금액임
 -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변동은 개인별 세액공제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정세액의 변동을 의미

- 개인별 과세표준 변동분은 숙박비 지출액 규모와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 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발생함
 - 2018 국민여행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그 이상 근로자들에 비해 숙박비 지출액 규모가 낮은 편임
 - 과세표준 변동분은 소득 증가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다 연간 총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것임
 - 「조특법」 제132의2에 따라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이미 초과한 근로자들의 경우 숙박비 지출과는 무관하게 과세표준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일부 소수의 고소득자에서 발생

- 산출세액의 변동분은 과세표준 변동분과 더불어 개인별 소득세율의 수준에 의해 결정됨
 -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한 규모의 숙박비 지출액에도 산출세액 감소분이 클 것임

- 최종적인 소득세 결정세액 변동분은 세액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결정됨
 -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18년 약 39%로 이들의 경우 숙박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결정세액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표 V-8>은 국세청 자료의 소득세 현황을 소득구간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연 1,500만원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에서의 면세자 비중이 85%를 넘고 있어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소득구간에서 주로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국민여행조사에서 연 1,5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숙박비 지출액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구간에서도 면세자 비중이 3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결과는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숙박비 지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표 V-8> 소득구간별 소득세 현황(연간, 1인평균)

(단위: %)

소득구간	과세소득금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합계	소득세 결정세액	면세자 비중
1천만원 이하	4,727,789	28,796	28,385	6	99.9
1.5천만원 이하	12,569,415	203,421	198,137	1,642	85.1
2천만원 이하	17,823,409	367,970	315,351	42,590	35.0
3천만원 이하	24,624,860	678,037	502,163	132,391	33.0
4천만원 이하	34,699,508	1,410,731	842,892	466,688	27.3
4.5천만원 이하	42,428,996	2,092,507	1,065,435	950,808	16.5
5천만원 이하	47,446,908	2,601,585	1,208,553	1,333,530	10.8
6천만원 이하	54,773,381	3,419,827	1,375,770	2,009,249	4.9
7천만원 이하	64,844,551	4,598,040	1,571,887	3,012,016	1.50
8천만원 이하	74,749,649	6,083,625	1,601,565	4,475,721	0.40
8천만원 초과	120,900,484	18,759,295	1,926,473	16,829,131	0.1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국민여행조사 수준의 여행비 및 숙박비 지출이 유지될 경우를 상정하고 분석을 진행함
 - 국세청 개인납세자료에서의 개인별 2018년 연말정산 자료에서 개인별 근로소득 구간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다시 국민여행조사의 소득구간별 여행비·숙박비 지출액 정보와 연계함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민여행조사의 소득구간은 근로소득을 포괄하는 총소득 개념에 가까워 개인 근로소득별 여행비·숙박비 지출액 정보는 실제 규모에 비해 과대 추정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표 V-9>는 현재 수준의 숙박비 지출액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1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평균 숙박비 소득공제금액은 약 5,600원으로 4천만원 이상 구간의 평균 숙박비 소득공제금액의 약 1/9 수준을 보임
 - 평균 숙박비 소득공제금액은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나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모습을 보임

- 평균 숙박비 소득공제금액이 가장 큰 소득구간은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으로 약 5만 6천원 수준으로 분석됨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서 숙박비 공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 구간을 제외하면 3% 이내로 분석되었음

<표 V-9> 평균 숙박비 소득공제금액

(단위: 원, %)

소득구간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A)	숙박비 소득공제금액 (B)	비중(B/A)
1천만원 이하	1,282,988	39,788	5,660	14.23
1.5천만원 이하	2,651,777	299,220	11,480	3.84
2천만원 이하	3,767,057	797,832	22,970	2.88
3천만원 이하	5,284,897	1,376,907	36,262	2.63
4천만원 이하	7,786,212	1,926,219	45,596	2.37
4.5천만원 이하	9,683,134	2,234,570	50,919	2.28
5천만원 이하	10,785,371	2,363,600	45,447	1.92
6천만원 이하	12,287,061	2,467,765	56,055	2.27
7천만원 이하	14,061,238	2,542,317	45,601	1.80
8천만원 이하	14,924,694	2,273,060	47,312	2.10
8천만원 초과	16,273,488	1,975,773	43,521	2.20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10>은 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출세액 감소분을 소득구간별로 정리하고 있음
 - 저소득 구간의 경우 숙박비 소득공제금액뿐만 아니라 소득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의 평균값 또한 낮아 평균 산출세액 감소분 크기 또한 매우 낮은 수준임
 - 과세대상 소득 3천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소득세율은 6%로 해당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임을 알 수 있음
 - 산출세액 감소분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해당 구간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표 V-10> 평균 산출세액 감소분

(단위: 원, %)

소득구간	숙박비 소득공제금액	산출세액 감소분	평균세율 ¹⁾
1천만원 이하	5,660	339	6.0
1.5천만원 이하	11,480	688	6.0
2천만원 이하	22,970	1,378	6.0
3천만원 이하	36,262	3,182	6.4
4천만원 이하	45,596	6,393	8.3
4.5천만원 이하	50,919	7,567	9.7
5천만원 이하	45,447	6,804	10.5
6천만원 이하	56,055	8,406	11.3
7천만원 이하	45,601	7,070	12.10
8천만원 이하	47,312	9,369	13.00
8천만원 초과	43,521	11,820	17.8

주: 1) 평균세율은 개인별 결정세액/과세표준 값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11>은 개인별 세액공제 자료를 포함한 평균 결정세액 감소분을 소득구간 별로 정리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면세자 비중이 높은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본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11> 평균 결정세액 감소분

(단위: 원, %)

소득구간	산출세액 감소	결정세액 감소	면세자비중
1천만원 이하	339	-	100.0
1.5천만원 이하	688	106	85.1
2천만원 이하	1,378	911	35.0
3천만원 이하	3,182	2,306	33.0
4천만원 이하	6,393	4,834	27.3
4.5천만원 이하	7,567	6,327	16.5
5천만원 이하	6,804	6,070	10.8
6천만원 이하	8,406	7,987	4.9
7천만원 이하	7,070	6,964	1.50
8천만원 이하	9,369	9,339	0.30
8천만원 초과	11,820	11,803	0.1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12>는 1인당 연평균 숙박비 지출액 대비 결정세액의 감소분을 소득구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
 - 숙박비 지출액 대비 결정세액 감소가 가장 큰 소득구간은 8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약 8.1%를 기록함
 - 해당 비율은 소득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함
 - 연소득 4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숙박비 지출액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율 증가의 효과로 판단됨

<표 V-12> 평균 숙박비 지출액 대비 결정세액 감소분

(단위: 원, %)

소득구간	숙박비 지출액(A)	결정세액 감소(B)	비중(A/B)
1천만원 이하	53,361	-	-
1.5천만원 이하	40,509	106	0.3
2천만원 이하	78,186	911	1.2
3천만원 이하	121,374	2,306	1.9
4천만원 이하	152,046	4,834	3.2
4.5천만원 이하	169,741	6,327	3.7
5천만원 이하	151,502	6,070	4.0
6천만원 이하	186,860	7,987	4.3
7천만원 이하	152,022	6,964	4.60
8천만원 이하	157,735	9,339	5.90
8천만원 초과	145,230	11,803	8.1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연간 총조세지출 규모는 약 7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V-13)
 -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소득구간은 8천만원 초과 구간임
 - 해당 구간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감소분이 11,803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약 20억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2.8%를 차지
 -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천만원당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12.0%에서 16.4% 수준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제도의 소득구간별 수혜규모 격차는 크지 않아 제도 시행 시 형평성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없고 8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큰 것은 소득공제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오히려 소득구간별로 국내 숙박비 지출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특정 소득구간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었음

〈표 V-13〉 조세지출 규모 추정

(단위: 원, %)

소득구간	소득공제금액	산출세액 감소	결정세액 감소	비중
1천만원 이하	17,288,631,817	1,036,927,020	-	-
1.5천만원 이하	17,203,680,649	1,031,702,627	159,320,910	0.2
2천만원 이하	46,917,416,950	2,814,238,315	1,860,568,805	2.6
3천만원 이하	135,631,068,746	11,902,282,667	8,624,878,760	11.9
4천만원 이하	108,641,334,503	15,233,464,958	11,516,874,598	15.9
4.5천만원 이하	44,495,287,972	6,612,216,011	5,528,696,401	7.7
5천만원 이하	33,488,976,270	5,013,542,024	4,472,737,020	6.2
6천만원 이하	63,564,961,090	9,532,106,117	9,056,544,736	12.5
7천만원 이하	38,542,091,994	5,975,438,830	5,885,661,609	8.10
8천만원 이하	31,396,849,016	6,217,512,305	6,197,575,378	8.60
8천만원 초과	69,890,229,141	18,981,316,186	18,955,193,143	26.20
계	607,059,856,888	84,362,423,734	72,269,663,753	100.00

자료: 국세청 개인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Ⅵ. 고용영향평가



VI. 고용영향평가

- 통계청 SBDC 기업등록부 DB, 전국사업체조사(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숙박업의 매출액 변화에 대한 고용(취업자포함)탄력성을 추정함
- 숙박업종별, 지역별 고용의 매출액 탄력성을 분석함

<표 VI-1> 숙박업 업종별 고용탄력성

		종속변수: log(취업자 수)					
		(1) 호텔업	(2) 여관업	(3) 휴양콘도	(4) 청소년 수련시설	(5) 기타 관광숙박	(6) 기타 숙박업
log(매출액)		.2903***	1.140***	.9182***	.2104***	.4369***	.6804***
		(.0633)	(.1265)	(.0478)	(.0633)	(.1248)	(.1075)
연도별 고정효과	2011년	-.0466	-.0261	-.0221	-.0026	.0977	-.1645**
		(.0310)	(.0170)	(.0939)	(.0359)	(.0698)	(.0676)
	2012년	-.0549	-.0880**	.0876	.0129	.2215***	-.1391
		(.0459)	(.0371)	(.0715)	(.0386)	(.0739)	(.0847)
	2013년	-.0704	-.0401	.1310	.0997*	.2809**	-.1054
		(.0442)	(.0493)	(.0768)	(.0516)	(.0986)	(.1041)
	2014년	-.1183**	-.0303	-.0711	.1295**	.4067**	.0617
		(.0540)	(.0520)	(.0665)	(.0573)	(.1448)	(.1980)
	2015년	.0088	-.0424	-.1296**	-.0295	.5394**	.0227
		(.0604)	(.0644)	(.0623)	(.0692)	(.2454)	(.0928)
	2016년	.0348	-.0749	.0153	.0458	.4708**	.0029
		(.0671)	(.0739)	(.0611)	(.0508)	(.1801)	(.1012)
	2017년	.0757	-.1032	.0333	-	.4949**	-.4582**
		(.0528)	(.0956)	(.0256)	-	(.1746)	(.2215)
상수항	4.664***	-6.833***	-3.917***	3.659***	.7074	-1.712	
	.0528	(1.519)	(.5938)	(.6316)	(1.282)	(1.044)	
R squared		.9085	.9404	.8153	.8338	.8619	.5979
Obs.		128	134	111	112	133	244

주: 1. () 안은 id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 숙박업의 매출액이 10% 증가하는 경우 취업자 수는 7.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숙박업 세부 업종별 고용탄력성은 다음과 같음(매출액 10% 증가 시)

- 호텔업: 2.9%
- 여관업(여관, 모텔, 여인숙): 11.4%
- 휴양콘도 운영업: 9.2%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유스호스텔): 2.1%
-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민박, 펜션, 야영장): 4.4%
- 기타 숙박업: 6.8%

<표 VI-2> 숙박업 지역별 고용탄력성

		종속변수: log(취업자 수)			
		(1) 수도권	(2) 지방 광역시	(3) 기타 도	
log(매출액)		.8843*** (.0672)	.2978*** (.0625)	.5219*** (.0974)	
연도별 고정효과	2011년	-.0203 (.0312)	.0048 (.0272)	-.0070 (.0274)	
	2012년	.0247 (.0382)	-.0161 (.0456)	.0446 (.0403)	
	2013년	-.0353 (.0243)	-.0016 (.0845)	.0918 (.0375)	
	2014년	-.2425** (.0965)	-.0213 (.1270)	.0835 (.0480)	
	2015년	.0750 (.0905)	.0459 (.1570)	.0284 (.0582)	
	2016년	.0108 (.0397)	.0801 (.1398)	.1049 (.0504)	
	2017년	.0053 (.0707)	.1427 (.1013)	.1380 (.0646)	
	상수항	-3.533*** (.9163)	3.421 (.7509)	.7941 (1.153)	
	R squared		.9190	.7414	.8775
	Obs.		163	252	485

주: 1. () 안은 id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 각 지역별 고용탄력성은 다음과 같음(매출액 10% 증가 시)
 - 서울(9.3%), 부산(2.4%), 대구(3.6%), 인천(7.5%), 광주(4.3%), 대전(1.9%), 울산(4.5%), 경기(7.5%), 강원(0.0%), 충북(5.4%), 충남(2.8%), 전북(6.2%), 전남(3.9%), 경북(2.1%), 경남(3.7%), 제주(5.3%)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8%
 - 지방광역시: 3.0%
 - 기타 도: 5.2%

□ 숙박비 소득공제 도입 시 예상 취업자 수 증가 규모

- 숙박업 전체 매출액 규모: 11.8조원
- 숙박업 취업자(피용자, 자영업, 가족종사자 합산) 수: 13만명
- 통계적으로 숙박비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숙박업 매출 증가는 0이므로 이로 인한 고용, 취업자 수의 증가도 통계적으로 0명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가격탄력성(0.325)을 이용한 숙박업 매출액 예상 증가는 73.5억원(전체 숙박업 매출액 대비 0.0078%)
- 이로 인한 고용, 취업 증가는 약 591명
 -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하는 경우 숙박업 매출액 예상 증가는 24.6억원, 이로 인한 고용, 취업 증가는 약 198명

□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숙박업의 고용탄력성은 주로 서울·수도권이 지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울·수도권의 경우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매출액 증가 시 고용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는 모텔, 여인숙 등 숙박업소를 조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
 - 이와 같은 제도는 제안은 지역형평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서울·수도권의 고용탄력성이 지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조세특례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관업(여관, 모텔, 여인숙)의 고용탄력성은 숙박업 중에 가장 큰 1.14로 추정되어 이 업종이 제외될 경우 고용창출효과는 더욱 제약됨

Ⅶ.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VII.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가. AHP 분석의 개요

- 예비타당성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관된 평가 체계하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 중 하나인 AHP를 이용한 분석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함
 - AHP는 Thomas Saaty에 의해 1970년대 초 개발된 분석 방법으로서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다기준 의사결정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임
 - 본 연구와 같이 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시행된 다양한 효과성 분석을 동일 평가 기준에 따라 군집화하고 이를 다수의 분석 수준으로 분류하여 계층화한 후 각각의 수준 및 중요도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제1계층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2계층에서는 제1계층 분석 기준의 세부적인 항목을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하위 항목 각각에 대하여 평가함
 - 최종적으로 제1계층 및 제2계층의 평가결과에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의사결정 과정은 대안들 간의 ① 계층적 구조설정 ② 상대적 중요도 설정 ③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AHP 분석 방법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음

- 예비타당성평가에서의 AHP 분석은 계층적 구조로 작성된 설문조사에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의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자로 참여함
 - 동 분석은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인식됨
-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성 및 경제성, 형평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계층적 구조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전문가 9인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1) 정책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정책성 분석이란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을 분석하는 것임
- 본고에서는 정책성 분석의 4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제도의 도입 효과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며 AHP의 제2계층 분석을 활용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함
 - 해당 평가항목들은 ①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②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③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④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이며 AHP 분석 구조에서는 이들 항목이 제2계층을 구성하고 있음

2) 경제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이란 제도의 도입이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함
- 비용-편익 분석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행태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 비용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특례금액과 관련 경비들 모두 합한 금액임

- 비용-편익 분석으로 경제성 분석을 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용-효과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김정권 외, 2017, p. 19)
- 본 평가에서는 숙박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 숙박비 소득공제로 인한 실질적인 숙박비의 상대가격 하락이 숙박업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국민여행실태조사,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여행경비 지출, 숙박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함
 - 여행경비지출의 소득탄력성, 숙박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추정
 - 각 소득 구간별 탄력성을 추정하여 숙박비 소득공제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활용

3) 형평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형평성 분석이란 제도의 도입이 가구나 기업, 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가구의 소득 계층이나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의 변화 및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의 변화 등 소득재분배 효과, 낙후지역 등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4) AHP 분석 결과의 한계

- AHP 분석에서 경제성 분석은 설문조사 평가자들이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한 점수를 활용함
 - 경제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보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규모가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책성 및 형평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치화하여 경제성 분석에 이용함

- 본 연구에서는 B/C 비율을 환산하여 AHP 경제성 분석에 이용하는 정량적 분석 대신 전문가의 의견을 수치화하여 활용하는 정성적 분석을 이용하였으므로 B/C 비율을 직접 이용한 AHP 분석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하지만 B/C 비율을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AHP 분석도 평가척도 구간의 불균등성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방법론적 우열을 논할 수 없음(권태형, 2008)
 - 오히려 해당 제도의 전문가들이 직접 제시한 점수를 이용하는 것이 평가척도 구간의 불균등성 문제에 노출되지 않아 보다 신뢰도 높은 AHP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나. AHP 분석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 본 분석은 하나의 제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척도를 통해 분석된 내용들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 대안과 미도입 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함
 -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과 미도입을 평가 대안으로 하여 어느 안이 더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본 조세특례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함

2) 조사 대상 집단

- AHP 분석은 소수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의사결정 집단의 구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야 함
 - 설문 대상자 선정 시 조세특례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할 만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함
 - 본 AHP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는 총 9명으로, 2명은 본 예비 타당성평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이며 나머지 7명은 학계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선출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됨

- 최종 결과 분석은 분석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설문응답 시 일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1인과 종합평점에서 최솟값 및 최댓값이 나온 평가자 2인의 응답 내용을 제외하고 진행함

<표 VII-1>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평가결과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정책 대상자)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자로 한정
지원 방식		- 신용카드, 직불형 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국내여행 숙박비 30%를 공제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상 1.2억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200만원
세제지원방식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형 카드, 현금영수증 숙박비 사용분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운영기간		2021년 ~
정책성 분석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을 받아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갖으며,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충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관광숙박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내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적시성이 인정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행복 및 복지 증진’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목표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이라는 정책과 부합하는 제안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타기팅하는 관광숙박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분명해야 하는데 본 제도는 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이 명확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관광(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란 수단을 통해 실행하려 하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 - 소득이 높을수록 숙박비 및 여행비 지출금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낮게 설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전혀 가격 하락의 혜택이 없음
경제성 분석		- 숙박지출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구하여, 숙박비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매출액 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총 73.5억원으로, 숙박비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예상금액인 722억원이 훨씬 크게 추정 - 국내 여행경비 지출(0.172), 국내숙박비 지출(0.082)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1에 크게 못 미쳐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조세특례 예상금액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추정
형평성 분석		소득구간별 수혜규모 격차는 크지 않아 제도 시행 시 형평성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없고, 8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큰 것은 소득공제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에 부합 - 소득구간별로 국내 숙박비 지출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특정 소득구간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음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본 분석은 <표 VII-1>의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확인한 각 평가자가 이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을 택함
 - 정책성 분석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위 평가기준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하위 평가기준인 제2계층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형평성 분석은 신규 특례 도입의 경제적 효과들을 근로소득과 소득 구간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 <표 VII-2>에서 제1계층 평가기준 각각의 가중치 산정범위를 제시함

<표 VII-2> 가중치 산정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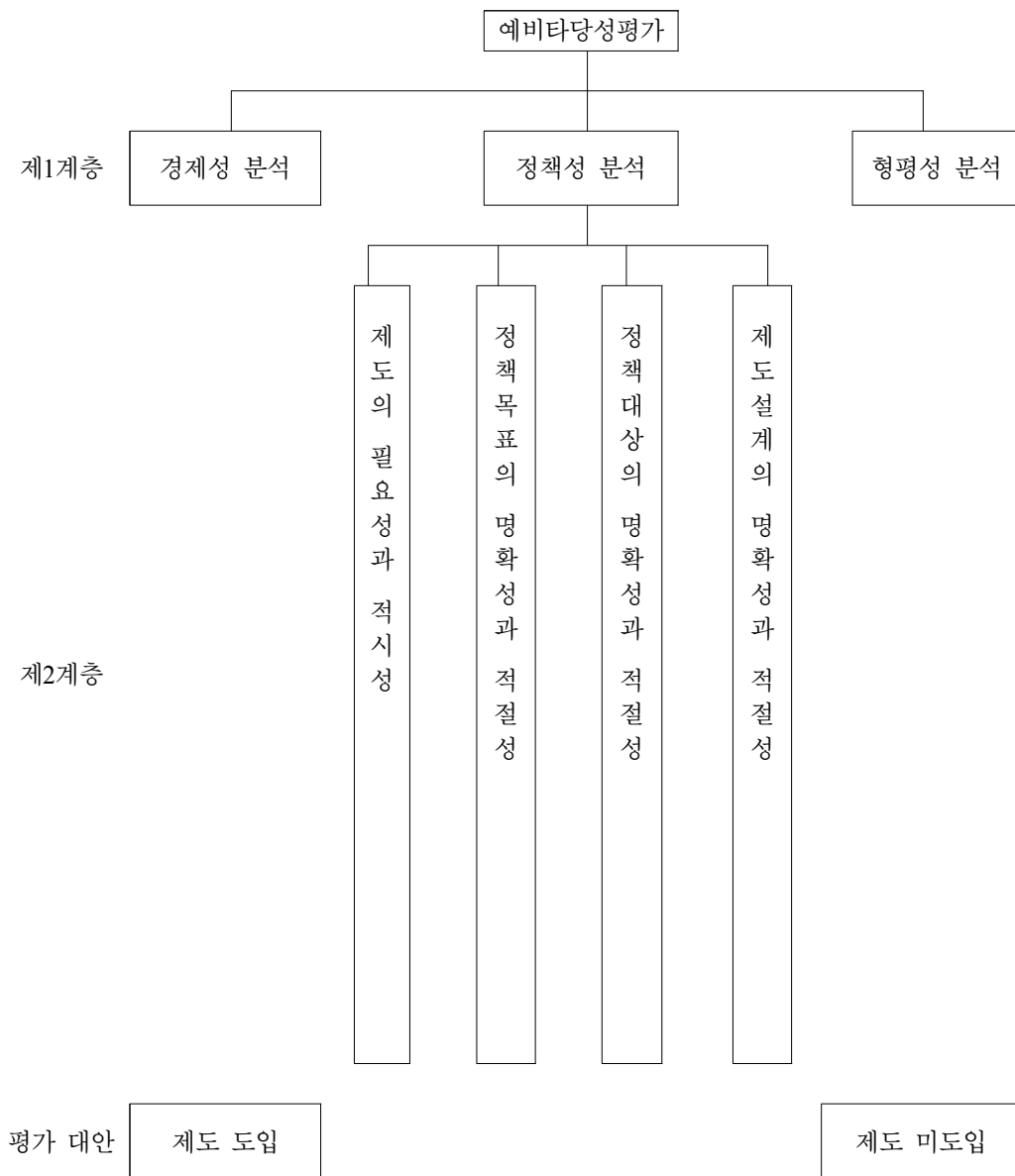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형평성 분석
30~50	30~40	20~30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2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AHP 분석을 수행함
 - 제1계층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를 점수로 제시함
 - 제2계층에서는 정책성 분석의 하위 평가기준 4가지인 ①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②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③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④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바라본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를 점수로 제시함

- 이렇게 제시된 제1계층 및 제2계층의 점수에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곱하여 AHP 분석의 종합점수를 도출함
- 본 평가에서는 평가자들이 설문문의 마지막에 해당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점수와 AHP 분석의 종합점수를 비교함으로써 AHP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함

[그림 VII-1]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표 VII-3>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 · 숙박비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효과 분석 결과의 타당성 · 숙박비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효과 분석 결과 활용 근거의 타당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성 분석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제도의 필요성 · 제도의 적시성 ·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의 명확성 ·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의 명확성 · 정책대상의 적절성 · 정책대상의 감면혜택 비수혜 가능성 · 비정책대상의 감면혜택 수혜 가능성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의 명확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유인제공의 적절성 · 평가왜곡 가능성 	
형평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4) AHP 분석 결과

-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평가자들은 쌍대비교 설문을 통해 각 계층별로 평가항목이 갖는 가중치를 산정함
 - 이때 평가항목의 가중치란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함
 - 평가자들은 제1계층 평가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의 가중치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주어진 가중치 범위 내에서 선택함
 - 이때 평가자들이 선택한 각 항목 가중치의 합은 100점이 되어야하며, 각 항목의 가중치 산정 범위는 <표 VII-2>에서 제시함

- 제2계층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Saaty(1990)의 AHP분석 기본모형인 9점 척도 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음
 - 평가자들의 비일관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Saaty(2008)의 Random Index를 이용한 검증 과정을 활용하였으며 응답 비일관도가 0.15 이상일 경우 설문을 재실시 및 제외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모함
 - Saaty(2008)에 의하면 응답 비일관도가 0.1 미만일 경우, 설문 결과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있으며, 0.2 미만일 경우, 용인 가능한 수준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0.15를 기준으로 응답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함
-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는 Saaty의 9점 척도 모형을 활용하여 수치화하였으며 이러한 AHP 표준점수와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를 연계하여 AHP 분석에 활용함
- 표준점수 9가 제도 도입이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며, 표준점수 -9는 제도 도입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며, 이를 1부터 0까지의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 범위에 균등하게 매치되도록 연결함(<표 VII-4> 참고)
 -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에서 1은 해당 제도 도입이 매우 적절하다는 의미이고, 0은 해당 제도 도입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미임
 - 또한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가 0.5인 경우는 제도의 도입 안과 미도입 안 사이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AHP 표준점수 1과 매치됨
 - AHP 표준점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가 0.5를 초과하여 해당 평가자가 제도 도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반대로 AHP 표준점수가 1 미만이며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가 0.5 미만인 경우 제도 미도입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AHP 표준점수에 대한 해석은 개별 평가자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고, 여러 평가자의 설문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에는 AHP 표준점수 1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표 VII-4> AHP 표준점수에 따른 제도 도입 적합도

AHP 표준점수	제도 도입 적합도
9	1
8	0.9375
7	0.875
6	0.8125
5	0.75
4	0.6875
3	0.625
2	0.5625
1	0.5
-2	0.4375
-3	0.375
-4	0.3125
-5	0.25
-6	0.1875
-7	0.125
-8	0.0625
-9	0

자료: 이상엽·한중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신설』, 2015. 9.

- 제1계층 설문에 대하여 가중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분석의 중요도가 다른 분석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 VII-5> 참고)
 - 평가자들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종합 평가 결과 약 44:33:23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합 결과로 도출된 각 항목의 가중치는 개별 평가자들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기하평균하여 도출하였으므로 세 가중치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 정책성 분석의 제2계층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각 항목 간 쌍대비교 설문 응답을 이용한 행렬의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함
 - 제2계층 종합평가 결과도 제1계층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자들의 설문 응답 내용을 기하평균하여 도출하였으므로 제2계층 가중치의 총합이 ‘정책성 분석’ 항목의 종합 가중치와 다를 수 있음

- 세부적으로는 ‘제도 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이 8.9%로 중요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이 7.5%를 차지함
- 다음 순위로는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의 중요도가 약 5.6%로 평가되었으며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의 중요도가 3.9%로 가장 낮음

<표 VII-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종합
경제성 분석	0.45	0.45	0.40	0.35	0.50	0.50	0.44
정책성 분석	0.35	0.30	0.40	0.35	0.30	0.30	0.33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0.02	0.09	0.20	0.02	0.02	0.19	0.06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0.02	0.04	0.10	0.10	0.03	0.01	0.04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0.15	0.04	0.05	0.17	0.08	0.05	0.08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0.15	0.13	0.05	0.06	0.17	0.05	0.09
형평성 분석	0.20	0.35	0.20	0.30	0.20	0.20	0.23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항목의 제도 도입에 대한 평점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weighted sum) 0.24로 제도를 미도입하는 대안이 더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표 VII-6> 참고)
 - 일반적으로 AHP 설문 결과 해석은 종합평점 0.5 기준 미만인 경우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의 의견인 것으로, 초과인 경우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의 의견인 것으로 해석함
 - 개별 평가자들의 종합 분석 결과 값을 살펴보면 최저 0.15부터 최고 0.49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0.13으로 산출됨
 - 최고 수치인 0.49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제도를 미도입하는 쪽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설문은 다양한 집단에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각 전문가의 배경이나 소속 집단에서의 이해관계 등이 설문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 전원의 의견이 제도를 미도입하는 방향으로 모아졌으므로 제도 미도입 대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표 VII-6>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종합	0.24	0.73
평가자1	0.15	0.85
평가자2	0.20	0.80
평가자3	0.49	0.51
평가자4	0.34	0.66
평가자5	0.15	0.85
평가자6	0.23	0.78

-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끝으로 설문 마지막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물어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도를 미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확인함(<표 VII-7> 참고)
 -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응답에서의 종합 결과는 0.27로 AHP 평가에 의한 종합평점인 0.24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으나 이 결과 또한 앞서 언급한 0.5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값이므로 직접 설문 응답과 AHP 평가 결과 모두 제도 미도입 안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일부 정도의 차이는 보이나 두 가지 분석 모두 모든 평가자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안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VII-7> 설문 응답에서의 제도 도입 점수

평가자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종합	0.27	0.69
평가자1	0.20	0.80
평가자2	0.20	0.80
평가자3	0.55	0.45
평가자4	0.35	0.65
평가자5	0.20	0.80
평가자6	0.25	0.75

-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한국개발연구원(2008)에 따르면 AHP 설문 응답 내용을 해석하여 제도 도입과 미도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경우 종합평점 0.5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AHP 설문은 구조상 평가자가 각 항목에 대해서 양자택일의 답변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평가 결과 또한 절반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의 대안만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다양한 전문가 집단 소속 평가자들의 의견이 특정 방향으로 완전히 수렴되지 않는 경우, 결괏값이 0.5를 기준으로 어느 한쪽에 속해 있다고 하여 전체 설문 해석을 결괏값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개별 평가자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결과 해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엽·한종석(2015)에 따라 개별 평가자들의 의견이 어느 한 대안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종합평점 해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색영역을 설정함

$$0.5 - 0.05 < \text{AHP 종합평점} < 0.5 + 0.05,$$

즉, $0.45 < \text{AHP 종합평점} < 0.55$

- 회색영역이란 설문 평가자의 구성이 바뀔 경우 응답 결과가 변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이 영역 내 종합평점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석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구간을 의미함
-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과 미도입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동물이 나오거나 의견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설문을 재검토하거나 재시행하기 위하여 회색영역을 설정함
- 본 설문의 경우 총 6명의 평가자 모두가 제도를 미도입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최종 종합평점 및 평가자 모두의 개별 종합평점이 위의 회색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가 결과의 강건성은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최종적으로 본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AHP 평가의 경우 개별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점수와 종합평점 모두 회색영역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조세지출제도의 미도입 대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됨

2. 결론 및 정책제언

- 위의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AHP 설문 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 동 조세특례제도를 미도입하는 대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AHP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점은 0.24로 「국내 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종합평점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자들의 개별 결과 분석에서도 제도 미도입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됨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관광진흥기본계획]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2017. 12. 18.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 _____,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2019. 12.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2019. 8. 29.
- 권태형,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2(3), 2008, pp. 31~51.
- 김용성 외,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창출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KDI, 2019.
- 김정권·이태근·이일환·김동근·최주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시스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 김학수·김진영·지해명·최동욱,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 김학수·우석진, 『20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김희수·이성태, 『국내여행 소비지출의 소득공제 도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조사」, 각 연도.
- 박상곤,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효과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안종석·박수진·이서현,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세법연구, 17-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6.
- 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1)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 비용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상엽·한종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신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
- 이수일, 「관광산업의 도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창출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KDI, 2019.
- 정다운·송헌재·성명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9.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코로나로 섬유제품업(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비제조) 피
해심각」, 2020. 5. 11.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 2008.

KDI, 『경제동향』, 2020년 7월호

_____, 공공투자관리센터,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외국인 관광객 숙박
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KDI,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2019.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사용자 안내서』, 2019. 12.

Bonham, C., Fujii, E., Im, E., & Mak, J, “The impact of the hotel room tax: an
interrupted time series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1992, pp. 433~441.

Enz, C. A., & Canina, L., “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 Differences in hotel
performance following 9/11,”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43(5), 2002, pp. 41~52.

Gago, A., Labandeira, X., Picos, F., & Rodríguez, M., “Specific and general taxation of
tourism activities: Evidence from Spain,” *Tourism Management*, 2009, 30(3), pp.
381~392.

Jensen, T. C., & Wanhill, S., “Tourism’s taxing times: Value added tax in Europe and
Denmark,” *Tourism Management*, 2002, 23(1), pp. 67~79.

Mak, J., & Nishimura, E., “The economics of a hotel room tax,” *Journal of Travel
Research*, 1979, 17(4), pp. 2~6.

Saaty, T. L,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 , AHP
series, RWS Publication, 1990.

_____, “The Analytic Hierarchy and Analytic Network Measurement Process: Applications
to Decisions under Risk,” *European Journal of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Vol.1, No.1, 2008, pp. 122~196.

Tsai, H., Kang, B., Yeh, R. J., & Suh, E., “Examining the hotel room supply and
demand in Las Vegas: A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006, 25(3), pp. 517~524.

『시사저널』,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5년 격돌’ 스토리」, 1552호, 2019. 7.

『KBS』, 「카드실적 전수분석, “① 코로나19 얼마나 강한가?..데이터로 본 소비 충격”」,
2020. 5. 30.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IRS, <http://www.irs.gov/>



부 록



<부록 1> 국내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조세특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또는 제외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_____ (서 명)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연락처: ☎ _____ E-mail: _____

AHP(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 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2~7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평가결과 요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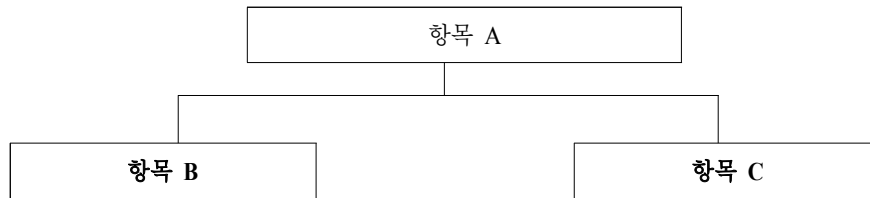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가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항목								
항목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항목 C

[부도 1] 평가 예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 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예) A가 B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A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응답할 경우
 ※ A > B, B > C → A > C라고 응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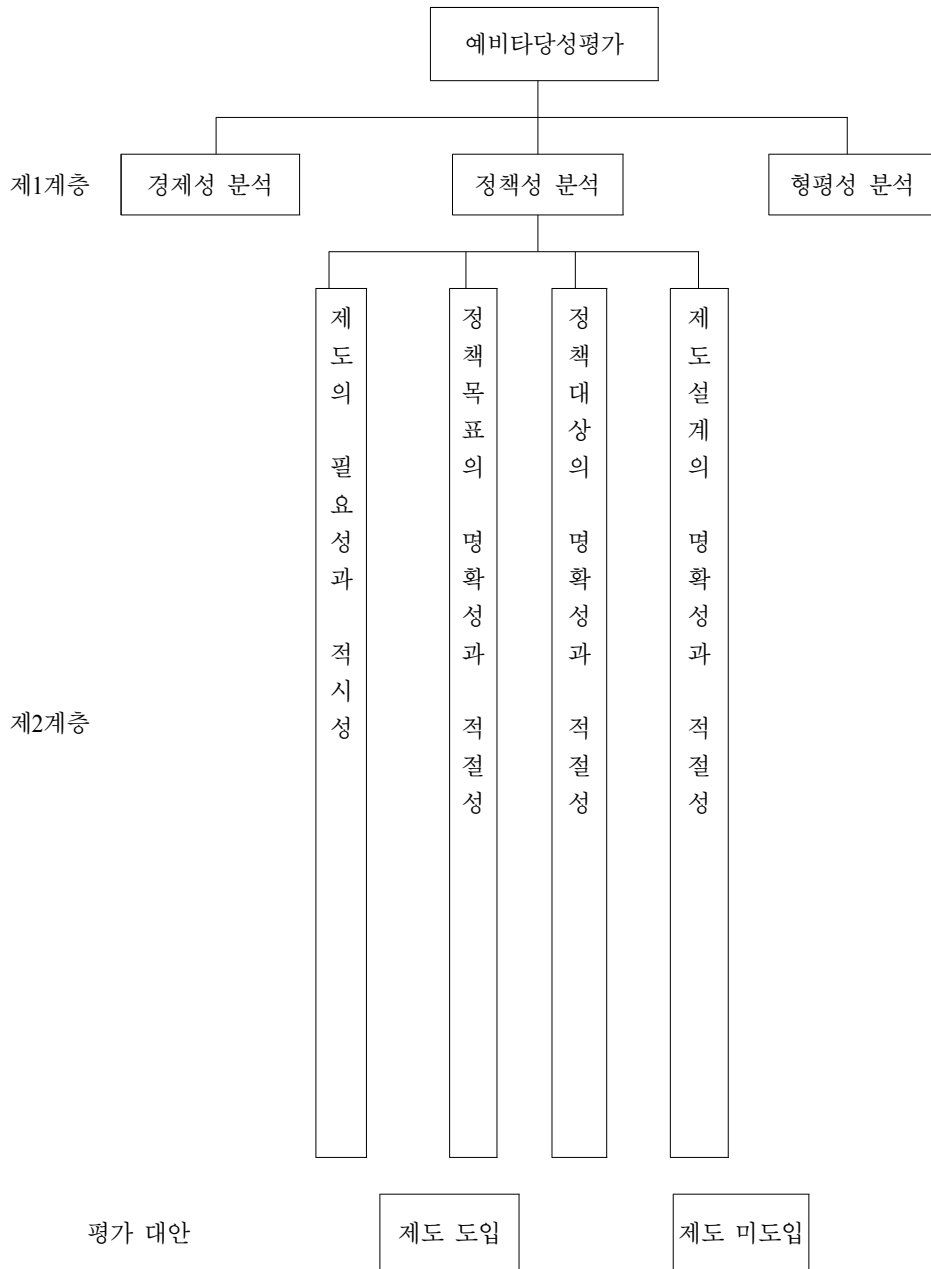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예)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B가 C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 상대적 중요도 평가 설문의 경우 특히 응답일관도에 유념하여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부도 2] 국내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부표 1> 「국내여행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 · 숙박비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효과 분석 결과의 타당성 · 숙박비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효과 분석 결과 활용 근거의 타당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성 분석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제도의 필요성 · 제도의 적시성 ·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의 명확성 ·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의 명확성 · 정책대상의 적절성 · 정책대상의 감면혜택 비수혜 가능성 · 비정책대상의 감면혜택 수혜 가능성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의 명확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유인제공의 적절성 · 평가왜곡 가능성 	
형평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3.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3.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그리고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도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 본 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부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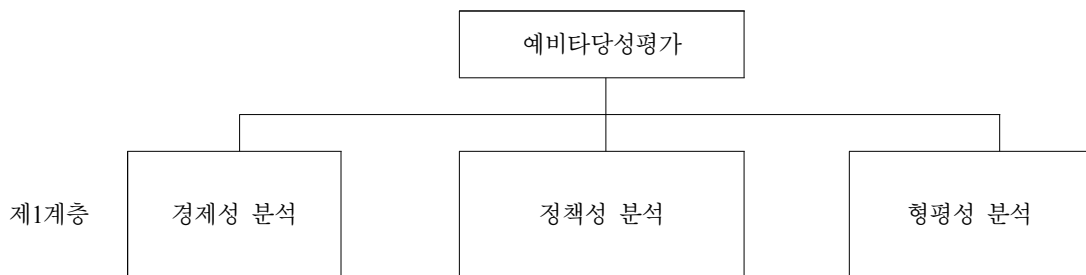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형평성 분석 = _____ : _____ : _____

<부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30~50	30~40	20~30

[부도 3] 제1계층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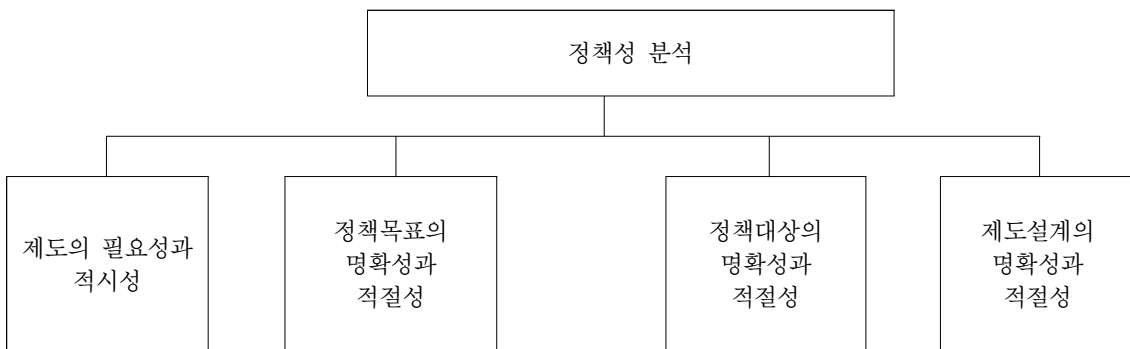


□ **설문 II**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2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II.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부도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 III은 본 제도의 도입과 미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제도 도입)과 도입하지 않는 대안(제도 미도입)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표 하십시오.

III.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대안이 제도 미도입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항목	대안	절대적절	매우적절	적절	약간적절	같다	약간적절	적절	매우적절	절대적절	대안								
경제성 분석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형평성 분석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IV. 본 제도는 각 분석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 대안이 제도 미도입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제도 도입 : 제도 미도입 = _____ : _____

◆ 수 고 하 셴 습 니 다 ◆

